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이해관계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he KIIP (Korea Immigrants and Integration Program) participants.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전 경 미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이해관계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he KIIP (Korea Immigrants and Integration Program) participants.



2019년 2월

지도교수 정기섭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전 경 미



이 논문을 전경미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9년 2월

주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한국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2년 62만 명이었던 것이 2018년 현재 226만으로 증가하여 불과 16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이주민의 한국 사회에 적응 및 통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009년부터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하나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을 익혀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이민자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비자 변경 등 체류자격 변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매년 참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책적 시행이 현장의 실정과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이민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요구아래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와 거점 및 운영기관 실무자, 교수자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적극적 참여 능력,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계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 이민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학습자, 교수자, 실무자)의 경험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밀집지역인 부천,



인천, 시흥, 안산, 화성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이민자 8명, 교육 강사 5명, 운영기관 실무자 3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취지가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통한 구체적 사항과 대안을 파악하고 정책적 제안을 위해서 Yin(2009)의 사례연구 분석 방법 중 패턴매칭, 논리모델, 설명하기, 사례통합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여, 두 개 이상의 사례들 사이에서 공통점 및 일치점을 발견하면서 경험의 연결고리를 규정하고 조작화하였다. 또한 관계를 파악함과 더불어 개별적인 사례연구 결과를 조합하여 반복 및 대조적 분석을 통해 주제를 도출한 결과 각 코드의 의미가 84가지로 분석되었다. 이에 얻어진 자료를 모아 반복적인 검토와 통합의 작업을 통해 33가지의 키워드와 범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17가지의 소주제들 도출하고, 소주제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4가지의 대주제를 생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참여 의미와 새로운 출발을 통해 잘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입장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비자연장의 목표와 동시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고, 한국사회이해과정을 통해 새로운 국적의 이민자들을 만나 서로의 입장과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나’와 ‘다른 너’가 ‘우리’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언어적 지원은 국적이 다른 이민자들에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민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를 통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적 참여에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 중에서 본인들의 불편사항으로 제시 하였던 모든 사항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서의 합격과 이수를 통해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반적 불만보다는 자신의 경우 모두 끝낸 상태로 본인들이 원하는 비자변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에 만족하였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와 소통하면서 대인관계가 확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참여 효과 및 불편 요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영역에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차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기존 교육내용 외에 자유로운 교육과정 선택 및 생활적응교육과 직업교육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요목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내용이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영주·귀화의 형태로 거주하는 이민자에게는 체계화된 귀화자의 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자유형에 따른 적절한 교육 내용과 함께 참여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적 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운영적 차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육장소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및 상호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거버넌스 구축을 활용함으로써 사회통합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단순히 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위한

경로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으로 장기적·거시적인 제도적 운영체제의 기반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강사와 실무자에 대한 제도적 대우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바탕이 될 때 보다 체계화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에 따른 정책적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비자변경 및 국적취득을 근본 목적으로 참여하는 이민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조적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보다 쉽게 비자변경과 국적취득에 있어서 가족들을 초청하여 오히려 합법을 도용한 불법적 취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를 인지해야 한다. 그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이민자의 처우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주제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 비자변경·국적취득

# 목 차

국문 초록 .....	i
목 차 .....	v
표 목 차 .....	viii
그림 목차 .....	x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	4
3. 선행연구 동향 .....	7
II. 이론적 배경 .....	15
1.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	15
가.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	17
나. 한국의 다문화사회 흐름 .....	21
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징 .....	23
2. 사회통합이론과 구성 요소 .....	24
가. 사회통합이론 모형 .....	24
나. 사회통합 구성 요소 .....	27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례 .....	38
가. 외국 .....	38
나. 한국 .....	47

다. 비교 분석 .....	55
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59
Ⅲ. 연구방법 .....	92
1. 질적 사례연구 .....	93
2. 연구 참여자 선정 .....	96
3.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	107
4.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 .....	117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	119
1.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기대 .....	121
2.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참여 .....	134
3.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평가 .....	155
4.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참여자들의 경험 .....	164
Ⅴ. 요약 및 결론 .....	185
1. 요약 .....	185
2. 결론 .....	190

참고문헌 .....	195
부 록 .....	204
ABSTRACT .....	210



## 표 목차

〈표 I-1〉 사회통합과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연구 현황	8
〈표 II-1〉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	16
〈표 II-2〉 프랑스의 사회통합 교육	40
〈표 II-3〉 캐나다의 사회통합교육	43
〈표 II-4〉 호주의 사회통합교육	44
〈표 II-5〉 독일의 사회통합교육	47
〈표 II-6〉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49
〈표 II-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50
〈표 II-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53
〈표 II-9〉 외국인정책 변화	54
〈표 II-10〉 국가별 영주 또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기본소양 및 과정	56
〈표 II-11〉 국가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방향	57
〈표 II-12〉 국가별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목적 및 도입 취지	58
〈표 II-13〉 외국인 증감 추이	61
〈표 II-14〉 체류외국인 현황	62
〈표 II-15〉 영주용 종합평가 구분	68
〈표 II-16〉 지역별·이민자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현황	69

〈표 II-17〉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현황 .....	70
〈표 II-18〉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편 ‘전/후’ 변경 내용 .....	73
〈표 II-1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목표 .....	74
〈표 II-20〉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교 교육과정(시간/등급) 및 평가체계 .....	77
〈표 II-21〉 평가체계에 따른 세부 사항 .....	78
〈표 II-2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혜택 .....	84
〈표 II-23〉 기타 교육 내용 .....	86
〈표 II-24〉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	87
〈표 II-25〉 운영기관의 역할 .....	89
〈표 II-26〉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요건 .....	90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특성(학습자) .....	98
〈표 III-2〉 연구 참여자의 특성(교수자) .....	103
〈표 III-3〉 연구 참여자의 특성(실무자) .....	105
〈표 III-4〉 심층면담 일시 개요 .....	109
〈표 III-5〉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 내용 구성 .....	111
〈표 III-6〉 심층면담에 사용된 질문 유형 .....	113
〈표 IV-1〉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	120
〈표 IV-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 .....	164



## 그림 목차

[그림 II-1]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표 .....	66
[그림 II-2]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방안 .....	67
[그림 II-3]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다른 교육과정/평가간의 등급 비교 .....	75
[그림 II-4] 운영기관이 종류 .....	88
[그림 II-5] 연구 분석틀 .....	92
[그림 III-1] 심층면담에서 사용된 질문 예시 .....	114
[그림 III-2] 질적 자료 분석 과정 .....	11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2년 62만 명이었던 것이 2018년 현재 226만으로 증가하여 불과 16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및 통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 통계 국내 체류 외국인<sup>1)</sup> 수는 2018년 4월 30일 기준 2,260,392명이며, 2007년 100만 명을 넘어 10년 만에 200만 명을 초과하여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체류 이민자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주 현상의 증가로 인해 사회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 집단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소요 사태의 빈번한 발생과 함께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는 그 심각성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sup>2)</sup>. 이에 우선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이다<sup>3)</sup>. 제1·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질 높은 사회통합’과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였으며, 결혼이민자에게 편중된 시혜적 정책의 한계점 극복과 이민자 사회참여 확대를 통합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차용호, 2015). 또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기간(2018~2022)은 대규모 이민유입과 정주형 이민자 확대로 본격적인 이민사회가 도래하기 전의 준비과정으로, 이민국가에 걸맞게 이민자의 도입, 체류관리 및 이민자 통합 정책을 포괄하

- 
-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말하며, 한국의 <국적법(1948.12.20. 법률 16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차용호, 「이민법」, 파주: 법문사, 2015, p34
  - 2) 이해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6, 2016, p.221.
  -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는 쌍방향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정이선, 2016).

다문화 이민정책은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한국사회 체류 이민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민정책으로서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국내 체류 이민자들의 다양성으로, 체류 목적과 체류 기간, 문화권과 출신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서 90일 기준으로 그 보다 짧게 체류하는 단기체류와 그 이상을 체류하는 장기체류 자격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국내 체류 이민자의 이주 흐름은 정주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증을 발급<sup>4)</sup> 받기 위한 요건들이 필요하다. 거주·영주·귀화의 새로운 사증에 필요한 요건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은 이수혜택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취지보다는 프로그램의 이수에 따른 부수적 혜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0년부터 정식 출범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으로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현재 331개 거점 및 일반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과정을 이수완료하면 이민자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비자 변경 등 체류자격 변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듯 한국사회가 이민·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는 시점에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책적 시행이 현장의 실정과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정부 부처의 일방적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서 담당 실무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사증발급), 제7조의 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http://www.law.go.kr/> 검색일: 2018.4월 15일)

자나 강사 및 이수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최아영, 2018).

이에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 한국사회 체류 외국인들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적, 체류기간, 체류목적, 비자유형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민자들이 쉽게 신청하고 진행하기에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계 진행시, 평가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 번 단계에 참여하면 승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이주민이 시간만 채워서 이수하려는 문제가 있어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와 거점 및 운영기관 실무자, 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적극적인 참여 능력,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 실태의 한계를 밝히고, 이민자의 학습 성취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찾는 데 일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특히 효과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해 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와 내용

### 가.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학습자, 교수자, 실무자)의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참여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 실태의 한계를 밝혀서 참여자의 성취도·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 이민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학습자, 교수자, 실무자)의 경험은 어떠한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이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8:4)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에게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취지가 교육 참여자들 경험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의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램과 운영 및 교재 등의 만족도와 요구를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이민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국내에서 영주·귀화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는 국민의 의무교육의 하나로서 체계화된 귀화자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현숙, 2016). 따라서 이주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학습자, 교수자, 실무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과정 참여자와 교수자 및 실무자의 경험을 통한 의미를 분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실태의 한계를 밝혀서 이민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나. 연구 내용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서술하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보완하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민자가 이민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이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이민자가 이민 사회에서 자신의 인권 보호와 권리 주장을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정책적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성을 논할 것이다.

II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관련 사회통합의 이론적 관점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근거 및 배경과 현황, 운영, 평가에 이어 사회통합의 방향과 함께 사회통합정책도 함께 다룰 것이며, 법과 제도에서 본 사회통합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영역과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살펴 볼 것이다.

Ⅲ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적 사례연구방법의 절차와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제Ⅳ장은 연구의 결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경험의 다양성에 대해 학습자, 교수자, 실무자 대상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내용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현행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를 분석할 것이다.

V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론적인 논의로서 사회통합의 개념과 한국 사회통합정책의 실행 단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행 기능과, 앞으로의 수행 기능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즉 현행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및 체계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통합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결국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나 논의의 객관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 및 이론적 논의에 대해 고찰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및 사례연구 중심의 심층인터뷰 방법을 취할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 및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근거 및 배경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 운영체계와 평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인터뷰는 경인지역과 안산, 시흥, 화성에 거주하고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및 경험자 중 한국어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참여 경험에 대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4단계와 5단계 이민자 8명과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과

정 담당 강사 5명, 운영 실무자 3명을 선정하여 연구주제에 맞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것이다.

### 3. 선행연구 동향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접어들어 유럽 사회에 증가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및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되었으며,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국가들은 급증하는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질성 및 정체성의 문제 등을 ‘사회통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 다문화 정책도 그간 ‘동화’에서 ‘통합’으로의 사회통합을 외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유럽에서 이민자 정책의 실패를 공언함으로써 한국 상황에 맞는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도입된 정책 중 하나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2009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배경에는 실제 급속한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그 필요성<sup>5)</sup>이 결부되어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2008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년 동안 발표된 국내학위논문과 국내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논문검색사이트와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KCI 등재 및 KCI 등재 후보지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대한의 연구 확보를 위해 검색 키워드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민자의 귀화 프로그램’ 등을 검색 대상에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검색하여 연구 주제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를 만족시키는 논문 68편을 1차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논문 제목 및 내용, 논문 작성일 등을 포함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최종 45편

5)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참조 (강수정 외:2017,282).



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도별 연구 동향 분석에 있어 전체 선행연구 45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1>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연구 현황

(2018년 3월 31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편수	비율
KCI 등재 이상		1	4	4	2	1	2	2	6		22편	48.9
학위 논문	석(1)		석(2)	석(2)	석(4)	박(1) 석(1)	석(2)	박(1) 석(2)	석(4)	박(1) 석(2)	박(3) 석(20)	6.7 44.4
계	1	1	6	6	6	3	4	5	10	3	45편	
비율 (%)	2.2	2.2	13.3	13.3	13.3	6.7	9.0	11.1	22.2	6.7	100%	

<표 1-1>은 사회통합과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논문의 국내 학위논문과 KCI 등재 및 KCI 등재후보지 현황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논문 45편 중 20편(44.4%)가 석사 학위논문이며, 16편(35.6%)가 KCI 등재지이다. 분석대상 논문들의 발행연도에 따른 논문 편수를 살펴 본 결과 2010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본격적 시행을 기점으로 201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3편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7년)의 수립을 기본원칙으로 이민자 통합은 이민자와 선주민 간의 상호 공존을 강조하는 논문이 11편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및 실태 연구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

책적 방안으로 교육의 의무화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 송은정(2012)은 출입국관리법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영주자격, 국적취득, 사증변경에 따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화는 이민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게 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는 이민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이민법<sup>6)</sup>을 살펴보면 한국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귀중한 인적·물적 자본인 이민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귀화자격이나 영주자격을 완화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해서 경쟁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는데 특히 이러한 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역사적·사회적 상황이 유사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최아영, 2018). 이성순(2010)은 우리사회가 다문화로 급속하게 진입하면서 이에 대한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시행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보다 나은 체계적이고 종합적 정책의 추진 방향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을 비교 연구하면서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례를 통하여 엄격한 관리만으로 다문화 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진정한 다문화사회의 통합은 결혼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한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국가 사회적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조항록(2011)은 우리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보고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이민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또 정부 부처 간의 소통 부족, 일부 계층에

---

6) 차용호, 「한국 이민법」, 파주: 법무사, 2015, p138.

편향되어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언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 추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다문화사회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한 호주·캐나다·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김일란·김남형, 2014).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교재분석 연구이다. 이민자 대상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석사학위논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교재 분석에 있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교재분석 연구로 정호선(2015)은 한국어 교재 내의 의사소통 상황을 통해 대화참여자 간의 대화 기능을 분석하고 이민자의 특수한 상황이 얼마나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로 강휘원(2010b)는 미국의 소수인종 통합정책 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로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언급하였고, 전영기·최은수(2014)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호주의 이민정책과 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성인이민자 영어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어교육프로그램과 비교 분석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구초기의 한국어 교육은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 2012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이민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개발과 교육과정이 재정비되었으며, 개편에 따라 2013년~2014년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권과 2권, 중급 1권과 2권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민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학습자들의 생활현장에서 필요한 어휘들이 교재에 적용되었으며, 학습자의 요구 반영을 위한 교재와 이민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교재가 개발되었다. 교재연구를 통하여 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어휘목록을 선정하였으며(채송아, 2017), 중국인 이민자를 고려한 단어의 형태와 의미를 비교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동형동의어를 중국어와 비교하

는 방안(람미군, 2017)이 연구되었다. 또한 이민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읽기 과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향미, 2017).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 연구 방안 중 이민자가 다문화사회 법교육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 분석이 함께 제시되기도 하였다(채보근, 2011). 그 외 교재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이해와 조화를 위한 ‘문화 간 소통’의 확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의 문제점의 개선과 효과성을 강조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정호선, 2014; 이래호, 2015).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및 교육과정 연구이다. 다른 국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강조되는 점은 이민자들의 언어능력을 위한 학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현숙(2014)은 이민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영주·귀화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는 국민의 의무교육의 하나로서 체계화된 귀화자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강정향, 2013). 그 외에 이민자들의 조건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계 이민자의 경우 언어 능력 중 말하기, 듣기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귀화 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알아야 할 한국사회이해에 관한 사회, 역사, 문화, 정치 등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직 종사자로서 알아야 할 전문용어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로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되었다(김이선, 2012). 이는 이들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체계의 질적 개선 및 표준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확대와 조직체계 및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분석 및 문화교육과정 수립에 따른 교재 개발을 강조한 연구이다(원진숙, 2017).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체류 및 법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한국 국적 취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0년에는 결혼이민자와 우수 인재 등에 대해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등 국적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거주기간에 근거하여 귀화를 허용하는 귀화제도나, 영주자에 대한 편의를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통하여 많은 이민자들의 관심과 참여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송소영(2011)은 체류관련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하며, 영주권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단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국내 인적구성의 불균형으로 외국인의 정주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제대로 된 귀화제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생활 관련 법규와 인권을 보호를 위한 법률 강화를 강조하였다(강미순, 2015; 김종세, 2017).

다섯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인력양성 방안 연구이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의 수혜대상인 외국인 이민자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 반면 그들을 교육하는 강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강사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담당과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강사 그리고 구술심사 관련 강사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즉,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들에 대한 정식 명칭은 ‘다문화사회전문가’이며, 이를 처음 사용한 연구는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이라는 2008년 법무부 학술용역 보고서이다(김혜순 외, 2008). 이 보고서에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제안과 더불어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의 신설’을 제시하면서 ‘다문화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민무숙 외(2009)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정책과제나, 다문화전문가와 대학의 역할 및 학위과정에 대한 연구(김종세, 2011; 이성순, 2013a) 또는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등에 관한 연구(문민, 2010) 등으로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역시 교육 과정개발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뿐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 외 연구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 사회의 이민 형태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이민자도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와 소속감 연구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민자의 소속감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이인숙, 2014), 그 외는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이해’강사의 전문성을 강조한(양미경, 2017)연구와 박경래(2013)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평가방식에 있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의 지필고사와 구술평가 척도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전평가와 단계평가의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와 효율적 운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경험과 운영 실무자 및 교육담당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회통합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사회통합 참여 경험을 유일하게 다룬 최배영 외(2012)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간 사회통합 정책을 살펴보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경과 등을 비교, 고찰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참여 동기와 요구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이해를 도모하는 교재의 개선, 교육기관의 접근성 확보, 생활 적응교육 시행에 관한 것과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인 한국어교육, 일반이민자는 직장 일과 병행이 가능한 수업 시간으로 평일 저녁 혹은 주말 개설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다. 더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개선을 제안하였다. 최배영 외(2012)의 연구는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후 3년간 진행되어 온 사회

통합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 기관 10명의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만을 통해 이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다수 이민자의 요구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상이 오직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을 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반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및 교수자까지 확대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인 학습자, 교수자, 실무자를 연구조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선행연구 동향분석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은 정책 및 실태, 교재분석, 교육 및 교육과정, 체류와 법제에 대한 연구 또는 강사 인력양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통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즉, 학습자와 교수자 및 실무자들의 참여 경험을 통한 전반적인 논의사항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논문이 전무한 상태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 관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찾는 한계에서 벗어나 이민자들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교수자 및 실무자의 실제 참여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둘째,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경로와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적응하는 참여태도뿐만 아니라 이수교육에 대한 논의와 견해까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논하고, 그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의 견해와 더불어 교수자 및 실무자의 경험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일방적 요구 및 평가가 아닌 체계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의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인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이 연구에 적용할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의 이론적 의미와 주요 개념을 기술하고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는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정치적·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김혜순, 2007). 즉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한 사회 안에서 서로 공존하며 상호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말한다.

20세기 말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각 나라의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대처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다문화주의이다.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인종이 공존하는 국가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필요성에서 등장했다(강휘원, 2006).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합(Integration)의 일반적 개념은 인종 차별 철폐의 통합정책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는 둘 이상의 기구나 조직 따위를 하나로 합치거나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전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각 나라마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개념은 유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 통합정책은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에 따른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이 정책은 이민자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출생국가에서 습득한 문화·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에는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통합의 형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2018). 하지만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제 13조 제 3항 제 52호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통합의 합의된 개념이 없어 구체적인 정책추진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

한국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차용호(2008), 이성순(2010), 라휘문(2011), 조항록(2012) 등에 나타나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
차용호(2008)	사회통합 대상자의 우선순위선정에서 사회통합의 범위와 내용을 설정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을 비차별적 기본원칙과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으로 정의.
이성순(2010)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
라휘문(2011)	다양한 특성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및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결집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
조항록(2012)	이민자와 기존의 사회 구성원이 차별적 대우의 상태나 이질적 구성원으로서 생애가 아닌 상호 존중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상태로 정의

하지만 이선주 외(2009)는 사회통합 의미에서 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사회통합(social intergration)이 통합(integration) 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며 사회통합은 통합의 하위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이선주 외, 2009)고 주장하고 있다.

## 가. 다문화 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통합의 개념이 오랜 역사를 지닌 이유는 사회통합이라는 의미가 이주민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사회체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통합의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사회통합이란 비통합적 상태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 즉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질적인 존재 집단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서로 적응함으로써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숙, 2007; 김경옥, 2010). 가장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구성원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갈등의 크기를 줄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다(정이선 외, 2012). 사회통합정책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이민자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자에 대한 UN의 정의의 기본적인 지표는 이민자의 목적과 체류기간이다((문병기, 2015). 먼저 이민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민자는 자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일시적이나 장기적 체류를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3개월을 초과하여 거주지를 옮길 의도가 있는 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다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일상적 생활권을 다른 국가로 이주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양 관광, 친척 집 방문, 의료 관광, 단기간 사업목적 방문자 외 3개월 이하 방문자는 이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개념을 한국 내 거주하거나 귀화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과 좀 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에 논의될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E-9)를 사회통합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목적으로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E-9)와 재외동포 취업 비자인 H-2(방문취업) 비자, F-4(재외동포)비자 보유자로 나뉘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를 가지고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년 또는 최장 4년 10개월이라는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어 체류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비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개념이 한국 국적을 희망하여 귀화를 준비하는 사람 즉,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본래 이민자의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E-9비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을 모두 본 연구인 사회통합 대상자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개인이나 집단이 한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느냐’에 대한 ‘사회적 유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주류와 비주류 간에 서로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정옥, 2012).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사회통합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라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통합은 이주민들이 주거, 취업, 교육,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등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오화영,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통합은 단순히 정치적 또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의 의미뿐만 아니라 생활방식, 국가 정체성,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이주민 사회통합은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을 비롯하여, 소수자로서 기본적 권리의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통합의 정도는 이주민들이 학교교육, 직업교육, 주거, 건강, 법, 정치, 대중매체, 종교 등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사회영역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Bommes, 2007).

사회통합의 이상적인 목표는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의 문화와 가치에 통합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것은 주류집단과 이주민 집단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강휘원,

2006).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종집단이 공존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주류사회의 국민들은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충격,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전통문화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게 된다(노정옥, 2012). 따라서 선주민들은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은 주류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능력과 자격에 의해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주류사회에 진입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박미정, 2015). 이는 동화 욕구와 보존 욕구의 공존을 통해 주류사회 내에서 문화 정체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고유문화와 가치를 지키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사회통합의 개념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우 다의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여전히 개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의 내용과 사회통합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각각의 사회나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회통합에 대한 다의적 개념 정의 때문에 사회통합은 필요에 의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편의상 개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P. Bernad, 1999). 또한 Beauvais & Jenson(2002)은 사회통합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공동의 가치와 시민문화, 사회질서와 통제, 사회 연대와 부의 격차 감소, 사회적 자본, 지역적 소속감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개념의 선택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재인용, 부만근, 2016).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은 '사회가 성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동적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UN DESA, 2009). 즉 사회통합은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을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통합위원회가 '사회적 격차의 최소화와 양극화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할 사회적 역량'으로 정의한 것은 이러한 상태를 지향하고자 함을 표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통합의 이론적 출발을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나타난 국가 간 통합과 관련된 것이다. 즉 평화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가들 간의 협력체가 형성되어 가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관점이다. 둘째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입된 이민자의 정주화와 그에 따른 이민자 2,3세대의 증가, 사회공간의 종족적 분할 현상, 그리고 이들과 내국인 간의 사회·문화적 갈등 등이 현실화 되면서 자국 거주 외국인에 관한 사회통합 문제 및 그에 따른 시민권 부여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와 이슈화가 된 관점이다(장석인 외,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본 표준적 의미는, 이민자가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참여를 통해 독립적·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민자가 유입국 사회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사회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며(legitimacy and participation), 문화와 언어 및 종교 등 배경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받고(recognition), 기회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사회관계 속에 포용되면서(inclusion),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상태(belonging)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Jeannotte, 2008).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개념이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개념 및 목표와 지표를 분명히 정하여 관련 부처 간의 공유와 긍정적인 영향요인 중 국가적 개입이 가능한 것을 사회통합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 평가 또한 개념과 영향요인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의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정영태 외, 2014). 위에서 논한 바에 따라 사회통합의 개념 및 목표와 지표를 분명히 정하여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의 경우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주류문화와 전통문화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고, 타문화와의 통합에 대한 인식이 아직 체계를 다지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한국사회의 특징만

은 아니다. 현재 이민 선진국의 경우도 초창기 다문화사회에서는 주류문화와 주변 문화의 통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이 주류문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 즉,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통합은 대부분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이민자의 양적 증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은 언어를 비롯한 문화와 가치관 및 행동양식이 한국문화와 융합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받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통한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나. 한국의 다문화사회 흐름

한국은 오랫동안 혈연 및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단일민족국가의 모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기준 2,260,392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면서 이민자의 수용에 따른 한국의 다문화사회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민자 유입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현상이다(이미혜, 2008; 조항록,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1980년대 통일교의 국제결혼 장려 정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sup>7)</sup> 정부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도시와·근대화 과정에서 농촌 젊은 인력의 도시 이동화 현상에 따른 남성의 결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에 따른 문제와 함께 농촌에서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

---

7) 1988년 일본 여성들은 통일교 주최 합동결혼식에서 6,500명이 한국 남성에게 시집왔다(경향신문; 2006년 6월 2일자).

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정책 사업의 하나로까지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초 한·중 수교이후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출발되었다. 2000년대 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 사회로의 이민자 유입 배경은 1993년 시작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기술을 연수키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 외국인근로자의 정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술·전문 인력에 한정된 국내 취업허용 정책이었으나, 1980년대 한국의 경제소득 향상에 따른 3D업종의 취업에 대한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연수생의 불법 체류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4년 8월부터 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변경하여,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허용과 고용조건을 보장하였다.

다른 이민자 유입 배경으로 1980년대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함으로써 이를 위한 정책은 1963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2002년 「영주자격제도」의 도입과, 2006년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이었다. 또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이민자유입에 따른 정부 각 부처의 외국인 정책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유입의 증가 대상으로 유학생을 들 수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만 명이 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을 기준으로 17,023명이었고, 2018년 4월 기준 145,81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의해 유학 박람회 개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 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징

사람의 이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널리 행해 왔던 일이다. 그러나 근대 민족국가의 주권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에도 변화가 왔다. 이는 자국의 국경 보호와 외부인의 출입 및 정주화(停住化)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규제는 이민(移民) 정책과 시민권(市民權)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후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물자와 자본의 교류가 활발해진 반면 인구 이동은 더욱 경직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마다 이민제도를 강화하고 정착의 특혜를 전문기술을 지닌 사람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인권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다(Spellman 2002). 특정 국가에서 원하는 인력에 대한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배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차 대전 이후 대만계 중국인(화교)을 시작으로 1990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외국인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논의는 2000년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문제가 불거질 무렵에 들어서야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된 후 다문화의 담론이 형성되는 시기까지가 약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 제도로 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오경석 2007). 다시 말하면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이주로 인한 다인종, 다문화적 주체들의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한 근거로서, 다문화의 보장, 주류 사회와 비주류 사회 간의 상호 이해의 촉진, 소수민족 집단 간의 교류, 사회평



등 보장, 구조적 불평과 차별의 극복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이다.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를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사용되는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후자인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다문화 정책은 주류 사회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이들을 위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주자들에게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보장하여 소수민족 공동체와 다수민족 공동체의 고립화를 막고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실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구건서 2003).

한국의 사회통합은 대부분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이민자의 양적 증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은 언어를 비롯한 문화와 가치관 및 행동양식이 한국문화와 융합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받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통한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절에서는 사회통합이론 모형과 사회통합 구성 요소를 의사소통 차원, 적극적 참여 차원, 사회적응 차원으로 나누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볼 것이다. 사회통합 구성요소로 2009년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밝히고 있는 취지에 근거한 것이다.

## 2. 사회통합이론과 구성 요소

### 가. 사회통합이론 모형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고유한 문화체계와 민족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Castles과 Miller(2008)에 의하면 이민자 사회통합모형을 다음의 세 가지 모형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 model)이다. 이는 수출자유지역과 경제특구 같은 특정지역이나 직업에 한하여 특정한 경제 영역 외에는 이민자의 유입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타적 외국인 이민정책은 독일과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사회도 단순기능직 노동인력의 수급과 통제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이에 속한다.

둘째는 동화주의모형(assimilation model)이다. 이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언어·문화 및 사회적 특성 등의 모든 면에서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동일하게 흡수하도록 하는 모형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용광로 정책’으로 대변된다. 이민자나 소수집단이 이민사회의 다수집단 사회 속에 흡수되는 결과를 야기하며, 문화적응이라는 과정으로 다수집단과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본다. 이러한 동화주의 모형의 이민정책은 영국, 프랑스 등이 해당되며,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표방하는 다문화주의의 양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민자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한국인화 되는 것이 문화적응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사회통합프로그램도 동화주의 모형의 일맥임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ism model)이다. 다문화주의모형은 이민자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인종과 민족에 대해 포용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는 문화의 다양성·다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주류사회 중심의 이민자정책이나 소수민족정책을 포함하는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이민자와 소수자를 존중하면서 주류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소통과 교류 및 외국인 간의 대등한 관계에 초점을 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모두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처럼 이민자에 대한 상호이해 존중과 관용의 관점인 다문화주의모형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이다. 다문화주의는 국민적 정체성이 확장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가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정

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사회적·정치적 통합을 구현하는 것이 현재 다문화주의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금혜성 외, 2010).

최근 사회통합의 흐름을 보면 어느 하나의 모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병용되는 현상을 보인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동화주의모형과 다문화주의모형의 병용이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김용찬, 2013). 김용찬(2013)은 예로 차별배제모형을 따르던 독일이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이민자의 국적취득 기회의 확대와 독려 정책의 일환으로 동화주의 정책이 유지 및 제기되고 있으며, 영국 또한 동화주의정책의 시행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볼 때 한 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이 어느 한 유형을 따르는 것은 다원화·다변화되는 현실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및 역사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통합정책 모형에서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사회통합모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김희정(2009), 정영근(2009) 등의 연구에서 정부의 동화주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김희정(2009)은 이민자 통합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정주하거나 살게 될 이민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하고 일방적인 동화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영근(2009)은 사회통합정책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규칙과 생활방식을 배워 한국인처럼 살라고 가르치는 동화지원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를 근거로 볼 때 한국은 동화주의모형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민자에 대한 정책 용어를 다문화정책, 사회통합정책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정책이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앞서 언급했던 사회통합정책 모형의 하나인 이민자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주류 사회와의 공생·공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다문화주의 모형의 의미가 한국사회와 이민자 간의 관계에 내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문화

주의모형 중 하나인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오랫동안 유지해 온 혈연적·문화적·언어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해 온 단일민족국가의 주류 사회를 인정하고 이민자들 문화의 다양성·다원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아직까지 문화다원주의라고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정호선, 2016).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출발은 동화주의 정책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서서히 문화다원주의 성격이 짙은 다문화주의 정책모형과 병용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혈연적·문화적 동질성을 쉽게 버리기 어렵기 때문인 이유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방향은 동화주의모형에서 다문화모형을 병용하면서 한국의 상황과 흐름에 맞게 보완 발전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이 논문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인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을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사회통합 구성 요소

### 1) 의사소통 차원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언어이다. 언어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의사소통적 관점에서의 언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써 언어가 인간의 사회를 조직하고, 생활양식과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타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의와 윤리 위에 공존과 인정을 추구하는 방법적 기초로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의사소통행위이론은 객관적인 언어를

매개로 보편적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통합방식으로 편견을 배제하고 실질적 상호 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주장된 이론이다(홍중기, 2015). 이는 현실 속에서 다수와 소수의 권력 차이에 따른 보편성의 지향이 사회통합 과정에서 다수의 강제적 동화를 방지하는 한편, 과도한 상대주의적 다문화주의로 인한 문화 단절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다문화교육은 비합리적 차별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오랜 연고주의의 관성은 비합리적 차별을 배제시키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버마스도 이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하버마스: 이진우역, 1997)<sup>8)</sup>, 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명제적 견해로 보편적 도덕원리 안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하버마스의 보편적 도덕 원리는 타문화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보편적 정의 및 윤리라는 기본적인 질서와 그 위에 공존과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하버마스식 해석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방법적 기초로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사용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타인과 나를 같다고 여기는 상호주관성이론을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세상을 감정에 기초한 주관적 인식만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실에서의 힘의 차이가 다수와 소수가 서로 대등하며 주관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다수와 소수 간에 공통점을 찾고, 서로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보편적, 객관적 상호이해와 합의를 통한 정의적 윤리가치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수와 소수가 수용하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다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견해는 다수에 기반을 둔 일방적 동화주의와는 다른 측면으로 보편적 언어를 매개로 소통과 자기성찰을 통한 문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견해이다. 이와 동시에 타문화에 대한 배려와 소수와 다수 간에 연대를 구축하는 보편적, 쌍방향적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을 공동체를

---

8) 하버마스 지음. 이진우 옮김, 「담론윤리의 해명」, 문예출판사, 1997.

형성하는 보편적 기반으로 다수와 소수자의 화해의 도구로 여긴다.

하버마스는 다수에 대한 동화주의에 바탕을 둔 형식적 보편주의와는 달리 타문화에 민감하면서도 타문화에 포용성을 갖춘 절차적 보편주의를 강조한다(홍중기, 2015).<sup>9)</sup> 절차적 보편주의 원리는 전체 구성원에 의해 수용되는 보편적 문화를 기준으로 다수와 소수문화 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 객관적, 보편적 의의가치를 지향하는 통합을 주장한다. 즉, 칸트철학처럼 다수문화가 기준이 되어 소수문화를 다수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닌 소수문화와 다수문화가 서로 소통의 장에서 상호 공감하고 동의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상황적 통합을 말한다. 그러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은 형식적 보편주의와 다른 절차적 보편주이다. 절차적 다문화주의는 상호 합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로 보편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시퀀스이며, 이 과정에서 다수문화와 소수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문화가 곧 전체문화와 독재가 아닌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소통을 통한 서로의 공감과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면서도 둘 다에게 수용되는 보편적 가치의 동화 즉 다양성과 포용성 이 둘 모두 지향하는 다문화주의다. 모더니즘은 차이를 부정하는 극단적 통일성을 추구했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차이에 대한 극단적 긍정의 입장을 추구함으로써 다문화에 많은 모순과 한계를 야기 시켰으며, 정당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유럽의 극단적인 분열의 양상처럼 전개될 수 있다. 또 다양성을 이루지 못할 경우 소수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강압된 동화에 의해 소수의 권리와 문화가 유린될 수도 있다. 이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버마스는 절차적 다문화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그는 맥락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맥락·조건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가치관의 정반합적의 변화와 행동으로 소수자에 대한 사회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발전적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부분에 절차적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있다.

다양성과 통일성의 가치 중 한쪽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한 것이다. 근대 칸트철학의 과도한 통일성의 강조는 동화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동화

---

9) 하버마스 지음. 이진우 옮김, 「이질성의 포용」, 나남출판. 2000.

시켜서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문화 제국주의 즉, 정당한 차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반대로 탈근대의 철학사조는 다양성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문화 분리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하버마스는 이 두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절차적, 제약적 다문화주의를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맥락을 추월하는 타당성의 무제약과 맥락에 의존하는 사실적 타당성을 언어 매개로 하여 사회구성원 간 소통과 담론을 통해 보편적 타당성으로 이동시키는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영철, 2013).

또한 하버마스는 정의와 연대를 강조했으며, 이 중 정의를 더 중요시 했다. 이는 연대가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정당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객관적, 보편적 정의 안에서 이에 따른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대의 중요성은 보편적 정의의 가치로 조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보편적 정의로의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문화주의 또한 다양성과 정의로움의 통합적 지향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를 상실한 연대나 다문화주의보다는 정의적 가치에 따른 정의와 연대 간에 불균형적 통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친 인권적이라고 할 것이다.<sup>10)</sup>

이로 볼 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은 근대적인 통일성의 장단점과 탈근대적인 상호문화존중의 장단점을 보완한 견해이며 타자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상위의 가치인 보편적 정의를 기준으로 보편적 언어적 소통을 통해 절차적, 단계적, 민주적, 상호존중이면서 맥락 조건적, 반(anti)분열적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홍중기, 2015).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다수와 소수 간에 공통점을 찾고, 서로 간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상호이해와 합의를 통한 정의적 윤리가치를 창조하며, 보편적 가치를 통한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전체구성원이 수용하는 보편적 문화를 기준으로 다수와 소수문화 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 객관적, 보편적 의의가치를 지향하는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

10) 김영철(2013), “하버마스 의사소통이론의 상호문화주의적 함의”.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의 관점에서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령, 2018)을 통해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지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적극적 참여 차원

1990년대 세계화와 분권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거버넌스의 개념이 시민사회 영역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주도와 정부주도의 틀을 뛰어넘는 대안적인 관리체제로 부각되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NGO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대두와 이를 수용하는 뉴거버넌스 제도와 체계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거버넌스의 논의가 발전, 심화되면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도 국제기구의 권고 하에 이론 및 정책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국가운영의 틀이 전면적 재구축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제공되었으며, 미국의 정부역할 사례를 들어 거버넌스의 대두를 설명하면서 뉴딜시대의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에서, 세계화와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및 정부가 민간기업, 비영리조직 등 다른 차원의 기구들과 책임을 공유하는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고 Kettl(2000)<sup>11)</sup>이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Veenstra & Lomas(1999)는 신뢰, 시민참여, 참여 및 주체성, 시민참여, 협동적 문제해결의 요소와 효과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민욕구의 반영, 정책수행, 재정적 책임, 행정효율성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시민성 교육과 시민문화 강화를 자발적인 행동의 촉진과 민주주의 사회기반의 개선

---

11) Kettl, Donald E.(2000),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Globalization, Devolution, and the Role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pp. 488-497.



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이는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사회중심적인 자율조정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문화의 강화 및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 한정된 협의로 이해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과정이 참여자들의 특정 의사교환 방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사교환방식이나 이를 지원하는 기술의 출현은 사람들의 정치과정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대의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이민자에게 필요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을 위해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전통적 정부 모형이 사회문제 해결에 대응성과 적실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중앙집권적인 상의하달방식 관료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대등하게 협력하는 네트워크 협치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외국인정책은 외국인 전담부처를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통합성에 우려가 있다. 즉 그동안 외국인 정책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다수의 부처 등이 참여해오고 있다<sup>12)</sup>.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로 이민자 관련 사업들을 놓고 주도권 경쟁, 사업 및 예산지원 경쟁, 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협조적 관계보다는 긴장 및 경쟁적 상호관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관계 부처 간 연계와 조정체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 부처 간의 연계와 조정체계의 미흡함은 고스란히 지역별 집행 기관도 겪게 된다. 이는 다양한 관련 부처와 연계된 전문 인력들이 이민자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정하거나 통합할 기관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3)</sup>. 정부의 각 부처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하는 민간단체나

12) 제2차 외국인정책(2013년~2017년) 시행 결과를 볼 때, 중앙행정기관은 19개(14부, 1처, 1위원회, 3청)기관이 참여하여, 기간 내 2조 1천 97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4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案)13면 참조.

13) 이런 측면에서 3개 위원회를 통합한 범정부적인 정책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NGO 등의 경우에도 예산의 토대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우호적 관계이나, 실제에 있어서 정부의 지나친 통제나 간섭에 불만스러워 하며, 타 부처의 지원을 받는 유사한 다른 민간단체와의 경쟁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능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 간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거버넌스에서 주목할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계 구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할 만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없는 상태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전국에 있는 참여 대상자들의 참여 공간의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로 예측되기 때문에 참여 대상자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현재 중점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형태의 경우도 중요한 거버넌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기관 선정에 있어서 교실 확보와 간단한 자격요건을 확보하면 지정될 수 있는 상황만으로는 교육 강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불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좀 더 체계적인 운영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인 조건으로 ‘자발적 행동의 촉진, 시민문화의 강화,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만이 아닌 이민자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외국인주민센터나 NGO단체 또는 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그들의 실질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타국의 이방인이 아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관계임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예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거리 청소와 야간 방법활동<sup>14)</sup> 그리고 지역행사의 통역 등을

14)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2018.4.27.>) 보도 자료에 의하여 당진 경찰서는

통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은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 이제는 동반자의 의식을 갖도록 시민문화의 강화와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시민사회 참여기회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국가와 지역사회,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협력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성숙과 시민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및 보완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사회적응 차원

적응이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타인과 적절하게 조화로운 의사소통을 하고 다양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경제적 자립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심리적 및 행동적 태도를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이다(독고순, 2004).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Gordon(1964)에 따르면 문화가 다른 두 집단 간 장기간의 접촉관계 시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문화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문화적응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Berry(1991)는 개인 또는 집단은 자문화와 타문화에 부딪혀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만, 차츰 현문화에 적응하여 동화되는 것을 문화적응이라 정의한다. 이주자의 적응에 대한 초창기 연구는 심리학적 틀에서 문화적응에 적용하여 이들을 분리적 위험 집단으로 보고

---

지난 25일 밤 8시부터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연계해 11개 국적 체류외국인들로 구성된 “외국인 순찰대”의 방법순찰을 진행했다.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순찰대는 체류 외국인들의 바른 정착을 도모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다. 이날 외국인 순찰대 25명은 중앙지구대에 모여, 시장오거리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진행했다. 순찰활동에 참여한 네팔 근로자 러브(남, 35세) 씨는 “경찰과 함께 지역 순찰을 하게 되어 색다른 경험이 었다” 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많아질수록 외국인들도 당진을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이들이 타문화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주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학자들의 연구에서 Berry(1991)는 이주자들의 정신장애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적응에 관한 문헌에서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리적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적어지는 상태를 사회적응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의 경우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위한 방편으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Berry의 이론모형을 적용한 윤인진(2004)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4가지 적응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제적, 심리적 최적의 적응상태를 통합, 경제적 측면에는 잘 적응하였으나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로 적극적인 참여가 제안된 상태의 고립, 또한 경제적으로는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나 심리적 측면에는 사회와의 일체감을 형성한 상태의 부분적응 상태의 문화적 동화와 마지막으로 경제적, 심리적 측면의 사회적응이 모두 실패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적응 상태인 주변화로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뿐만 아니라 타문화 속에서 거주하는 모든 이민자가 포함된다. 이민자의 경우 경제적 이주를 선택한 경우는 경제적 적응과 더불어 선주민 및 동족의 이민자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안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이들의 심리적 부적응 및 사회문화적 행동의 안정을 위한 사회통합의 방안으로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문화적응에 대한 한국사회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Berry(1991)는 문화적응은 접촉(contact), 갈등(conflict), 적응(adaption)의 과정으로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응이 시작되며, 이때 일정한 저항의 적용으로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은 적응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자가 가지는 고유의 문화와 현지 주류 문화의 접촉에 따른 문화변동은 양측의 문화에 속한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심리적 차원에서 이주자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적응에 따른 갈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

가 사회적응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주민의 사회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 Gordon의 ‘동화이론’을 기반으로 한 초기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통해 보다 발전되었다.

Gordon(1964)은 ‘적응’을 ‘동화’로 개념화하며 이를 7단계로 나누었다. 이는 순차적인 의미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화유형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첫째, 문화적 동화단계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접하면서 문화적 원리에 적응해 가는 단계를 말한다. 둘째, 구조적 동화 단계로 이는 새로운 사회의 경제 및 구조적 특성을 수용해가는 단계이다. 셋째, 개인이 새로운 사회의 제도와 관습을 통합해 가는 동화의 단계로 결혼을 들 수 있다. 넷째, 정체성 동화의 단계로 개인이 새로운 사회 문화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가는 단계이다. 다섯째, 수용적 동화 단계로 기존 구성원의 태도, 가치, 신념과 일치해 가는 단계이다. 여섯째, 행위 수용적 동화단계로 개인이 기존 구성원과의 완전한 합치단계이다. 일곱째, 시민적 동화단계로 개인이 시민사회에서 공유하는 가치를 수용하면서 시민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되어 가는 단계이다. Gordon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만을 강조한 동화이론의 ‘적응’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컨대 미국 사회 유럽이민자의 경우 유럽 사회의 기존 문화 대신 미국문화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1960년대 이후 남미 및 아시아 출신 비유럽권 이민자의 경우 오히려 미국문화권에 동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오히려 자신 등의 문화와 고유한 특성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전우택, 2000). 따라서 이민자의 ‘적응’ 현상은 단순히 기존 문화의 자리를 새로운 문화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문화와 새 문화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반응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동화’의 단일 시각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 및 다차원적 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더불어 이민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통합적 시각에 대한

요구로 Berry는 기존 동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이주민에 대한 4가지 문화유형을 주장하였다. Berry는 문화적 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통합(integration) 즉, 새로운 문화의 수용은 아니지만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과 동화(assimilation), 모국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모국의 문화를 유지한 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함과 동시에 단절된 상태를 분리(segregation)과 양쪽의 문화 모두를 거부하고 주류와도 교류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범주를 주변화(marginaliz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양식은 어느 일방적 적응전략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의 선택이 아닌 이중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종구, 2014). Berry(1989)가 제시한 이민자의 문화적응 과정 5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접촉이전의 단계로 이는 이주 원인이 새로운 사회적응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 단계의 사례로 개인적인 동기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사업에 대한 좌절 및 실패 또는 욕구에 대한 것이 있으며, 사회적 동기는 전쟁이나 위험 또는 가난 등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접촉단계로 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행동과 다양한 문화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민자는 서로 다른 문화에 접함으로써 이문화(異文化) 공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세 번째, 갈등단계로 새로운 사회에 노출됨으로써 이민자에게 많은 변화가 촉구되고 이로 인해 문화적 압력이 상호간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시기이다. 이민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네 번째, 위기단계로 기존 갈등에 대한 해결의 부재 시 갈등과 긴장이 거듭되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때 이주에 대한 후회에 따른 좌절감과 공격적 활동 및 가정 내 불화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적응단계로 갈등기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

로 이때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와의 상호작용과 스스로 변해 가려는 개인적 욕구 및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이민자들을 수용하려는 사회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윤여상, 2001, 재인용).

Berry의 이민자 문화적응의 5단계와 적응과정 4가지 유형은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통합적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들의 인성적,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건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개인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Berry의 이민자 문화적응이론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례

#### 가. 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유럽의 여러 국가에 비해 미국은 국가 성립 초기부터 이민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 역시 이민을 받아들여 1900년대부터 이민자를 장려하거나 규제 변화의 변화를 거쳐 발전하면서 현재 다문화주의의 안정적인 형태<sup>15)</sup>를 보여주고 있다.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유입한 나라들 대부분은 이민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이룬 나라들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15) 캐나다 연방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정체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캐나다에 깊은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도 역시 캐나다에 깊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중앙일보 Tronto, 2015.7.10.).



## 1) 프랑스

프랑스는 통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이 프랑스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국적법을 통합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이민자는 국적을 취득해야만 그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Kaya, 2009).

프랑스의 중도우파정당은 1998~1999년 영입소양교육이 마련된 이후 2002년부터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일차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허영식 외, 2012). 그리고 2003년 '유입통합계약'을 시행으로 프랑스 내의 외국인인 프랑스어 최대 500시간과 하루 정도의 시민교육 및 사회 직업적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2005년 사회통합프로그램법이 실시되고 2006년 '유입통합계약'은 이민통합법에 의해 이민자들에게 의무화되었다. 2006년 신이민법 통과로 미숙련, 전숙련 노동자보다는 고급 전문인력 중심으로 이민자 수용 방향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이선주 외; 2009). 또한 프랑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에게 언어와 역사,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평등과 권리 등 인권 관련 교육, 시민으로서의 참여 및 시민적 역량 강화, 직업 및 사회교육, 문화이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희정, 2009). 이러한 사회통합 지원은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를 위한 실질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선주 외(2009), 김희정(2009), 김남국(2010)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통합 계약에 의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체계를 확립의 시킬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바로 언어교육과 영입소양교육이다. 언어 교육은 필기 및 구술 테스트를 통해 프랑스어 지식 수준을 평가하고 충분한 언어구사능력 시 언어교육 면제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충족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200~500시간의 언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입소양교육은 합법적인 이민자가 영속적 체류 전망을 갖고 체류하고자 할 때 프랑스의 국가 및 생활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나질 정도 교육을 받는다(정호선, 2016). 사회통합 계약에 의거하여 프랑스의 사회통합교육을 유



추해 보면 다음 <표 II-2>과 같다.

<표 II-2> 프랑스의 사회통합 교육<sup>16)</sup>

목적	이민자 통합교육을 위해 언어와 역사, 문화 이해, 법과 제도, 직업 및 사회 교육, 평등과 권리 및 인권 관련 교육. 시민정신 및 시민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프랑스 언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 직원의 구술 및 필기 평가 프랑스어 지식수준 평가, 프랑스어 구사능력이 충분할 시 언어 교육 면제 증명서 발급, 자격미달 자는 200~500시간 의무적 언어교육.</li> <li>- 최저수준의 언어능력 도달 유럽공통참조기준의 A1 등급에 밀도는 수준 유지.</li> </ul>
정착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사회에 대한 지식 교육 (하루 정도 실시)</li> </ul> <p>합법적 이민자에게 프랑스 국가 및 생활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제공</p>

프랑스에서는 2005년 사회통합프로그램법이 실시되고, 그 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 통합교육을 위해 언어와 역사, 문화 이해, 법과 제도, 직업 및 사회 교육, 평등과 권리 및 인권 관련 교육, 시민정신 및 시민적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를 위한 실질적 교육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 사회이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랑스와는 달리 인권교육 및 시민적 역량강화와 직업에 관한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영입소양교육을 통해 동화되어 사회에 합법적으로 소속되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합법적 소양교육을 통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

16) 정호선(2016: 52) 인용 및 재구성.

한 교육보다는 한국사회에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목적에 치우쳐서 인권이나 시민적 역량강화와 직업 및 사회교육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 2) 캐나다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는 이민국가로 다인종·다문화를 바탕으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는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초기에는 백인정착을 위한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출산율의 하락으로 1962년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자의 언어능력, 학력, 기술 등을 평가하여 인종, 민족,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점수제 부여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였다(박진경·임동진, 2012).

캐나다는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Community History Recognition Program'을 실시하고, 'Multiculturalism Day', 'Black History Month', 'Asian Heritage Month' 등을 제정하여 이민자로부터 캐나다 사회의 공감대를 높여 나가고 있다. 또 다양한 이민자 정착프로그램과 '인종차별철폐행동계획' 및 다문화주의 직원교육의 의무화 등 다문화주의법에 근간하여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박진경·임동진; 2012). 또한 캐나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이민자 정착프로그램 ISAP(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으로 자원봉사자가 이민자에게 캐나다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김희정, 2009).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ISAP(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은 이민자를 정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특수집단으로 보고 오리엔테이션과 생활 정보 및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언어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를

위해서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ELT(Enhanced Language Training)를 제공하고 있다.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는 1992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영어 및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sup>17)</sup>. LINC 프로그램에 무료 영어 교육을 받으려면 우선 이민자가 LINC 평가센터에서 자신의 언어 능력을 평가 받아야 한다. 레벨은 1~12급으로 구성되고, LINC 프로그램은 CLB<sup>18)</sup> 1급~7급(초급부터 중급)수준까지 교육을 한다(채보근, 2011). 반면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 (0단계~4단계)와, 다문화사회이해(5단계 기본과 심화)과정을 사전평가나 TOPIK 평가 급수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II장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언어 심화과정인 ELT(Enhanced Language Training)는 노동시장 이해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높은 단계의 언어구사를 목적으로 이민자의 구직 활동과 직장에서의 보다 원활한 생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이선주 외, 2009).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주거 및 언어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어교육과 구직 등 취업관련 서비스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회통합관련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II-3>와 같다.

---

17)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 명시 (<http://cic.gc.ca/english/department/media/backgrounders/2013/2013-10-18.asp>), 정호선 (2017).

18)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s)는 캐나다 언어평가 기준을 의미함.

<표 II -3> 캐나다 사회통합 교육<sup>19)</sup>

목적	이민자의 문화 및 각종 행사를 제정하여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교육 외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과 언어교육 및 인권교육을 통한 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캐나다 언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LT(Enhanced Language Training)는 노동시장 이해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높은 단계의 언어구사를 목적으로 이민자의 구직 활동과 직장에서의 보다 원활한 생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li> <li>-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는 CLB 1급~7급(초급부터 중급)수준까지 교육</li> </ul>
정착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AP(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li> <li>- HOST Program</li> <li>- Community History Recognition Program</li> <li>- A Canada for all Canada's action plan against racism</li> </ul>

캐나다의 사회통합은 이민자의 문화 및 각종 행사를 제정하여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높여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교육 외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프랑스의 경우도 취업과 언어교육 및 인권교육을 통한 시민교육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 또한 주거, 취업과 언어교육 및 기술 개발 구직 등 취업관련 서비스와 공동체 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체계 및 운영은 언어와 문화 및 한국사회이해라는 교육지원만으로 이들의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참여 및 사회적응의 도입 취지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19) 김희정(2009), 이선주 외(2009), 박진경·임동진(2012) 내용 재구성.

### 3) 호주

호주는 오랜 이민역사를 가진 나라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교육을 이민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호주의 사회통합의 기본방향은 다문화정책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정착지원 서비스, 호주 시민성 정책, 언어지원 서비스, 문화적 다양성 증진정책으로 구분된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성인이민자교육 프로그램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통번역 언어지원서비스’, ‘학교 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 LOTE(Language Other Than English)’ 등이 있다(박성혁·곽한영, 2009). 이를 정리하면 <표 II-4>과 같다.

<표 II-4> 호주의 사회통합 교육

목적	다문화정책에 맞춰 정착지원 서비스, 호주 시민성 정책, 언어 지원 서비스,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호주 언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P(Special Preparatory Program)는 AMEP 참여 전 100 시간의 특별 준비과정(7명~12명의 소그룹 운영)</li> <li>- SEE(Skill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는 의사소통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프로그램으로 최대 800 시간 지원</li> </ul>
정착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li> <li>- 통번역 언어지원서비스</li> <li>- LOTE(Language Other Than English)’</li> </ul>

호주의 다문화교육에서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는 성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프로그램으로 호주의 오랜 이민정착프로그램이다. AMEP

는 영어의 기능적 학습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의 실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민자들이 이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전영기·최은수, 2014). AMEP의 구성을 살펴보면, Pre-certificate - Beginner(CSWE I) - Pre-mediate(CSWE II) - Intermediate(CSWE III) - Advanced의 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또 언어 교육프로그램에 SPP(Special Preparatory Program), SEE(Skill for Education and Employment)가 있다. SPP는 AMEP 참여 전 100시간의 특별 준비과정으로 7~12명의 소그룹으로 운영되며, 수업시간은 주당 최대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SEE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대 800시간의 언어와 문해 및 수리 능력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 미취업 이민자에게 기본 언어·문해 능력과 취업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전영기·최은수, 2009). 현재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업 시간배정은 1단계 15시간, 2단계~4단계는 각 100시간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 제공되며, 5단계는 영주와 귀화자를 위한 기본(50시간)과 심화(20시간)단계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계는 등록자 수에 따라 최소 7명부터 운영기관의 입실 가능한 수만큼 열리고 있는 실정으로 많게는 40명 이상 수용되는 기관도 있다. 이로 볼 때 호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언어 소통이 힘든 낮은 단계의 이민자를 위한 소그룹 운영이 이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언어 습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단계의 수준이 고려되지 않고, 운영기관의 교실 크기에 따라 학습자의 수가 배정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과정을 이수하고 합격(60점) 기준을 넘으면 이들의 실제 상황 언어인 말하기와 듣기의 능력에 관계없이 승급하는 체계로 과정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본 연구 참여자 중 S1과 S7의 예처럼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라도 발음이 부정확하고, 대화 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못하는 결

---

20) <http://ames.edu.au/courses/programs-for-migrants>

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때 현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4) 독일

독일은 2005년 발표된 독일 이민법(Zuwanderungsgesetz) 제 43조, 45조에 의거해 독일 거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은 독일어 교육과 독일의 문화 및 역사를 소개하는 과정과 법률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김희정·정기섭, 2009). 독일연방정부는 이민자와 그 자녀의 언어교육 즉, 학교교육과 취업을 위한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이종희, 2012).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어학교육과 시민교육의 두 가지 차원의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어학 교육은 각각 300시간 두 개 과정 총 600시간으로 구성되며 2008년부터는 독일어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900시간으로 증가하였다(김일란·김남형, 2008). 독일의 언어능력은 유럽공통참조수준의 B1등급의 언어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이민자 중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거부 시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책적 제재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은 민주시민교육 45시간 강좌로 도입 2차시, 정리 2차시를 제외하고 모두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듈 3개는 정치, 역사와 책임, 인간과 사회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정치(19차시)로 구성된 모듈1은 독일국가의 제도 및 법에 관한 내용이고, 모듈2는 역사와 책임(9차시)로 독일 통일의 역사적 배경과 유럽 간의 통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모듈3은 인간과 사회(13차시)로 구성되며 종교와 문화에 관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 차시 수업시간은 45분이며, 총 45차시로 이루어진다(김희정, 정기섭, 2009; 허영식 외, 2012). 이에 반해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인 다문화사회이해과정은 기본과정 50차시와 심화과정 20차시로 구성되며, 매 차시 50분 수업으로 진행된다. 영주자격을 위해서는 50시간의 기본 과정, 귀화를 위해서는 20시간의 심화과정까지 이수해야 한다. 내용은 독일의 구성에 비해 좀

더 세분화하여 진행되고 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II -5>와 같다.

<표 II -5> 독일의 사회통합 교육<sup>21)</sup>

목적	이민자들이 독일의 복지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독일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잠재가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독일 언어교육	- 기초언어코스과 상급언어코스의 두개 어학강좌 ( 각각 300시간~600시간). 2008년부터는 900시간의 독일어 교육
정착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코스 (민주시민교육) 모듈1(민주주의와 정치), 모듈2(역사와 책임), 모듈3(인간과 사회) 45차시 진행(1차시: 45분)

## 나. 한국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법적 기반은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추구 방향인 ‘사회통합’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조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통

21) 김희정, 정기섭(2009), 이선주 외(2009), 허영식·정창화(2012) 내용 재구성.



합은 넓은 범위에서 자국민과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 이민자까지 포함하여, 이질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의미 외에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이민자의 주류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인권 옹호와 차별 방지를 통해 갈등을 막고,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민자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사회 환경제공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그 의미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또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와 흔히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민정책(migration policy)은 자국민의 해외이주(emigration)와 외국인의 국내이주(immigration)를 모두 포함<sup>22)</sup>하는 개념이다(박미정, 2015).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국경(Border)과 이주민(Migrant)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정책과 국적부여 정책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률적인 공식 문서에서는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로 이민정책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sup>23)</sup>. 이는 공식적인 이민정책 용어 사용으로 이민자 관련 정책방향 즉, 국민의 해외이주에 대한 오해의 우려 때문이다.

2007년 7월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현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추진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를 살펴보면 <표 II -6>와 같다.

---

22) 국제연합(UN)에 따르면, 1년 이상 국경을 넘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장기이동,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이주하는 것을 단기이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국제적 인구이동을 이주(migration)로 간주할 수 있다.

23) 법무부에서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을 사실상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표 II -6>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sup>24)</sup>

정책 목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비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인류국가
중점 과제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제1차 외국인정책 및 중점과제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 및 운영방안에 있어 기본이 되는 선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는 다음 <표 II -7>과 같다.

24)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

<표 II -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sup>25)</sup>

비 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정 책 목 표 및 중 점 과 제	정책목표	중점 과제	
	1.[개방]	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2.[통합]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한민국의 공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인권]	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4.[안전]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소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5.[협력]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표 II -7>과 같이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정책의 비전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고, 정책의 목표는 ‘개방(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협력(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이다(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 이처럼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는 이민정책의 정책 대상인 이민자와 국민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측

25)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

면에서 그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정책의 비전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놓고 본다면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통합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사회통합정책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표 II-7>과 같이 다양한 이주민과 국민의 통합과 안정, 그리고 인권에 관한 정책은 ‘사회통합정책’으로 일원화하여 사용하고, 국경관리 및 출입국관리, 체류관리에 관한 정책은 ‘이민정책 (immigration policy)’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사 정책의 양적 팽창과 정책 용어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박미진, 2014).

제2차 외국인정책 목표인 통합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분야로 첫째, 이민자의 입국 초기 사회 적응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둘째, 한국어·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 등을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준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참여를 촉진시켜 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 셋째, 비자 제도 개선 및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등 국제결혼 관련 법·제도 정비하여 국제결혼 비자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위장결혼방지를 위한 체류관리 강화. 넷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특히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참여 및 취업교육 등 시행으로 이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시행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시행,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 배움 카드제 시행 등이 있다. 다섯째, 이민배경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한국어교육, 공교육 진입 강화, 진로·직업교육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 예비학교 지정 및 한국어교육 시행,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와 다문화학교 개교 등 직업교육 지원기관 운영과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 등으로 이민배경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결정 과정 참여와 자조모임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의

부족과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은 사회통합정책 추진상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8년 국민 전체 인구의 4.0% 수준인 226만 명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갈등관리 및 복지 지원등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내 이민자 2세의 성장 및 이민자의 가족결합 등으로 인한 2차 이민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민자를 취업경쟁자로 인식하여 반이민정서가 증가될 우려가 상존할 수 있다. 이에 제 3차 기본계획 기간(5년)을 선순환적 이민 환경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하여 이민자 유입이 국민 일자리, 사회 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 조성과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이민자를 유입함으로써 미래의 사회통합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상생과 화합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민과 이민자의 신뢰 기반 조성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장기체류외국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처우하여 '자립과 참여'의 책임을 부여하고, 정착 및 통합 지원 서비스 확대와 체계적인 이민자 인권보호 및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와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제3차 기본계획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8>과 같다.

<표 II -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sup>26)</sup>

비 전	<b>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b>
핵심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책목표	중점 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li> <li>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li> <li>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li> <li>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li> </ol>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li> <li>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li> <li>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li> <li>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li> </ol>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li> <li>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li> </ol>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li> <li>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li> <li>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li> <li>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li> <li>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li> </ol>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li> <li>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협력 강화</li> <li>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li> </ol>

제3차 외국인정책은 지난 1, 2차 외국인 정책의 목표와 차별화로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를 구

26)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축하고자 하였다.

<표 II -9> 외국인정책 변화<sup>27)</sup>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이민의 양적 확대 중심의 개방적 이민 허용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 이민정책
▶사회통합 체계 마련 및 참여 증진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제3차 외국인정책(2018~2022)에서는 지난 제1차, 2차 외국인 정책에 비해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외국인을 유입하고 외국인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및 이민자 유입의 경제·고용·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유입 원칙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종합적 이민자 유입체계 고도화와, 사회통합체계와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한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계 강화에 차별화를 두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인재 유입에 중점을 둔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서 [유입-자립-성장-기여]라는 미래 지향적 정책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다양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이민관련 법제 고도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외국인의 성장지원 확대중 하나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국적 취득과 체류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사회통합에서 겪고 있는 편견과 차별,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는 국가의 사회통합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유입된 이민자들에 대해 서로 다른 통합방

27) 「제 3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18)

식으로 사회통합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재한 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함이다. 셋째,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2018).

#### 다. 비교 분석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민자가 이민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선주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적 취득의 최소 조건으로 언어 능력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각 국에서 제시한 언어 능력 수준은 이민자가 이민 사회에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민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언어 능력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자들의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간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생활방식에 대한 공동체 가치체계와 국가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한 통합을 사회통합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으며, 선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통한 적응과 자립적인 정착을 목표로 한다.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교육은 사회통합모델의 차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외국의 사회통합과 한국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외국의 사례에서 정책



적,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서구 주요 국가의 영주 또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기본 소양 및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10>과 같다.

<표 II-10> 국가별 영주 또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기본 소양 및 과정<sup>28)</sup>

	한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독일
언어 능력 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 또는 TOPIK 4급 이상	프랑스어 중급 A1.1DILP (프랑스어 1급)	영어(CLB) 불어(NCLC) 4급	IELTS 6.0	독일어 능력 B1(CEFR B1)
사회 이해 능력 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증명서 제출	프랑스 사회의 이해 교육 이수증명서 제출	캐나다 지식 필기시험/ 시민권 선서식	호주 사회이해 시험 통과	독일 사회이해 시험 통과
국적 취득 시험에 포함된 기본 소양의 내용	한국 사회 이해 전반	프랑스 사회 이해 전반	캐나다 사회이해 전반	호주 사회이해 전반	독일 사회이해 전반
교육 시간 및 단계	0단계 15시간, 1~4단계 각 100시간, 5단계 50/20시간	지식수준, 언어능력 구사 자격미달 자 200~500시간 의무적	CLB (1급~12급), LINC (1급~7급) 500시간~1000시간	AMEP(5단계) SPP(100시간~800시간)	어학강좌 (300시간) 시민교육강좌 (300시간)

<표 II-24>와 같이 국가마다 영주 및 국적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한국어 능력

28) 조항록 외(2013), 결혼이민자 기본 소양 실태 조사 보고서 재구성.

은 선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수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이주민이 이주 국가의 사회이해에 따른 전반적인 소양을 기본으로 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이민의 역사와 이들은 수용하는 경제적·정치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통합정책은 그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만,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별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방향은 <표 II-11>와 같다.

<표 II-11> 국가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방향

한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독일
·질 높은 사회통합 ·차별 방지, 인권옹호 ·존중과 협력	·사회적 권리 ·통합수용	·정체성 확립 ·사회적 공정 ·시민참여	·공동체의 화합 ·접근과 형평성 ·생산적 다양성	·언어적 통합 ·교육적 통합 ·사회적 통합

프랑스는 다수자들에게 소수자에 대한 톨레랑스(Tolerance) 즉, 관용을 호소하고, 비차별의 법제화와 정책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주의에 따른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다.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여 언어,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시민권 부여를 기본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승인, 존중 반영하며, 출신에 상관없이 각각 사람들의 인격 존중을 위한 사회적 공정 및 커뮤니티 형성과 참여를 통해 적극적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한다. 호주는 시민적 직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화합과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존중을 통해 소수자와 다수자의 혜택의 공유를 목표로 한다. 독일은 엄격한 통제와 관리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진정한 사회통합은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한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사회적 과

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그 외 독일의 사회통합코스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교육 차원의 틀에서 조망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중 단기적 수립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선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선주민과 이민자의 신뢰 기반을 위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존중과 통합이 사회통합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별 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 <표 II-12>와 같다.

<표 II-12> 국가별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목적 및 도입취지

한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독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	·시민적 역량 강화 ·직업 및 사회 교육 ·문화 이해	·이민자의 사회전반 공감대형성 ·취업과 언어교육·인권 교육 ·취업관련 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기본 언어·문해 능력 ·취업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지원 ·노동시장에서의 적응훈련 ·사회적응 이해 교육

서구의 이민자통합정책에서 두드러진 점은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문화적 차이를 좁혀 사회를 안정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정책은 이민자를 보호하고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주체가 되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시민교육은 이민자와 자국민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통합정책의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의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타문화와 자문화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선주민과 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교육적 지원에 그친 반면 외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직업교육과 시민교육의 연계까지 고려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 결성 및 직업지원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민자와 자국민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념 및 배경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한국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통합지원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간이 마련되었다(이성순, 2010). 이에 외국인의 사회통합문제와 정부차원에서의 이민자 문제를 통합적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체계적인 이민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부처별 이민문제 전담 기구의 산발적, 분산적 설립에 관한 움직임은 이민자와 국제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대응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외국인 정책 총괄기관으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다. 이 본부는 1961년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조직이 이관된 후 출입국관리국으로 존속되어 오다가 2007년 5월 1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현재의 명칭과 조직체

계로 변경되었다. 국내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은 기존의 체류관리와 출입국관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국사회에 통합시키는 것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무부는 2009년 국내 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범 출발하여 2010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언어지원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 과정이 있으며,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입국 초기 이민자와 국제결혼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가 표준화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며, 장기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들이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의 문화와 경제, 법률 등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 한국사회에서의 안정된 자립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적이다(김상천, 2018).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08년 3월 12일에 제정된 법무부 훈령 제 612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2007년 자료 수집 및 연구에 착수하였다. 또한 “다문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근거로 2008년 공청회를 거쳐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실시하였다.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한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명칭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sup>29)</sup>.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과 온라인 사회통합정보망을 연동하여 교육과정 참여자 교육기관 법무부(출입국관리소) 등의 상호접근으로 행정절차와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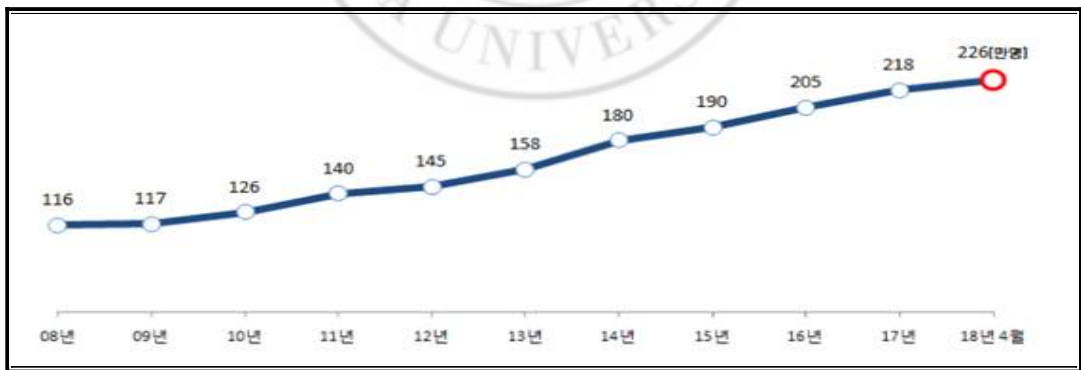
29) 김이천, “덴마크, 독일 그리고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비교 연구”, 한국독일언어문화학회, 독일 언어문학, 제 57권, 2012, pp.159-185.

서의 최소화, 학사관리 온라인화를 통하여 투명한 학사운영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sup>30)</sup>.

출입국·법무부통계자료(2018)에 의하면, 2018년 4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260,392명으로 전월 2,254,085명보다 0.3%(6,307명) 명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외국인등록자는 1,192,293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422,028명, 단기체류자는 646,071명이었다. 유학생은 145,810명으로 전월 150,001 명보다 4,191명 감소하였고, 국민의 배우자는 156,656 명으로 전월 156,439 명보다 217명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4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국적취득방법이 귀화 또는 결혼이주로 국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b) 되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한국국적 취득 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사회로의 이민자 유입에 수반되는 영주·국적취득 희망자들의 증가로 이들의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2007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표 II-13> 외국인 증감 추이<sup>31)</sup>

(2018.04.30. 현재, 단위 : 명)



체류외국인은 2018.4.30현재 2,254,085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2,031,677명에

30) 차용호, 전개서, 2015, p.66.

3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4월

비해서 10.9% 증가하였다.

<표 II -14> 체류외국인 현황<sup>32)</sup>

구분	총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계	등록	거소신고	
2017년 3월	2,031,677	1,522,290	1,144,532	377,758	509,387
<b>2018년 3월</b>	<b>2,254,085</b>	<b>1,605,991</b>	<b>1,187,988</b>	<b>418,003</b>	<b>648,094</b>
전년대비 증감률	10.9%	5.5%	3.8%	10.7%	27.2%
구성비	100%	71.2%	52.7%	18.5%	28.8%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필기시험 등의 귀화적격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한국어능력과 기본소양을 평가받아야 하지만 일반귀화 신청자의 경우 예상문제집을 단순 암기하는 등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김재욱, 2012). 즉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및 다양성의 이해 등 기본소양이 부족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점이 문제였다. 더욱이 우리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는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 취득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이민자 본인은 물론 그 2세까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우려되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에 대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도록 유도하고 사회부적응, 국민과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교육과 취업의 기회 박탈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기인한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a). 둘째, 법

32) 출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8).



무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물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NGO, 그리고 종교기관 등의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의 개별적, 중복적 지원은 수행되고 있을 뿐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국적 취득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이 한국어 습득과 사회·문화·제도 이해 등의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 효율적 국가 자원 배분, 교육이수 후 정책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이민자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이 중 하나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와 교육이수에 따른 국적 취득 시 혜택 부여이다.

법무부에서는 위의 추진배경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sup>33)</sup> 의무화 방안을 세웠고<sup>34)</sup>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우선 적용대상자는 국적취득 전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며, 이는 결혼이민자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같이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결혼이민자의 적응 지원이 이민 정책적 측면이 아니라 가족 정책적 측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이 이민자와 다양한 문화가치를 포용하여 한국의 전통문화·가치와 결합시킴으로써 세계 일류의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인권 지향적 관점이 아닌 동화 주의적 관점에서 본 통제 지향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런 부처 간의 갈등 속에서 2009년 1월 시범도입된 후 1년을 넘어서자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확대되었다. 2011년 11월에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계획을 추진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출입국관리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8년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도 국

33) 2009년 처음 도입 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2012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됨.

34) 법무부 실시 일반인 설문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초급수준의 한국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84.3%가 찬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전에 초급수준의 한국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74.7%가 찬성함(차용호, 2015: 144)



회로부터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산하조직으로 설치하게 됨으로써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관할권과 정책영역의 충돌이 본격화되었다(차용호, 2015). 그러나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부적응과 가정해체 문제는 결혼이민비자에 대한 발급요건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전까지 결혼이민자만을 위해 제공되어 오던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이 2013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대상이 외국인 전체로 확대 되었고,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이수 의무화 논의는 외국인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2014년 9월 방문취업(H-2)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이수 방안이 시행되었다.

2012년 6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운영을 시작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단체, 지자체, 사업장 등의 일정 장소를 지역학습관으로 지정하고 관할 거점운영기관이 교육 강사 및 운영관리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4년 5월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과정을 도입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가 실시하는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 교육 이수 대상자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교육으로 인정하고 해당 교육 이수자가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에는 이민 정책적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김상천, 2018)<sup>35</sup>). 연계과정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 후 한국사회이해과정을 이수하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산하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과정으로 일괄 등록신청, 등록된 연계과정 기관은 평가 응시희망자를 단체 접수할 수 있다. 이는 2009년부터 부처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하지 못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도입은 합의의 의미에서 협조적 연계라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법무부에서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되었다.

또한 이민재단 주관 하에 2010년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시스템인 온라인 화

---

35)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학교 등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과정 기관으로 등록하면 된다(2014.5.2.아시아 뉴스).

상 교육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원거리(격오지) 거주나 임신과 출산 및 취업과 거동이 불편한 참여 희망자 중 집합교육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하여 전문강사(1명)와 교육생(최대 9명)간 쌍방향 실시간으로 화상강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수업도 수강신청 기간에 선착순으로 신청하며, 추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연락 오면 증빙 서류자료를(임신헌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1년 12월 시범 개발을 시작하여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과 연동한 온라인 사회통합정보망<sup>36)</sup> 구축을 통해 행정절차 및 문서 최소화 등으로 행정부담 경감과 투명한 학사운영을 추구하는 등 체계적·효율적인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5년 9월 7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평가제를 도입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평가로 인정하여 TOPIK 등급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해당 과정에 바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결과가 5단계 이상이라 하더라도 5단계부터 이수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람통합프로그램 연계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1]과 같다.

---

36) www.socinet.go.kr

###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표

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1급	→	1단계 이수, 2단계 배정
2급	→	2단계 이수, 3단계 배정
3급	→	3단계 이수, 4단계 배정
4~6급	→	4단계 이수, 5단계(한국사회이해) 배정

※ (예시) 한국어능력시험1급 보유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2단계로 진입 가능

[그림 II-1]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표 37)

2016년 1월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학부 연계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대학교의 교양 또는 필수 과정으로 인정하여, 해당 대학 과정 이수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문병기 외, 2016). 또한 2016년 7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사회이해과정이 기본(50시간)과 심화(20시간)으로 나뉘어졌으며, 평가도 영주용 종합평가(기본 과정), 귀화용 종합평가(심화 과정)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는 국적 필기시험이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평가 응시자도 급진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9월 21일자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에 대한 개정 발표에 따르면 '18. 9. 21.부터 영주자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본소양요건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60점 이상 득점)'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영주용 종합평가의 대상이 다음 [그림 II-2]와 같이 확대되었다.

37) 법무부 (2015. 9. 7), 보도자료.



[그림 II -2]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방안<sup>38)</sup>

위의 법무부 이민통합과 발표에 따라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유효기간(2년) 내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5단계 한국사회이해과정)에 참여하거나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영주용 종합평가 응시가 가능함을 밝혔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기본과정 수업을 수료(총 50시간 중 40시간 이상 출석하고 수업 종료)하면 영주용 종합평가 응시 가능하며 이 경우, 합격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과 합격증이 모두 발급된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은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수업 참여 없이도 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합격 하더라도 이수증은 발급되지 않고 합격증만 발급된다고 한다.

38) 사회통합프로그램 포털(www.socinet.go.kr), (2018.9.21.일자)

<표 II-15> 영주용 종합평가 구분<sup>39)</sup>

구분	현행	신설 ('18. 9. 21. 이후)
평가 구분	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용)	영주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용)
신청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최초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
합격 시 이수완료 여부	이수완료 처리	미이수 ※ 단, 추후 기본과정 수료 시 이수완료로 자동 변경

201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sup>40)</sup>. 내용은 첫째, 평가응시수수료의 신설이다.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평가 응시료가 무료로 진행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중간평가·종합평가를 응시 신청하려는 자는 평가 종류에 관계없이 평가 1회당 3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귀화허가 신청(접수)을 하여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3회의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수수료 면제 대상자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가 아닌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였다. 둘째, 평가전문기관의 평가운영이다. '18.10.19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수탁기관 공모 결과, (재)한국이민재단 선정으로 201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중간·종합평가를 평가 전문 민간기관인(재)한국이민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신청 시 응시자가 직접 희망하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39) 사회통합프로그램 포털([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이민통합과 발표 (2018.9.21.일자)

40) 사회통합프로그램 포털([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2018.12.18.일자)

##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체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도입 첫 해인 2009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이 2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309개로 증가하였으며, 참가자 수도 2009년 1,331명에서 매년 급증하여 2017년에는 41,500명에 달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전체참여자 30,515명 중 결혼이민자는 16,563명으로 54.3%, 일반이민자는 13,952명으로 45.7%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체참여자 41,500명 중 결혼이민자는 18,763명으로 45.2%, 일반이민자는 22,737명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대비 2017년도는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 보다 일반이민자의 참여율이 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55.7%였고 그 외 지역인 비수도권은 44.3%이다.

<표 II-16> 지역별·이민자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현황<sup>41)</sup>

(단위:명)

구분	총 참여자		결혼이민자		일반이민자	
	합계	구성비율	인원	구성비율	인원	구성비율
계	41,500	100%	18,763	100%	22,737	100%
수도권	23,112	55.7%	7,861	41.8%	15,251	67.1%
비수도권	18,388	44.3%	10,902	58.2%	7,486	32.9%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에 20개 기관과 참여자 수는 1,331명이었으나, 2010년 4,42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전국적 기관수는 15배 증가하였다.

4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2018).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앙 거점기관은 이민재단이며,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강의와 거점운영기관 전담인력 교육 및 구술심사관 양성과정, 기본소양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42)</sup>.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거점 운영기관은 48개로 운영기관은 331곳이다(2018년 9월 기준). 이 기관들은 법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거점운영과 학사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와 함께 출결관리와 감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일반운영기관은 강의실의 제공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표 II -17>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현황<sup>43)</sup>

(단위: 개,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수	20	77	150	271	278	304	308	300	309
참가자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전년 대비	100%	332.8%	147.2%	190.9%	112.6%	159.6%	115.4%	118.3%	136.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 비율에서 결혼이민자가 2012년에는 66.5%, 2013년 61.2%, 2014년 58.7%, 2015년 56.4%, 2016년 54.7%, 2017년 45.2% 등 2016년 까지만 해도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매년 일반 이민자 참여수가 증가하여 2017년에는 5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비자의 목적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다양한 체류목적의 지닌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수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위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유독 많이 참여하는 것은

42) 김찬기, “한국사회의 다문화, 다문화 사회의 한국문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국제한국어어문학회 추계학술발표, 2015, pp14-32.

4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2018).



다른 체류자들이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혜택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면,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위한 목적이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현숙, 2014).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시험 절차에서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이지만 면접시험은 봐야 하고, 국적 심사대기 시간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접시험도 면제 받고, 국적 심사대기 시간도 단축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단계 심화과정 진행 중에 출입국 직원이 국적·체류상담을 통해 개별심층상담을 실시하여 귀화면접 심사 면제 혜택 여부를 결정 후 서약서를 청구하여 국적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외에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책적 시행이 필요하다.

#### 가) 언어정책으로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의 실패를 공언한 독일이 다시 적극적인 언어교육을 시도하는 연유에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문화를 형성한다’고 본 기존 ‘흠볼트의 언어결정론’이나 ‘사피어 워프(Sapir - Whorf)의 가설’과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조항록, 2012). 이는 한때 ‘국제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옮겨졌던 외국어교육의 목표가 이제 급격히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이해와 조화를 위한 ‘문화 간 소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신형옥(2013)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교육’과 같은 ‘언어교육’에서나 ‘한국학’에서의 한국문화이해 함양교육을 통해 구체적 적용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에서 언어를 통해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교육을 통한 다문화정책의 하나로서 시행된 적극적인 반영 결과가 바로 후술하게 될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이다(정호선, 2015). 물론 2009년 당시는 국내 정책에서 이민자에게 필요한 기본소양을 익힐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부재했으며, 일부 부처별로 이민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비전문적, 비체계적이며 참여와 관심도 저조한 상태였다(이인숙, 2014). 이때 법무부에서는 지원 정책간의 체계성과 저조한 참여율의 회복 도모와 더불어 이민자들이 교육과 취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까지 전락하는 사회부적응을 예방하고, 이후의 발생 가능한 국민과의 마찰 등에 대한 추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이인숙, 2014). 법무부에서 시범적으로 20개 운영 기관인 전국 대학 ABT(Active Brain Tower)을 선정하고 전체 이민자들의 국적과 비자 등 체류와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정착을 돕고자 시작된 프로그램 이수제의 출현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근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외국인 수나 국적, 그 유형도 다원화되고 이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도 야기되면서 의사소통 문제가 갈등 원인으로 부각되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성과 평가를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의 체계적 습득, 둘째,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 평가 및 이수단계 지정하기,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민자에게 제공할 운영기관을 지정하기, 넷째, 운영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도록 지도하는 과정과 강의 및 다문화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 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요 체제와 내용

##### ① 개편 ‘전/후’의 주요변경 내용과 교육과정 목표 추이

박혜숙(2012)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2009년 당시 시행 전에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선행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지 못한 상태로 시작되었기에 한국어과정의 구체적, 전문적이지 못하고 시행기관의 역량에 전적으로 맡겨진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일반적인 언어 교육과정은 계열화와 위계화가 기본 전제(조항록, 2012)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대거 참여를 통해 현장의 경험적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이해)을 개편하고 2013년 1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 전/후의 상세한 체계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전반적인 ‘개편 전/후의 변경내용’을 정리하면 <표 II-18>과 같다.

<표 II-18>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편 ‘전/후’ 변경내용<sup>44)</sup>

정책	개편 전	개편(변경) 후
중급(3,4단계) 이수여부(2013)	결혼이민자의 경우 1,2단계(초급) 이수 후 바로 5단계 수강가능	결혼이민자도 일반이민자와 동일하게 1,2,3,4,단계를 모두 이수해야 함
5단계 교육과정 개편(2013~)	방대한 분량의 교재	교재의 분량축소(필요한 것만 학습), 시각적 자료의 양 늘림
평가 합격자 처리	종합평가 불합격 시 5단계를 재이수하면 자동 이수완료처리	종합평가 합격할 때까지 이수완료 강화 처리 하지 않음
강사등록제	(해당 사항 없었음)	강사등록제 도입, 강사자격 강화
한국어강좌 이수인정기관	법무부가 지정한 운영기관만 인정	법무부 지정기관과 법무부가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기관 모두 인정, 평가는 법무부 주관
운영(2014~)	모집-평가까지 1년에 3차까지 운영	모집, 사전평가, 중간평가는 5차까지, 종합평가는 3차까지 운영

이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편 목표 또한 살펴보면, 각 단계별 학습목표를 마련하고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적응,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해 갈 수 있을 정도의 언어문화 능력 함양’에 두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즉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의

4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사소통목적’, ‘학문목적’, ‘직업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그 목적이 다르면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과정도 주제항목이나 의사소통 상황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II-19>는 구체적인 단계별 교육목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아래 사항은 국립국어원(2011)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개발 2단계>과 이미혜, 박경래, 김제열, 조항록, 이성순, 조형용, 윤영(2012)에 근거한다.

<표 II-1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목표<sup>45)</sup>

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목표
기 0 초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자모를 읽고 쓸 수 있다.</li> <li>· 한국인 원어민 화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 할 수 있다.</li> </ul>
1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으로서 사적인 영역에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li> <li>·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어휘의 이해와 기본적인 조사를 사용하여 현재, 과거, 미래의 문장을 구성하고 알맞게 발음할 수 있다.</li> <li>·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로 간단한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li> <li>·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은 서술문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간단한 문장의 글을 쓸 수 있다.</li> </ul>
초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의 공공장소에서 자주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이해나 연결어미 사용으로 인한 복문을 구성할 수 있다.</li> <li>·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의 다양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상황에서의 기능(과제)을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다.</li> <li>· 일상생활과 관련된 설명문이나 생활문 등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li> </ul>
2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금 낯선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기능,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li> </ul>
3		

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단 계	· 일상생활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와 어미를 사용하여 복문을 구성할 수 있다.
	· 다소 복잡한 일상적 주제로 말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관한 방송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 문화를 소재로 하는 간단한 텍스트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중 급	·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 추구활동(직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등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하다.
4 단 계	·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어휘 사용과 복잡한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와 어미의 사용으로 종속절을 포함하는 복문을 구성할 수 있다. · 다양하고 복잡한 일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등 다소 전문화된 내용(한국사회, 문화 등)이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듣고 이해하며 쓸 수 있다.

위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표기술은 교육과정 또는 평가의 대표적인 사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기준과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sup>46)</sup>’의 등급기술의 원리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그림 II-3]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초급		중급		고급	
	1	2	3	4	5	6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
	1	2	3	4	5	6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초급		중급		한국사회이해과정	
	1	2	3	4		

[그림 II-3]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다른 교육과정/평가간의 등급 비교

즉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6등급을 7등

4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급으로 나눈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의 초급과 중급수준으로 구성한 것이다. 또한 새로 개편한 교육단계와 교육시간은 기존의 등급 체계와 교육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급 2과정 후 5단계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중급 1,2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결혼이민자와 일반이민자의 수준 차이에서 오는 단계배정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단계별 사전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외 이러한 교육과정운영의 흐름에 발맞추어 2010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기초/초급/중급’의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고, 상세히 후술하게 될 교재개편도 진행하게 되었다.

## ② 한국어 ‘세부 교육과정’ 및 ‘평가 체계’

앞서 소개된 개편 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세부 교육과정은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의 초급과 중급 수준으로 구성되어 기초 단계인 0단계부터 중급 2단계인 4단계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수시간은 기초 단계 15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각각 100시간씩이며, 이수시간의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며 재수강해야 한다. 1-3단계의 각 과정을 마칠 때마다 단계평가를 치르며 4단계과정을 마친 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5단계 이후인 종합평가에 불합격 시는 재이수한 후 종합평가에 재응시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사회이해과정’은 한국의 기초교육, 사회, 문화, 역사, 정치, 지리, 사회, 문화, 경제, 법률, 법질서 및 법문화, 지역사회 이해 등 12개의 교과 영역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사회이해 정보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종합 소양교육’이다.

<표 II-20>은 ‘개편 후 전체 교육과정과 평가간의 연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II-20>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 (시간/등급) 및 평가체계<sup>47)</sup>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 시간	20 시간
평 가 유 형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평가	영주 용 종합 평가	귀화 용 종합 평가
평가 기준 점수	구술3점 미만(필 기점수무 관)	3점 ~20점	21점 ~35점	36점 ~65점	66점 ~80점	81점~100점	
참 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후 참여 · 5단계 교육과정 분리 전('16.7.16)까지 받은 5단계 교육(최종 이수 완료 제외) 경력은 현행 5단계 기본과정으로 인정됨. · 교육과정별 목표 및 내용 등은[별지1]참조						

위 표의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의 특징을 기술하면, 첫째, 기본소양 ‘사전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배치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진입하기 전에 기본 소양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다. 둘째, ‘단계평가’는 각 과정 종료 후 해당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대상으로 다음 단계로의 승급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셋째,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과정’은 참여자의 자격에 따라 배정된 한국어과정의 최종 단계(4단계 한국어과정까지)를 이수하거나, 사전 평가에서 결혼이민자는 50점 이상, 일반 이민자는 90점 이상을 획득하면 참여할 수 있는 단계이다. <표 II-21>은 각 유형별 평가의 세부적인 ‘시기/내용/방법’에 대한 주요한 사항이다.

4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표 II -21> 평가체계에 따른 세부 사항<sup>48)</sup>

	사전평가	단계평가	중간평가(KLCT)	종합평가(KINAT)
평가 시기 / 대상자	(단계배치 전) 프로그램 참여 신청자	한국어 1단계(초급1), 2단계(초급2),3단계(중급1)의 각 과정 종료 후	배정된 한국어과정 최종 단계 종료자 (4단계-중급 2단계 이수자)또는 법무부/운영기관 주관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 받은 경우에는 참여자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한국사회이해과정)수료자
평가 내용	한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정도	한국어 해당 과정 내용	한국어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정도
평가 방법	필기시험(50문항,50분) 및 구술시험(5문항,10분) 총 55문항	필기시험(20) 및 구술시험(5), 총 25문항	필기시험(30문항= 객관식 28문항,45분) + 작문형(2문항, 5분)및 구술시험(5문항, 10분) 총 35문항	필기시험(40문항= 객관식(38문항,55분)+작문형(2문항,5분) 및 구술시험(5문항, 10분)총 45문항

또한 귀화 및 국적취득 시 이민자들의 보다 충실한 사회통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5단계(한국사회이해)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내 생활 관련 각종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혼인의 진정성, 귀화 시 국민적격 여부 등에 대해 개별적 심층상담을 실시하는 ‘국적·체류 상담제’도 있다. 이에 대한 ‘참여대상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한국사회이해과정)참여자이며, ‘상담관’은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상담일정 및 장소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거점운영기관장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참여자 편의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가급적 거점 또는 일반운영기관 등 교육장소를 활용하

48)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동향과 실태 고찰. 강수정, 이민정(2017)

면서 신중한 선정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이외에도 중앙거점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원거리 거주 또는 임신, 출산, 거동불편, 취업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참여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신청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수강하도록 한 ‘화상교육’도 있다. 더 나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빠른 적응 지원을 위한 ‘현장체험 및 견학, 자원봉사 등의 활동’과 같은 교육인정 기준제도의 마련이나,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법인,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등과 같은 다른 기관 교육과정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등과의 연계 방안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가령 기관 연계과정을 이수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응시 가능하도록 합격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TOPIK 등급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경우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자신의 TOPIK 등급을 확인 받고 해당 연계평가표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해당단계에 배정되는 것이다.

#### 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제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관계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2007년 9월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프로그램을 골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안이 마련되었고, 2008년 3월에는 법무부 훈령(612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4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귀화필기 시험 면제를 위한 국적법 시행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었다.

2012년 1월 외국인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출입국관리법 제5장 2절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에 두고 있다<sup>49)</sup>. 또한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표준화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sup>50)</sup>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는 비자발급, 체류허가, 영주자격, 국적부여 등 이민자의 지위와 관련된 종합적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로는 『출입국관리법』 제 39조 및 제 40조<sup>51)</sup>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48조 내지 51조<sup>52)</sup>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 53조의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0조 내지 17조 및 20조, 21조<sup>53)</sup>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 『국적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하 규정(법무부 훈령 제 1023호)와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관리 규정(예규)등이다. 통합교육이 체류 관련 및 사증 발급, 각종 허가 또는 영주 및 귀화의 허가 등과 연계되어 있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기능적으로 연계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를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sup>54)</sup>,

49) 차용호, 전거서, 2015,p681.

50)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52) 시행령 제 48조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51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는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함.

5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다문화가족지원법』<sup>55)</sup> 등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5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근거로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년~2012년)이 세워졌다. 이는 외국인에 대해 적극적인 개방과 질 높은 사회통합 및 외국인 인권옹호 그리고 질서 있는 이민행정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은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계획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어, 기본목표는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가지 핵심가치가 설정되었다. ‘통합’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의미하며,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예정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각종 지원정책 등과 연계되어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sup>56)</sup>. 현재는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이민자와 국민 간의 쌍방향적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sup>57)</sup>.

####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대상 및 이수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자는 사회통합정보망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자를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로 포괄 규정하여 참가대상자는 의무이수가 아니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파악된다. 또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평가 또는 교육 청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는 이미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

55)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56)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57) 정기선 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6.

이 된 자의 경우에도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기간이 부족하지만 혼인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국적을 취득한(간이귀화)국민에게 국적취득 후에도 한국어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보여 진다(최윤철, 2014).

또한 2016년 7월 1일 개정 법안은 국적취득 시(국적회복, 특별귀화 제외)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 단계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다른데, 귀화신청 시<sup>58)</sup>, 그 밖에도 체류자격 신청 시, 사증(VISA) 신청 시마다 각각 혜택이 부여된다.<sup>59)</sup>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는 다양한 이수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해마다 이수혜택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첫째, 귀화 신청 시 국적필기시험 면제, 국적 심사 시 대기시간 단축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개정 지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국적 필기시험 면제혜택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전 과정 이수 후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자는 국적필기시험 및 면접시험까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평가에 합격하지 않고도 이수만 하더라도 국적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 보다는 좀 더 강화된 이수혜택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혼인영주권자(F-5-2)가 체류자격 변경 시 실태조사 면제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체류자격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술 창업 점수제(D-8-4)나 무역비자 점수제(D-9-1)로 체류자격변경을 원하는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58) 2018년 3월 1일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부터는 종전의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 평가로 대체되어 실시 함.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참조.

59) 2012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한국어능력평가(중간평가: KIIP-KLT) 결과 결혼이민자의 합격률(60점 이상)을 살펴보면 1.9%로서, 일반이민자의 합격률 56.4%와 비교했을 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손흥기(법무부 이민통합과)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 개편 취지 및 방향」에서 국적법상 귀화 신청 요건으로 최소 국내 체류기간의 차이 및 가족관계에서의 한국어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결혼이민자는 중급과정을 면제(2012)한 바 있으나 개편 과정에서 일반이민자와 동일하게 중급 1.2를 이수하도록 함. 이는 자녀를 교육하고 키우는데 있어 한국어 능력배양이 필수적이므로 일반이민자와 동일하게 중급단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렴한 것이다.

시 가점 1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비전문인력(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자가 숙련전문인력 점수제(E-7-4)로 자격변경 시 가점을 최대 20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기간이 되면 출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F-2-7)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에는 최대 28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 시 체류자격변경 허가 조건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부여받을 수 있는 28점의 가산점은 체류자격변경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F-2-7)은 한번에 5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최종 5단계 이수 완료 후 체류자격 변경 시에 한국어 입증 의무를 면제한다. 좀 더 구체적인 이민자 유형과 그들에 대한 혜택의 내용은 다음 <표 II-22>와 같다.

<표 II -2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혜택<sup>60)</sup>

체류자격 변경	혜택 대상
F-5-1 (5년 이상 체류일반영주)	D7~9, E1~7, F2로 5년 이상 체류한 자
F-5-2 (국민의 배우자 영주)	F-6-2(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또는 F-6-3(본인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민자)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	F-2-2(국민의 미성년 자녀)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자. -선택항목 10점 가점 부여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동일업종 근무자 영주)	H-2(방문취업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동일 업체 근무자
F-5-16 (점수제 거주자격 취득자 영주)	F-2-7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자 ※단, F-2-7 취득 당시 한국어능력항목에서 15점 이상 취득자는 면제
F-5-18 (점수제 거주자격 취득한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영주)	F-2-71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단, F-2-71 취득 당시 한국어능력항목에서 15점 이상 취득자는 면제

### 3)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 가) 교육 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어 과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이해과정이다. 한국어 과정은 0단계부터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이수시간은 0단계는 15시간과 1~4단계는 각각 100시간으로 총 415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사회이해과정은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6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나뉘는데, 기본의 경우는 50시간, 심화의 경우는 20시간이다. 영주용 종합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본 50시간만 이수하면 되며,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본 50시간과 심화 20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총 0~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수 시간은 총 485 시간이다. 그러나 모든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485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평가나 한국어 토픽(TOPIK), 결혼이민사증소지자 등 해당 요건에 따라 단계를 배정받고 그에 해당하는 단계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연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월~5월, 5월~8월, 8월~11월로 나누어서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차 후 유상 교육으로 변동될 방침이며, 시기적 조절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원하는 수강생은 교육 등록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역 소재 중점기관이나 운영기관에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교육기관에 따라 과정 및 수강인원이 유이하기에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에서 확인 후 등록해야 한다.

교육 단계별로 과정을 시작하여 80%이상 출석하고 단계평가를 합격하면 해당 단계의 수료로 인정되어 다음단계로 상향되지만 출석률 미달이나, 단계평가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재이수를 하고 다시 시험을 본 후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재이수 후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다. 그러나 5단계의 경우 불합격의 경우 3회까지 재이수 후 수료가 되지만, 2018.3.1.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에 의거 귀화 시 면접 시험은 면제되지 않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의 정규과정 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과 기타교육의 참여시간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점차 기타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의무가 없는 관계로 이민자들은 수업 시수의 80%에 미달되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습자들을 구제하는 방

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인력 동원하는 상황으로 거점기관 실무자들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평일 일을 하는 이민자 대부분은 이 수업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 정책적으로 예산 낭비와 함께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 -23> 기타 교육 내용<sup>61)</sup>

교육명 구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자 대상 기타교육				미성년 재정착 난민 대상교육
	법질서 교육	소비자 교육	재난안전 교육	금융경제 교육	
주관	법무부	한국 소비자원	행정안전부	금융 감독원	법무부
교육 장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별도 장소* *재난안전교육은 안전체험장 등 별도 장소 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교육 시간	교육별 3시간 이내				별도지정
실시 방법	사전 수요 파악 후 정문 강사가 운영기관 방문하여 교육 *단, 요육 특성에 따라 수강생이 교육장 방문하여 교육 가능				전문 강사 교육

정규과정의 교재는 단일화 되어 있고 법무부의 지정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재는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온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가족 구성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점운영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6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표 II -24>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sup>62)</sup>

교육과정	단계	교재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0단계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법무부)
	1단계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법무부)
	2단계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법무부)
	3단계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법무부)
	4단계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법무부)
한국사회이해	5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이해(법무부)
기타 과정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표준화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 교재를 단일화 함.  
다만, 기존의 지정 교재인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등 그 밖의 교재는  
연계과정용 교재로는 사용 가능함.

※ 정규교육 과정용 지정 교재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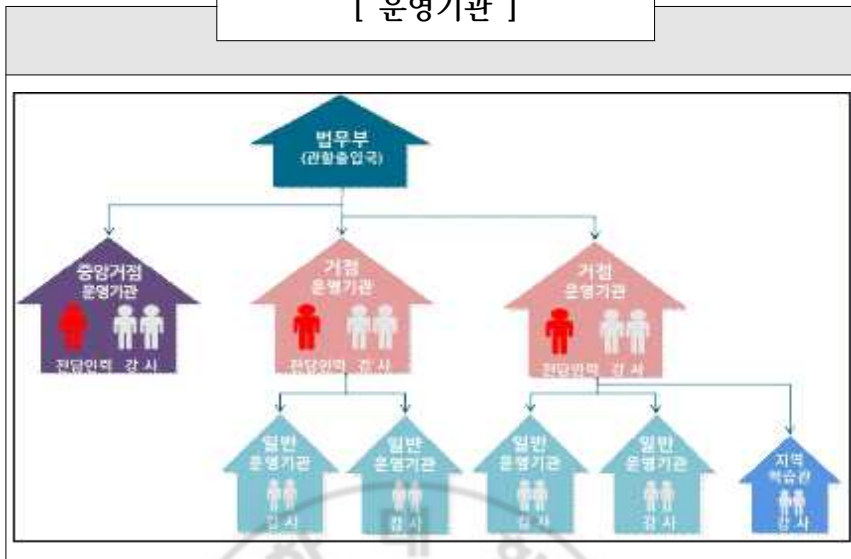
## 나) 교육체계

법무부(관할 출입국기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들을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으로 구분하고, 평가관리, 화상교육, 직무교육 등 전국단위 업무수행을 위한 ‘중앙거점운영기관’을 따로 정하고 있다.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고보조금 신청 및 예산 제반업무 수행이다. 특히 거점운영기관에는 전담인력을 두어 거점운영기관 관할에 속한 일반운영기관 전반에 학사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6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 운영기관 ]



[그림 II-4] 운영기관의 종류<sup>63)</sup>

운영기관은 예산지원유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강사료를 법무부가 모두 지원하는 ‘지원형’과 강사료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자립형’으로 구분한다. 운영기관이 과정운영 도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자립형 운영기관으로 변경된다. 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sup>64)</sup>.

<표 II-22>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교육장소의 확보, 교육장소의 안전,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1인 이상 배치 가능여부, 운영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무부와 원활한 업무연계 가능성 여부로 볼

6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20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64) 2011.9.15. 감사원의「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에서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부처 간 연계 미흡이 지적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외의 결과 합의 사항으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수 있다.

<표 II -25> 운영기관의 역할<sup>65)</sup>

<p>중앙거점운영 기관</p>	<p>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전국단위 업무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관리, 구술시험관 및 전담인력 교육, 만족도 조사, 각종 행사 등 화상교육 과정 운영</li> <li>- 화상교육을 위한 시설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총괄</li> <li>-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li> </ul>
<p>거점운영기관</p>	<p>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거점 내(관할 일반운영기관 총괄 포함)업무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프로그램 기획총괄</li> <li>※ 거점 내 운영기관 교육과정 배정 및 조정</li> <li>-학사(평가시험 포함) 및 강사 관리 총괄</li> <li>-강사 추천 및 강사료 지원 등 일반운영기관 지원</li> <li>-홍보 및 참여자 모집 감독 및 보고</li> <li>- 관할 일반운영기관 감독</li> <li>※ 예산·인력·학사 운영 등 적정 여부</li> <li>-관할출입국에 각종 학사 및 예산 등 관련사항 보고</li> <li>교육과정 운영</li> <li>-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li> <li>-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li> </ul>
<p>일반운영기관</p>	<p>교육과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li> <li>-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li> </ul>
<p>지역학습관</p>	<p>교육과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li> <li>-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포함)</li> </ul>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는 아래 <표 II -26>에서 서술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6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20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강사등록을 할 수 있다. 강사로 등록된 자는 2개 이상의 운영기관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운영기관 한 곳에만 경유하면 되며, 강사등록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 4번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강사등록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강사를 선발하고 강의를 배정한다. 강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생 및 청강생 모두의 출결을 관리해야 하며 법무부 지정교재를 사용하여 강의하여야 한다.

<표 II -26>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요건 66)

교육 명	강사 자격 요건
한국어와 한국문화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 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 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한국사회 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기타 과정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김재욱(2012)에서는 일찍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들의 많은 수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문화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사회통합정보망’에서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 평가를, 한국이민재단에서는 교사채용과 교육을 어느 정

6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20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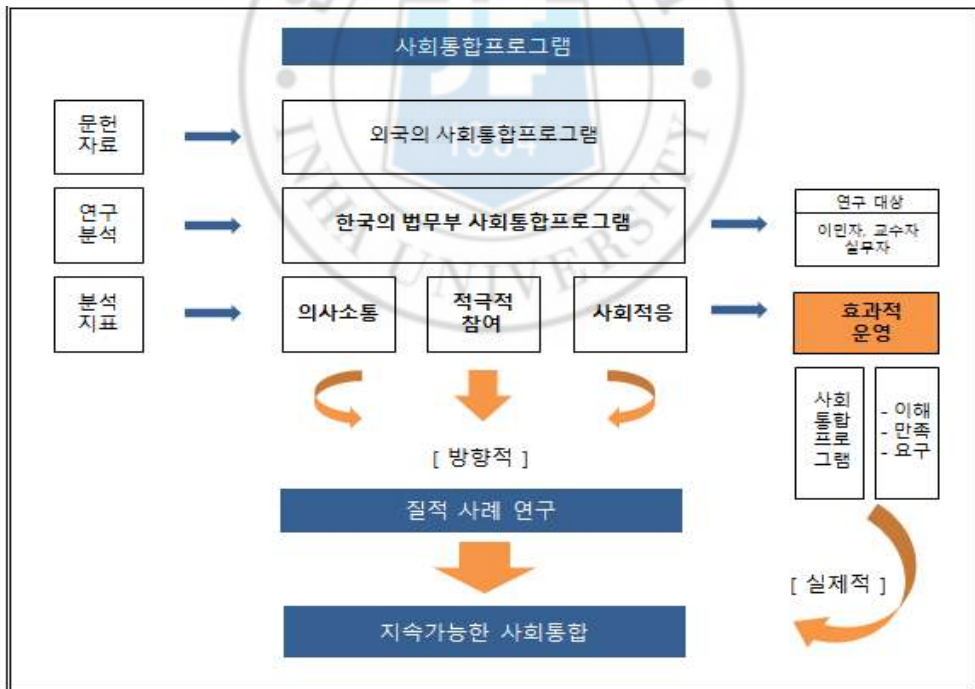
도 차별적으로 담당하는 식의 운영상의 변화도 나타났다. 요컨대 2016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는 국립국어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주체 하에 ‘제2차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를 통해 ‘교사 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즉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의 강사’이외에도 ‘다문화 강사’라는 이름으로 부처별(복지부, 문화부, 지자체) ‘다문화강사 양성’을 개설하고 있는데(차용호,2008), 이는 보다 광범위한 다문화사회 내에서의 ‘교육체계’를 통해 ‘한국사회’로서 다인종·다민족적 상황이 지구 보편적인 경향이 되면서 필요한 소양임을 파악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적 방향 제안을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질적 사례연구방법론의 개요를 기술하고, 제2절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밝히고, 질적 사례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자료 분석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적 고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취지인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에서 출발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경험은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I -5] 연구 분석 흐름

## 1.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

질적 연구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연구(case study),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근거이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방법은 단일 또는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 심층적, 집중적으로 현상을 기술, 분석하여 현상이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이다(Merriam, 1994). 따라서 사례연구는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들을 여러 가지 정보원을 포함하여 세부적, 심층적으로 풍부하게 자료를 수집·탐색한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의 성격은 가설적으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를 실험이나 조사 상황 변수를 통제하여 밝히는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규명하기 힘들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와 논리로 제시되는 경험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경험에 대한 이민자, 교육 강사, 실무자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그들의 배경, 상황, 환경적인 특성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상호작용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적 사례연구(Woods & Catanzaro, 1998)를 고려하였다. 질적 연구는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정된 질서의 진위를 입증하기보다는 한 인간 집단이 어떤 질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질서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더 관심을 두며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계나 신념체계, 행위규칙, 적응 전략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정지영, 2014). 이러한 질적 연구는 참여자들의 상황, 또는 현상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그들의 언어와 논리 속에서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행위의 의미를 찾기 위해 현상, 과정, 사람, 관점과 세계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기술한다. 이때 특정 개념은 일상적인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구체적 맥락과 함께 기록되면 그 행동의 의미는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이해된다(최종임, 2017). 본 연구의 지향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의 경험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를 기본 토대로 본 연구에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의 측면에서 본다면 질적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 이제까지 알려진 바가 너무도 제한적이어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그 주제에 대한 탐색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김영천, 2012). 또한 질적 연구는 분석과 설명방법에서 특정 현상의 복합성과 세부사항 및 전체 맥락을 심층적으로 포착함으로써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 현상의 완숙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Jennifer, 1996, 김두섭 역, 2004).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험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질적 연구가 그 관계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질적 연구는 참여자인 내부자의 관점을 기술하고 이해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양적 연구에서 의도하는 일반화와 이론의 검증, 법칙의 규명과는 달리 특정한 생활세계에 대하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시간을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즉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이론이나 가설로서 현장을 설명하거나 개념화를 하기 보다는 내부자적인 시각에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서술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둔다. 즉,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16). 이는 현상, 사람, 사물 어떤 수량화나 범주화가 더해지기 이전의 상태, 즉 '있는 그대로(Ding an sich: as it is)의 상태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여러 사람들에게 심층적인 이해를 줄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연구자들이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 정책을 이해하고, 방향을 제

안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도 그 중 하나이다. 질적 연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한 연구 관심이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표집의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별한 사건이나 사례,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를 사례연구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김영천, 2016).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사례연구는 사회적 현상과 문제 가운데 학문적으로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해 관찰력과 통찰력을 자극하고, 소수의 제한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활용되며, 개인 및 집단이나 지역사회와 그들의 상황과 맥락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비슷한 사례들과의 공통성을 밝혀 일반화를 시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신경림 외, 2004).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례연구는 전통적 견해(현상학, 근거이론 등)보다 현장에서의 유용성과 교육적 효과 및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 분석에 유리하다. 여기에서의 사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사례의 조건은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을 밝힐 필요가 있고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Yin(2009)의 설계유형 분류에 의하면 단일사례연구와 다중사례연구 유형이 있다. 단일사례연구는 하나의 이슈 또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슈를 예증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를 가진 경우이다. 사례가 매우 독특하고 대다수의 사례를 대표하며 종단적인 사례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신은혜, 2018). 다중사례연구는 하나의 이슈 또는 관심을 두고 이슈를 예증하기 위해 다중사례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동일한 연구 내에 두 개 이상의 사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써 일반적으로 단일 사례연구보다 설득력이 있으며 최근 다중사례연구 설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경우, Creswell(2007)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각 개별 사례의 세부적인 기술과 사례 내의 주제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합하여 공통적인 주제를 분석하며, 각 주제의 의미와 해석을 제시하는 결과분석 구성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Creswell(2007)이 제시한 사례 내 분석에서 사례의 기술은 사례에 대한 견해를 세밀하게 진술하는 것이며 사례에 대한 주제도 포함한다. 설계유형에 있어서 다중



사례연구를 선택하여 두 개 이상의 사례로부터 나오는 비교 및 반복 분석의 결과가 더 현실적이고 단일사례연구에 비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Yin, 2009).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범주화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Giorgi(1985)가 제시한 유효성 확인(Michael,2001:30)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박사 1인을 통합삼각측정법을 적용할 것이다.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이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즉 협력적 증거를 끌어 들임으로써 사례 연구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며 이 절차를 삼각측정법이라 한다. 이것은 사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분석가들, 혹은 이론들을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절차는 오직 한 가지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분석가, 이론에 의존하여 생길 수 있는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연구자 삼각 측정법은 다수의 관찰자나 면담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 본인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경험의 교수 1인 및 박사1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 전사본을 각자 분석하고 비교 후 협의나 재분석함에 있어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 여러 명의 관찰자를 활용하여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이민자의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현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정 이수 및 수료한 이민자와 관련 실무자, 교육 강사(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 과정)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표준화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비자 발급·체류허가·국적부여 등 이민자의 지위결정과

관련된 종합적 수단이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 자체가 갖는 권위와 통제력을 기초하고 있다(문병기 외, 법무부 연구용역, 2013). 따라서 2017년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수립을 기본원칙으로 이민자 통합에 있어서 이민자와 국민 간의 쌍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정책 또한 수혜자적 입장에서 수렴할 필요를 직시하여 이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능숙한 이민자를 표집대상으로 보고 현재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4단계)와 한국사회이해 (5단계) 과정 중, 본 연구자의 5년 간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 교육 경험을 토대로, 4단계~5단계 학습자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참여를 위한 사전평가를 통해 배정 받은 단계(지필평가와 구술시험)가 한국어 능력에 대한 객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위한 대상 선정은 IRB 심의 통과 (2018년 6월 29일)후 공단과 외국인 밀집지역인 부천, 인천, 시흥, 안산, 화성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름 대신 호칭을 S1~S8로 표기하였다. 또한 교육 강사(5명)은 T1~T6로 실무자(3명)는 W1~W3로 표기함을 밝히며,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특성(학습자)

구분	이름	체류기간	학습단계	성별	비자유형	나이	국적
참여자 S1	볼**	3년	4단계	여	D-2	27	몽골
참여자 S2	항**	7년	5단계 완료 (기본) <sup>67)</sup>	여	F-2	27	베트남
참여자 S3	이**	12년	5단계	여	H-2	44	중국
참여자 S4	윤**	5년	5단계 완료 (기본)	여	H-4	28	중국
참여자 S5	샤**	14년	5단계	남	F-6	39	스리랑카
참여자 S6	인**	11년	5단계	남	F-5	44	파키스탄
참여자 S7	하*	9년	5단계 완료 (심화)	남	E-7	32	베트남
참여자 S8	아*	7년	5단계	남	E-7	26	방글라데시

위 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에 대한 인적 사항으로 본 연구자의 연구 기간 중의 학습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가 있으며 그 대상자는 볼\*\* 5단계, 이\*\* 5단계 심화까지 이수한 상태임을 밝힌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구 참여자 S1

연구 참여자 S1은 D-2(유학)비자로 3년 전에 한국에 왔으며, 현재 한국에서 인천 소재 대학교에서 의상을 전공하고 있다. 가족으로 몽골인 남편과 5살 된 아들이 있으며, 심층면담 당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5단계 다문화사회이해 기본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떨어진 상태로 다시 5단계 수업을 재수강해야 하는 상황이다.

67) 5단계 완료 기본이라 함은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5단계 다문화사회이해 기본 과정(50시간)을 말함.

## 연구 참여자 S2

연구 참여자 S2는 베트남 여성으로 베트남에서 E-9(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4년 10개월 거주 후 다시 베트남에 들어갔다가 다시 E-9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였다. 시흥시외국인 복지센터 한국어 고급반에서 일과 한국어 공부를 병행하던 2017년도에 다른 E-9 외국인들에게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바로 사전평가를 통해 4단계 배정을 받고 5단계 기본과 심화과정을 한 번에 통과했다. 현재는 E-9비자가 아닌 F-2(거주)자격이다.

## 연구 참여자 S3

연구 참여자 S3은 중국(조선족)으로 한국에서 거주한 지 12년 되었다. 현재 비자유형은 H-2(방문취업동포)로 중국(조선족)인 남편과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한 명 있다. 현재 취업상태로 평일에 부천 소재 테크노파크 단지 내에서 일을 한다. 한국어 발음이 거의 한국인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유창한 언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는 한국 학교에 다니는 아들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고, 특히 아들이 학교에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 연구 참여자 S4

연구 참여자 S4는 중국 국적으로 H-4(재외동포)비자다. 한국에 처음 올 때는 D-2로 와서 서울 신촌 소재 H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석사 과정을 마친 후 현재 S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다. 현재는 결혼하여 중국인

(H-4)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다가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이 운영기관인 관계로 소개받아 5단계 기본을 이수한 상태이다. 5단계 심화과정 이수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과정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한국에서 최소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 가입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예로 인터넷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외국인 비자로는 할 수가 없어서 편하게 살려면 참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 동기를 밝혔다.

#### 연구 참여자 S5

연구 참여자 S5는 한국거주 14년차의 스리랑카 국적으로 현재 비자는 F-6(결혼)비자다. 한국에 올 때는 E-9비자로 왔으나, 한국 여성과 결혼 후 비자를 F-6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7년 전 이혼을 해서 현재는 혼자 살고 있으며, 개인 사업과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함께 병행하고 있어서, 평일과 주말 다 바쁜 상태이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현재는 개인 사업에 조금 소홀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여성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임신 후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혼을 했다고 한다. 공장에서 일하고 스리랑카에 한국물건을 파는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지만 국적을 바꿔서 편하게 살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 S5도 매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고민하던 과정에서 친구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를 받고 신청하게 되었다. 작년 사전평가를 통해 3단계를 배정 받았으나, 한 번의 단계평가 불합격으로 3단계를 재이수 해서 평가와 관계없이 4단계로 올라왔으나, 4단계 중간평가에서도 불합격을 받았다. 그러나 4단계부터는 재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3번 까지 참여해야하는 운영방침에 따라 4단계를 재이수 한 후 다행히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5단계 기본 과정 중이다.

## 연구 참여자 S6

연구 참여자 S6는 파키스탄 국적의 F-5(영주)비자다. 한국에 거주한지는 11년째이고,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 1명 둔 상태였다. 한국에 D-8(투자비자)로 와서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아이의 교육 때문에 귀화하여 한국에서 살고 싶어 했다. 작년 파키스탄 친구들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듣고 사전평가로 3단계 배정을 받아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4단계 후 중간평가에서 떨어진 후 다시 100시간을 재이수 후 중간평가에 합격하여 현재 5단계 기본 과정 중이다.

## 연구 참여자 S7

연구 참여자 S7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한 지 7년 되었으며, 현재 비자는 E-7(특정활동)이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E-9(비전문취업)비자로 왔다가 친구들이 알려 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심화까지 끝낸 상태이며, 현재 E-7으로 바꿀 수 있었다. 현재 베트남 아내를 초청하여 아내도 현재 시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에서 공부하고 있다. 작년에 모든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한 번에 통과하였으나,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F-5로 비자 변경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비자를 변경할 때 내는 서류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서류에는 여러 가지 점수제반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력, 나이, 10년 이내 E-9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에 4년 이상 합법적 취업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여야 한다고 한다.

## 연구 참여자 S8

연구 참여자 S8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E-7(특정활동)비자를 가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무역업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일했으나, 현재 포스코 건설 해외 영업부에서 일한다. 한국어능력 6급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한국인이라 할 만큼 뛰어나며, 발음 또한 명확하여 면담 시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E-7 비자가 한국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려면 불편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F-5로 비자를 변경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서류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토픽 6급이라서 현재 사전평가 없이 바로 5단계 수업을 듣고 있으며 50시간만 듣고 시험에 합격하면 되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다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평가했다.

다음은 교육담당 강사와 운영기관(거점운영, 일반운영) 실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으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필수요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것은 제한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과 그 외 이력의 노출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교육 강사와 운영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고자 함이다.

<표 III-2> 연구 참여자의 특성(교수자)

구분	이름	성별	경력	나이	자격 및 업무
참여자 T1	서**	여	7년	56	한국어교원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현재 5단계 강의
참여자 T2	선**	여	1년	45	한국어교원2급 현재 4단계 강의
참여자 T3	김**	여	6년	52	한국어교원2급 현재 4단계 강의
참여자 T4	이**	여	9년	50	한국어교원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참여자 T5	김**	여	10년	49	한국어교원2급, 구술심사 자격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현대 5단계 강의

<표 III-2>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강사 및 실무자(거점운영 기관, 일반운영기관)에 관한 인적사항이며, 교육 강사의 경우 40~50대 연령대이고, 한국어 교원 자격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강사는 5명 중 4명을 차지한다. 그 의미는 한국어교원자격증으로는 1단계 ~ 4단계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나,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어 강사는 5단계인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이를 통해 대부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의 경우 한국어교원자격증과 함께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구 참여자 T1

연구 참여자 T1은 한국어 강사 경력 7년 차로 화성, 수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한국사회이해 과정 수업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 석사를 마친 상태였다.

#### 연구 참여자 T2

연구 참여자 T2는 한국어 관련 수업은 2년 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지는 1년 되었다. 대학원에서 다문화교육 석사과정 후 경기도 내 학교(초,중,고) 학생들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으로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원 소재 일반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맡고 있다.

#### 연구 참여자 T3

연구 참여자 T3는 수원소재 일반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을 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으며, 한국어교원 2급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병점지역 다문화거점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연구 참여자 T4

연구 참여자 T4는 한국어 경력 9년 차로 현재 용인 소재 기관에서 강의 중이다. 8년 동안 외국인 밀집지역인 A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담당했었는데 기관 내 사정으로 인해 오랜 경력을 가진 강사들이 재계약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타의에 의해 현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한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S 대학에서 한국학 석사과정 중이다.

## 연구 참여자 T5

연구 참여자 T5는 한국어 경력 10년차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년도인 2009년도 인천에서 강사 공개모집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어교원 2급 자격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한국어를 전공하였다. 현재 시흥과 부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와 1단계 수업 중이며, B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위 교육 담당자들의 공통적 사항으로 발견된 것은 연구 참여자 5명 모두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의와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교육 강사는 지역 구분 없이 주 24시간 이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강사의 질과 강사 강의 배분에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임을 인정하나, 강사의 일정 수업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사 대부분은 다른 일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모든 강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곳에서 강의하길 원했으나, 2곳 이상 하고 있는 강사는 오직 T5뿐이었다. 또한 강사들의 인적사항에서 T3를 제외한 강사들이 모두 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 또는 이수 중이었다.

<표 III-3> 연구 참여자의 특성(실무자)

구분	이름	성별	경력	나이	자격 및 업무
참여자 W1	K**	여	2년	47	한국어교원 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평생교육사
참여자 W2	J**	남	2년	38	*
참여자 W3	E**	여	2년	27	사회복지사 1급

## 연구 참여자 W1

연구 참여자 W1은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인 H시 중점운영기관의 실무자로 경력 2년차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실무자 자격조건에 관한 운영지침 사항으로 거점운영실무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중점기관 실무자도 어느 적정 시간 내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w1의 경우도 본인이 기관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를 청구하지 않고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자가 수업에 참여해야 학습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중점기관 실무자와 법무부 직원이 모여 회의를 할 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현재 중점기관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현 기관이 거점운영기관으로 법무부에 신청하고 인정되면서 공개 모집을 통해 일하게 되었다.

## 연구 참여자 W2

연구 참여자 W2는 현재 S시 소재 일반 운영기관 실무자로, 담당하는 2년 되었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는 중점운영기관의 경우 실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으나, 일반 운영기관은 얼마간의 운영비 즉, 복사비나 다과비 정도만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운영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현재 대학 소속이며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자 혜택을 주고 있어서 학생들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 수업에 참관해야 실습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관은 3단계, 4단계, 5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자는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사항 즉, 한국어교원자격이나,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소지하지 않았다.

## 연구 참여자 W3

연구 참여자 W3는 B시 일반 운영기관 실무자로 담당은 2년 차이다. 이곳은 B시 NGO기관으로 현 건물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다양한 복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기관은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 장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를 진행한 지 6년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의 비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신청하여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4단계 또는 5단계 수업으로 진행하며, 현재는 5단계 수업을 하고 있었다. W3 실무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 3.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 3.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문서 자료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친 심층면담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거나 이민자나 참여 중인 이민자 8명과 교육 강사 5명, 운영 실무자 3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는 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문서자료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심층 면담과 더불어 연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로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사회통합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참여자 면담을 위한 틀을 구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은 녹음하고, 메모노트를 이용하여 연구자에게서 떠오르

는 생각이나 질문을 즉각 기록하여 면담 진행 혹은 내용 분석 작업에 반영하였으며, 녹음된 면담 자료는 연구자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참여자가 구술한 것을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한 자료는 반복적으로 읽고 1차 내용 분석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화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대상은 본 연구자가 현재 교수자로 참여하고 있는 부천(N) 운영기관과 시흥(S)기관 및 그 외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 인천, 화성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 실무자 및 교수자와의 사전 연락으로 연구 목적을 밝힌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를 소개 받아 동의를 구한 후 이민자(8명), 실무자(3명)와 교수자(5명)과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연구방법을 취하고자 하였다. 현상을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자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 한다. 즉 참여를 함으로써 직접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이 느끼는 바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완전 참여는 연구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일상적 상황을 연구 상황으로 전환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내부자(insider)이자 동시에 외부자(outsider)로서 경험을 하게 된다. 본 연구자 역시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수업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학습자의 인식과 반응을 관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2018년 4월 3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인 한국이민재단에서 시행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기본 소양평가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신규)」에 참여하여 만난 교육강사들과의 만남에서 연구주제와 방향을 알리고 조언을 바탕으로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자가 2018년 4월 3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인 한국이민재단에서 시행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기본 소양평가 구술시험관 양성교육(신규)」에 참여하여 만난 교수자들과의 만남에서 연구주제와 방향을 알리고 조언을 바탕으로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찾을 수 있었다. 대상자와의 심층면접을 위해 사전 통화로 약속 장소와 시간이 용의한 곳으로 결정하였고, 심층 면접은 1:1 개별로 실시하였다. 이때 시간은 개인당 2회씩(회당 60분)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추후 미흡한 정보로 연락할 수 있음을 공지 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진행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 심층면담 일시 개요

유형	구분	이름	1차면담	2차면담	면담 장소
학습자	참여자 S1	볼**	2018.7.07. (13:00~14:00)	2018.7.28. (13:00~14:00)	B센터 강사 휴게실
	참여자 S2	황**	2018.7.01. (11:00~12:00)	2018.7.21. (11:00~12:00)	S시외국인센터 강의실
	참여자 S3	이**	2018.7.14. (13:00~14:00)	2018.8.11. (13:00~14:00)	B센터 강사 휴게실
	참여자 S4	윤**	2018.9.12. (14:00~15:00)	-	H시외국인센터 강의실
	참여자 S5	샤**	2018.8.18. (18:30~19:30)	2018.9.08. (18:30~19:30)	A카페
	참여자 S6	인**	2018.9.15. (18:30~19:30)	2018.9.29. (13:00~14:00)	D카페
	참여자 S7	하*	2018.8.12. (13:00~14:00)	2018.9.02. (13:00~14:00)	S시외국인센터 강의실
	참여자 S8	아*	2018.9.29. (18:30~19:30)	-	E카페
교수자	참여자 T1	서**	2018.8.17. (15:30~16:30)	2018.9.07. (15:30~16:30)	H카페
	참여자 T2	선**	2018.8.17. (13:00~14:00)	2018.9.07. (13:00~14:00)	H카페
	참여자 T3	김**	2018.8.24. (14:00~15:00)	2018.9.07. (14:00~15:00)	H카페
	참여자 T4	이**	2018.9.10. (16:00~17:00)	2018.9.27. (16:00~17:00)	G카페
	참여자 T5	김**	2018.8.27. (15:00~16:00)	2018.9.17. (15:00~16:00)	B카페
실무자	참여자 W1	K**	2018.8.14. (13:00~14:00)	2018.9.12. (13:00~14:00)	H시외국인센터 강의실
	참여자 W2	J**	2018.8.24. (19:00~20:00)	-	E카페
	참여자 W3	E**	2018.7.10. (18:00~19:00)	2018.8.21. (18:00~19:00)	B센터 강의실

심층 면접 전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인터뷰 내용을 보냈다. 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경험을 통한 어려움 또는 바라는 점 등에 대한 간략한 기초 정보와 본인의 경험에 관한 내용이었다. 심층면담은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현장 면담을 충실히 진행하고,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종사하는 곳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장소에서 기관 및 담당자의 허락 하에 빈 강의실 또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진행하거나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날짜는 7월부터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그러나 7월말부터 8월 중에 휴가 기간이라 인터뷰 날짜를 정하는데 문제가 많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의 경우에도 8월 2차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이 끝나고 평가를 보는 기간이라서 학습자와 연락하여 만나기에 무리가 있었다. 결국 참여자 S4 와 참여자 w2의 2차 심층 면담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또한 중점기관실무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해 외국인 밀집지역인 A시의 실무자와의 전화 연결에서 인터뷰에 응해 줄 수 없다는 답에 기존 구상했던 것으로 중점 운영기관 2인과 일반 운영기관 2인의 실무자와의 심층 면담을 구성하였으나 3명으로 구성을 수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 실무자 3명과의 인터뷰가 모든 실무자들의 의견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심층면담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고 문헌 연구를 통해 자료 수집을 보완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으로 두 사람의 관점이 상호 교환되고 합의되는 과정이다(Kvale, 신경림 역, 1996). 이때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구조화 된 개방형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심층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수용적, 개방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려 연구자의 자리배치 및 시선에도 신경을 썼다. 심층 면담 내용은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미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어려움 및 문제점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및 개선안에 대한 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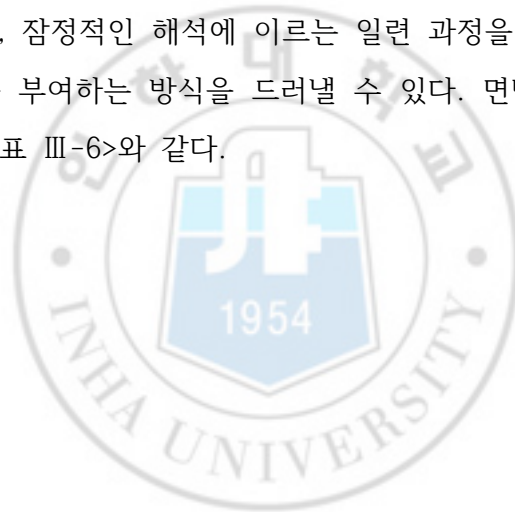
주제로 구성하였다. 면담 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양상에 대략적인 틀을 파악하고, 심층 면담에서 물어 본 주요 질문의 아이디어를 얻어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반 구조화 질문지의 구성 요소는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 내용 구성

구성 요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수자 및 실무자
1.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와 기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는 무엇인가?</li> <li>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어떠한가?</li> <li>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가?</li> </ol>
2.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어려움/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li> <li>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li> <li>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 <li>4.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취지 요소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중 참여자들이 힘들어 하는 점은 무엇인가?</li> <li>2.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운영 중 또는 후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li> <li>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 </ol>
3.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및 개선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가?</li> <li>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li> <li>3. 내가 경험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 <li>4.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좋은 경험과 좋지 않은 경험은 무엇인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 <li>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수자 및 실무자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li> <li>3.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 <li>4.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 또는 불만족한 점은 무엇인가?</li> </ol>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요, 교육운영 및 평가, 운영기관, 교재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면담 질문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질문 유형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 참여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 Schatzman, Bucher, Sabshin(1981)이 구분한 네 가지 질문유형(강윤수 외 역, 2005)을 기초로 면담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질문유형은 가정적 질문, 대안적 질문, 이상적 질문, 해석적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 질문 유형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의 실제적 경험과 자신의 의견 및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잠정적인 해석에 이르는 일련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드러낼 수 있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6>와 같다.



<표 III-6> 심층면담에 사용된 질문 유형<sup>68)</sup>

질문 유형	질문 내용
가정적 질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주로 ‘만약~라면’ 또는 ‘~다고 가정해 보면’으로 시작되고, 대답은 그 사람의 실제 경험에 대한 기술이다.
대안적 질문	다른 견해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질문이다. 연구 주제가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응답자의 의견이나 느낌을 알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질문은 주로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라고 시작하여 질문을 함으로써, 응답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견이나 그 상황에 대한 느낌을 말하게 된다.
이상적 질문	이상적인 상황을 묘사하도록 한다. 이 질문은 주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주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부족한 면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므로 평가 연구에 활용하면 좋다.
해석적 질문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설명하고 그 반응을 묻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에 대한 잠정적인 해석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은 <그림 III-1>과 같다. 연구자는 <표 III-5>에 제시된 질문 유형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맞추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질문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면담 질문은 면담 2차에 공통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68) Strauss, Schatzman, Bucher, Sabshin, 1981, 강운수 외 역(2005: 104).

질문 영역	심층면담 질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정적 질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비자 변경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대안적 질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친구나 이민자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어떤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시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쉬운 거야”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적 질문	이민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좋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한국 사회이해
해석적 질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별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은 본인의 기대와 다르다는 의미입니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또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 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그림 III-1] 심층면담에서 사용된 질문 예시

위 질문 내용을 골자로 각 참여자의 진술 맥락에 따라 구체적 질문을 추가하였고, 면담내용은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녹취 후 필사하였으며, 이후 녹취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코딩작업으로 개념 코드화 하였다. 그 다음 각 사례들에서 도출된 코드 군을 사례 내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이후 사례 내 주제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공통 주제를 도출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경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통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 그 경

험의 구체적 사항과 대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분석기법으로 Yin(2009)의 사례연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Yin(2009)이 주장한 사례연구 분석기법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 매칭은 자료수집 전에 예측했던 패턴과 실제 결과에서 나타난 패턴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한 두 개 이상의 범주들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고 공통점을 결집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설명하기는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사례연구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글 현상에 대해 예측했던 인과적 연결이 실제로 그러한가를 밝히거나,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설명은 현상의 발생기전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사례연구의 증거를 조사하고, 설명적 명제를 수정하는 등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다시 증거를 검토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과정이다. 셋째, 시계열분석은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을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 유형으로 단순 시계열, 복잡한 시계열, 연대기적 분석이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들의 관계에 대해 적절한 답을 찾고, 여러 개의 사건사이나 시간적으로 연결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넷째, 논리모델은 사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규정하고 조작화 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는 원인-결과-원인-결과의 패턴을 반복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며 패턴 매칭과 시계열 분석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다섯째, 사례 통합의 방법이다. 이 기법은 다중사례연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연구를 조합하거나 동일한 연구가 여러 개의 사례로 구성된 경우 사례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연구들의 결과를 취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연구된 사례가 반복된 것인지 아니면 대조적인 것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는 개별 사례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표로 사용하여 한 개 이상의 카테고리별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사례를 통합하여 만든 표를 검토할 때 수치적 합계보다 논쟁적 해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주제에 적절한 분석기법으로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접근 중 패턴 매칭, 논리모델, 설명하기, 사례통합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참여자들의 사회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고, 두 개 이상의 사례 범주들 사이에서 일치점 및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경험의 연결고리를 규정하고 조작화하며, 관계를 파악함과 더불어 개별적인 사례연구 결과들을 조합하여 반복과 대조적 분석을 통해 통합적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먼저 심층인터뷰의 자료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문장과 절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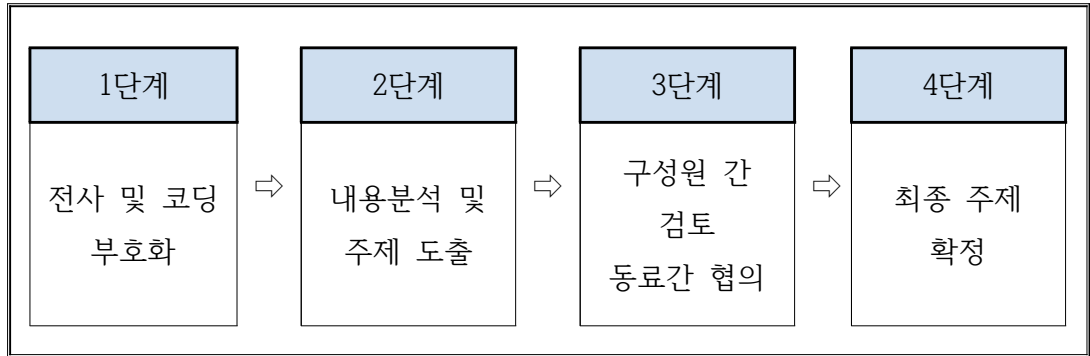
둘째, 각 코드의 의미하는 바를 84개로 분석하여 얻어진 자료를 모아 첫 번째 부호집을 작성하였다. 그 후 원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며 새롭게 추가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코드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부호집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33개 키워드 및 범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18개의 소주제를 도출하고, 부주제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면서 4개의 대주제를 생성해 나갔다.

셋째, 전사자료에 대한 분석 후 누락되거나 왜곡된 결과는 없는지 확인을 위한 절차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와 확인면담(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해 연구자는 Eisner(1988)가 제안한 준거 즉 구조적 확증, 합의적 정당성 및 참조적 적절성을 활용하였다.

먼저, 구조적 확증은 다양한 자료를 서로 관련시키는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인터뷰, 전사자료, 현장노트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합의적 정당화를 위해 기술, 해석,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도출된 의미 주제부여가 맞는지 확인을 위한 한 동료 연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동료 원생 및 지도교수, 연구 참여자 중 교육강사와 실무자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과 일관성을 확인하는 다각도 분석 및 참여자 확인 면담을 범주화 과정에 활용하였다. 또한 교사, 수업, 분위기, 경험 등의 예시를 참여자들과 공유하여 참여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조적 적절성 준거(Eisner, 1988)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와 범주화된 주제의 일관성을

확인하여 자료의 진실성과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의 단계별 과정은 다음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질적 자료 분석 과정]

#### 4.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

질적 연구는 인간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윤리적 기준이 중요하다. 정혜숙과 심우찬(2017)은 국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질적 연구논문 평가기준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질적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와의 관계형성 및 배려와 같은 윤리적 진정성 및 공식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절차들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윤리적 노력으로 일환으로 연구자는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제 14839호)’을 숙지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생명윤리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 계획서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sup>69)</sup>을 받았다. 본 연구는 IRB승인 이후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한해 연구 내용을 충분히 전달한 후

69) 본 연구자는 인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심의를 신청(2018년 5월)하여 연구진행 관련 문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고 보완심의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29일자로 심의결과 승인(승인번호 180515-2A)을 통지 받았다.

연구 동의서를 획득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이에 연구자는 심층면담 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그의 일상적인 삶의 민감한 부분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의 개인의 사생활보호, 양심의 자유보장, 상호신뢰의 약속 보장 및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보장 등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였다 (Reynolds,1979).

먼저, 면접에 앞서 연구과정 동안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연구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개인정보과 비밀보장, 참여 보상에 관해 상세한 설명문을 연구 참여자에게 안내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 시작 전 면담 내용의 녹음 녹취 등에 대한 사전 설명과 면담에 있어서 심리적 불편함이 발생했을 경우 연구 참여자의 의지에 따라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얻었다. 심층면담 후 연구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비밀과 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목소리가 그들의 의도에 맞게 주장되고 있는지, 이 연구가 출판된 후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고려하면서 연구자의 책임을 느끼며 연구에 임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의 불편감이나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구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연구 결과는 연구 참여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책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집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연구 윤리 규정에 의해 철저히 보안을 보장하며, 규정에 의거 자료를 관리할 예정이다. 즉,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료 분석 시에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여 익명화 및 코드화로 처리한다. 자료 분석의 결과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의 참여 경험을 위한 학위 논문으로 나오며 분석을 마친 자료는 3년 후에 폐기 될 것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밝혔다. 또한 연구 관련 문의를 위해 연구자의 연락처와 가능시간을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녕 및 권익에 대한 문의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32-860-9158)로 하도록 안내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의 단계에 따라 Strauss 와 Corbin(1998)이 제시한 대로 부호화하고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의미의 유형을 크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하위요소로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 등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별(학습자, 교수자, 실무자)로 참여 경험을 분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효과, 불편 요인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참여자의 인식을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기대와 참여 및 평가로 범주화하여 각 주제에서 대주제는 3가지, 소주제는 15가지, 키워드는 24가지로 구분되었다. 범주화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대주제는 1가지, 소주제는 3가지, 키워드는 9가지로 구분되었다. 범주화결과는 다음 <표 IV-2>과 같다(본 논문 p164).



<표 IV-1>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학습자의 인식

과정	대주제	소주제	키워드
기대 (참여 전)	의사소통	생존과 문화적 권리	·한국어 능력과 일자리 ·언어와 문화 습득
		관계형성	·의사소통의 부재 (동료, 가족) ·외로움
	적극적 참여	안정적 거주	·안정적 비자 취득 ·능숙한 언어사용
		소통과 수용	·새로운 관계 형성 ·문화적 편견 극복
	사회적응	문화접촉 이전	·더 나은 삶에 대한 개인적 갈망과 욕구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족의 갈망과 욕구
참여 (참여 중)	의사소통	관계성의 지향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경계 해제 ·관계 맺기
		포용적 합리성	·타문화 수용 시도
	적극적 참여	주도성	·갈등 ·성취감
		다양성 존중	·타문화 사람들과의 만남 ·상호협력
	사회적응	새로운 문화접촉	·새로운 사회로의 노출
이문화 공존에 따른 스트레스		·이주에 대한 후회 ·좌절감	
평가 (참여 후)	의사소통	일종의 과정	·대인관계 확장 (사회성 확장) ·의사소통의 부자연스러움
	적극적 참여	상호협력	·상호협력적 거버넌스의 미비
	사회적응	문화적응	·자아 만족

## 1.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기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기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취지에 따른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이라는 대주제 3가지, 의사소통이라는 대주제 하에 생존과 문화적 권리, 관계형성이라는 2가지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생존과 문화적 권리라는 소주제하에 한국어 능력과 일자리, 언어와 문화습득, 관계형성이라는 소주제에서는 의사소통의 부재, 외로움이라는 키워드 4가지가 도출되었다. 적극적 참여라는 대주제 하에 안정적 거주, 소통과 수용이라는 2가지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안정적 거주라는 소주제 하에 안정적 비자 취득, 능숙한 언어사용이라는 키워드가 소통과 수용이라는 소주제 하에 새로운 관계 형성, 문화적 편견 극복이라는 키워드 4가지가 도출되었다. 사회적응이라는 대주제 하에 문화접촉이전이라는 소주제가 도출되어 더 나은 삶에 대한 개인의 갈망과 욕구,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족의 갈망과 욕구라는 키워드 2가지가 도출되었다.

### 가. 의사소통

#### 1) 생존과 문화적 권리

이민자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할지를 결정한다. 즉,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 한국에서의 취업 및 생활적응 또는 국적 변경을 위해 참여를 결정한다(이화숙·이용승, 2013). 이민자들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의 부재로 생활이 불편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통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크게 나타났다. 외국인이라서 받는 부당한 처우와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민자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문화적 권리에 해당한다.

## 가) 한국어 능력과 일자리

이민자의 언어능력은 이민사회에서의 열등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이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로 인해 더 나은 직장과 대우에 대한 처우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심화까지 끝났어요. 비자도 E9에서 지금은 F2로 바꿨어요. 제가 옮긴 회사는 베트남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통역해주는 베트남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통역을 잘 못해요. 회사 사장님이 제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받아서 비자 바꿨다고 하니까 저에게 베트남 회사에 가서 일하면 어떠냐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S2, 18.7.18)

“저는 한국말을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한국에 처음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회사에서 월급을 늦게 줄 때도 많아서 회사를 옮기고 싶었지만, 제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하면 한국말도 배울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어요.(S7,18,9.2)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며,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만족을 나타냈다. 이민자의 언어능력의 부재는 이주국가에서 생존을 위한 생활능력과 문화적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S7은 말하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S2는 한국어 능력향상을 통해 좀 더 나은 직장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만족하였다. 참여자 S2와 S7의 국적은 베트남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전 이들의 비자유형은 E9이었다.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대부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불편함 때

문에 한국어 교육을 받길 원하고 있었지만, 늦은 퇴근과 잦은 야근과 잔업으로 인해 교육의 접근은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그들에게 필요했다고 말했다.

## 나) 언어와 문화 습득

대부분 외국인이 타국에 거주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언어와 문화'이다. 최아영(2018)은 이주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며, 이민자의 언어 능력 부족은 사회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소통의 능력이 낮을수록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내의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합당하지 못한 대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중국 교포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생계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 잘 몰랐어요.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 다녔어요. 문화 거의 안 배워요.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하는데 5단계 문화 배워요. 선생님 덕분에 학생들 문화하고 한국어하고 문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 많이 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 온지 9년 되었어요. 한국 문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문화도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어 책에 말하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S7.18.9.2)

“그 당시에 한국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들으면 비자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 생각이 없어서 그 때는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는데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문화 어려워요. (S2.18.7.1)

“친구한테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천 받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해야 해요. 50시간 안에 배워야 해서 우리가 아는 거 명절, 한국에 대한 거 중에서 이런 건 빼고 법이나 한국에서 사는데 필요한 거 이런 거 더 많이 해야 해요. 부족해요.” (S5.18.8.18)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고, 더불어 비자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거주에 필요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한국 사회에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적 문제나 제도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자 함이었다.

## 2) 관계형성

문화가 다른 두 집단 간 접촉관계 시 문화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의 부재는 동료 간과 가족 간의 관계가 원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은 많은 외로움을 겪는다. 언어는 외부와 단절된 자족적 체계가 아니라 현실, 언어 사용의 정황, 의도, 효과로서의 현실이 교착되어 있다(최문수, 2009). 따라서 의사소통은 동료와 가족 간의 관계형성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하고 있다.

### 가) 의사소통의 부재(동료, 가족)

힘의 차이가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 대등하며 주관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다수와 소수 간의 공통점을 찾고, 서로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의를

통한 정의적 윤리가치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이민자의 의사소통 부재는 직장에서의 동료 간, 집에서의 가족 간의 대화나 관계형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연구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관계형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가 일하는 공장은 저만 외국사람이고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 할 때 말하고 웃고 하니까 재미있게 일하는데, 저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매일 혼자 일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웃고, 자꾸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저에게 말을 안 걸었어요.” (S5.18.9.8)

“저는 조선족이라 한국말을 그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이 한국학교에 다니는데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아는 것이 싫대요. 그래서 길에서 아들 만나면 아는 체를 않은 적도 있어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저랑 말을 잘 안 해요.” (S3.18.8.11)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직장 동료나 가족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거의 없거나,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나 한국인들과의 직장 생활에서 소통의 결여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여 본인 스스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S5는 말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S3는 가족 간에도 본인이 외국국적인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고, 이와 더불어 국적변경을 기대하고 참여 하였다.

## 나) 외로움

낯선 곳에서의 관계형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히 이민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의 극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노출 상황에 익숙할 수 없는 현실 상황 때문에 외부와 격리되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옛날에 나는 한국말 몰를 때 학교에서 나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쉬고, 한국말을 모르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나는 못 알아들으니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 해요. 휴~” (S1.18.7.28)

“말을 잘하면 친구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말을 못하면 사람들하고 이야기 할 수가 없어서 장사하는 것이 힘들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장사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국말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술도 마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와이프 만나서 지금은 행복해요.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려고 하니까 한국말 잘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하면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문화도 배우지만 비자도 바꿀 수 있어서 좋아요.” (S6.18.9.29)

“한국에 와서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고, 토요일에도 잔업 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에 와서 한국말 배우면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주말마다 센터에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요. 한국어도 배우니까 회사에서 아줌마들하고 말도 잘해서 이제는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말하고 한국문화를 더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S2. 18.7,1)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이에 따른 타인과의 관계 회복과 더 나은 일자리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에서 오는 불편과 어려움 및 외로움에서 탈출하고 싶은 기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고 연구 참여자 S1, S2는 말하였다. 또한 앞서 비자 변경까지 해준다는 인센티브에 더 참여하게 되었다고 S6

는 말하면서, 대부분 외국인은 비자 때문에 참여한다고 주장하였다.

## 나. 적극적 참여

사회통합은 입국 단계에서만 국한되는 정책이 아니라, 비자발급부터 시작하여 입국, 체류, 귀화 또는 영주에 이르기까지 이민의 전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길강목, 2011). 최근 이민자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언어와 문화 교육의 의무화와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이주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의사소통을 들고 있다. 이는 이민자의 측면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오랜 기간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1) 안정적 거주

#### 가) 안정적 비자 취득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인이라서 받는 부당한 처우와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비자유형을 받을 수 있다면 변경하길 희망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다른 이민자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에서 좀 더 오래 체류할 경우 체류관련 서류에서 좀 더 편하게 연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결



정하였다.

“지금 F4라서 불편한 것은 없어요. 없긴 한데 처음에는 3년마다 바꾸는 게 싫어서 그냥 할라고 그리고 약간 씩 차이가 있는데 F4로 안 되는 경우 있고, F5로 뭐 할 때는 편한 게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도 집에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다 묶었어요. 이렇게 TV, 인터넷 뭐 이런 거 묶을 때보니까 혜택이 저희 비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으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영주권이 있으셔서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약간 그러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 바꾸려고 하는 게 10년에 한번 마다 등록증 갱신하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한 번 받으면 쪽 쓰는데 그래서 바꿀라고 했죠.”(S4.18.9.12)

“올 때 D8비자로 왔습니다. 또 결혼해서 F6으로 등급 바뀌서 살게 됐습니다. 귀화하고 싶어요. 평소에는 그냥 늙을 때까지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외국에서 사업하고 싶어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여권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나갈 때 비자 망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한국 여권가지고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 잘하기 위해서 국적 바꾸고 싶었습니다.” (S6.18.9.15)

“중국에서 온 교포이다 보니까 애랑 데려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보니 애가 수월하게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S3.18.7.14)

“저는 E7인데 한국에서 사는데 괜찮아요. 하지만 E7은 회사 사장님이 다시 계약 안 해주면 우리 바로 비자 취소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가고 싶으면 지금 회사 사장님이 사인해줘야 해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지만, 사장님 눈치 봐야 해야. 그래서 F2받고 싶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게 되었어요.” (S7.18.9.2)

“지금 회사에서 받는 대우도 좋고 월급도 많아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대체적으로 다 만족합니다. 지금E7비자인데 1년마다 연장하러 출입국사무소에 가는 게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4일 정도 밖에 한국에 없고 계속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그래서 비자를 좀 더 오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니 영주자격이었고, 귀화는 하기 싫어요. 인터넷에서 자격 바꿀 때 보니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받으면 점수를 10점 받는데 그건 그냥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편하지요. 그래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S8.18.9.29)

연구 참여자 S4, S6, S8은 비자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살고 싶었으나, 변경하지 않았을 때와 변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밝혔다. 연구 참여자 S3는 취업비자로 한국에 와서 많이 불편하거나 귀화를 해야겠다는 의지보다는 한국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국적 바꾸기를 희망해서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여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S7은 E-7비자로 사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회사 일을 하는 것이 싫어서 차라리 비자를 변경하여 편하게 일하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들에게 한국어 습득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바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은 했으나, 무엇보다 비자 변경을 통해 한국에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의미가 더 컸던 것이다.

#### 나) 능숙한 언어 사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는 첫째, 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우리말과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지원하고 둘째, 재한외국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주민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셋째, 이민자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위해서 이민자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함(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2018).<sup>70)</sup>이라 명시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취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참여하기에는 능숙한 언어 사용에 대한 기

70) www.socinet.go.kr

대를 갖기도 하지만, 교육 참여에 대한 많은 기대보다는 단지 비자 변경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자도 바꿀 수 있지, 한국말과 한국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말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한국말 발음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 공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S7.18.9.2)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공부하니까 한국 사람들과 말도 잘할 수 있으니까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왔어요. 우리는 100시간 중에서 80시간 안 오면 시험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문화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배우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음하고, 쓰기가 많이 필요해요.” (S6.19.9.15)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능숙한 언어를 구사하고, 이에 따른 비자를 취득하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희망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S6, S7은 생각한 것보다 한국어 능력이나 부족한 부분에서 기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말하기와 쓰기에 관한 교수요목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 2) 소통과 수용

### 가) 새로운 관계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나 집단별 편견(인종, 국가 등)을 갖지 않고 상호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자 변경이라는 공동 목표와 이주 생활의 고됨과 외로움의 공통적인 경험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에 부담이나 불편보다는 새로운 생활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오기 전에는 매일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면 페이스북 하고 자고 또 공장에 가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도 있지만, 5단계 반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힘들지만, 나오면 재미있어요. 우리 반에 중국사람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S7.18.8.12)

“제가 상담으로 일하면서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꼭 중국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서로 싸우고 했어요. 그런데 언젠지 모르는데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귀화하는 거랑 비자 바꾸는 거랑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막~ 이런 얘기 서로 하더라고요.” (S4.18.9.12)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공장과 집이라는 공간의 제한으로 삶의 무료함을 대부분 페이스 북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그러다 알게 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기대가 되었고, 더불어 새로운 환경과 공부를 하면서 주말이 힘들지만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연구 참여자 S7은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S4는 낮은 단계에 비해 높은 단계 학습자들은 같은 국적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재미있어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나) 문화적 편견 극복

편견은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그 집단의 특성으로 그 개인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 한다(Allport, 1954). 이러한 편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성을 가진다(민경숙 외, 2008). 연구 참여자들도 여러 국적의 이민자들과 함

께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대부분 나라마다의 부정적 편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S8은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사라졌고 오히려 더 좋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보면 우리 부서에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목소리도 크고, 정신없어서 저는 중국 사람들이 다 그런 중 알고 처음에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제 뒤에 중국 형님들이 있었는데, 너무 성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사람들은 시끄럽고 정신없다고 생각하던 걸 안하게 되더라고요.” (S8.18.9.29).

“몽골 애들은 힘이 아주 세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해했나? 제가 외국인센터에서 공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몽골 애들이 줄다리기를 하면 거의 다 이겨요. 그리고 몽골 애들은 모두 말을 잘 탄다고 생각했어요. 말고기도 많이 먹고, 우리 문화 수업에서 몽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몽골 사람들한테 좀 그런 거?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단계에 몽골 사람 있었어요. 아니라고 말해서, 몽골에 대해 좀 알게 되었어요.” (S6.18.9.29)

고정관념과 편견은 개인의 양육 환경이나 사회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어떤 환경의 노출이냐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 S6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겪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가 바뀌었다고 한다.

#### 다. 사회적응

인간은 타문화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하고 적응해 간다. 이는 다른 사회의 문화와, 언어 및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Borry(1997)는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자기

집단지향으로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과, 둘째는 타집단 지향으로 다른 문화와 인종 간의 결합의 관계형성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Berry, Poortinga & Dasen, 2002). 연구 참여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욕구로 선주민과의 분리, 동화, 분리 및 주변화의 문화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 문화접촉 이전

문화적응은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일상적 생활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감과 좌절감이 적어지는 상태로 적응하게 된다. 이들은 문화접촉의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 상황의 해소를 위해 본인의 행동변화가 나타나며, 이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욕구라는 명목을 통해 이주사회에 적응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들에게 걱정거리 또는 불안감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비자문제란 것이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에서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1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고 생활하다가 비자문제로 인해 고민하던 중 행정사로부터 비자변경 조건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한 경우나 이 과정을 미리 경험한 친구의 조언으로 참여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을 하면서 주말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도전을 통해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개인의 갈망과 욕구

“저는 국적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살다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저는 또 다른 나라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보니까, 외국인으로 살고, 제가 E7 비잔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입국센터에 1년마다 가서 바꾸는 거

도 귀찮고, 만약 회사에서 저한테 계약 다시 안 해주면 저는 비자가 끝나서 가야하니까, 아직은 가면 안 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거 참여하게 됐어요.” (S8.18.9.29)

## 나)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족이 갈망과 욕구

“아들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하게 됐어요.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도 가야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두 중국 사람이라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외국 사람보다는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S3.18.7.14).

연구 참여자는 사회적응 단계에서 첫 단계인 접촉을 통해 타문화와의 문화적응이 시작되면, 이때 일정한 상황과 갈등에서 더 나은 생활과 상황을 위해 적응을 선택하는데 이것의 하나가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고 연구 참여자 S8, S3는 말하였다.

## 2.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참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참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취지에 따른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이라는 대주제 3가지, 의사소통이라는 대주제 하에 관계성의 지향, 포용적 합리성이라는 2가지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관계성의 지향이라는 소주제하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경계 해제, 관계 맺기, 포용적 합리성이라는 소주제에서는 타문화 수용 시도라는 키워드 3가지가 도출되었다. 적극적 참여라는 대주제 하에 주도성, 다양성 존중이라는 2가지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주도성이라는 소주제 하에 갈등, 성취감이라는 키워드가 다양성 존중이라는 소주제 하에 타문화 사람들과의 만남, 상호협력이라는 키워드 4가지가 도출되었다. 사회적응이라는 대주제 하에 새로운 문화접촉, 이문화 공존에

따른 스트레스라는 소주제라는 2가지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새로운 문화접촉이라는 소주제하에 새로운 문화로의 노출이라는 키워드가 이문화 공존에 따른 스트레스라는 소주제 하에 이주에 대한 후회, 좌절감이라는 키워드 4가지가 도출되었다.

## 가. 의사소통

현재 한국 내 기업체의 경우 노동자를 고용하고 근로를 위한 취업교육 시 가장 필요한 교육이 한국어교육이라고 답변한 이규용의 연구(2015)에서 볼 때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결여이다. 의사소통은 상대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차배근, 198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자중 학습자인 이민자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가장 힘들고 불편했던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존감도 생겼다고 표현했으며, 이를 통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요구됨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소통의 문제가 최선이 되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의 방향은 특히 언어적 지원을 통한 의사소통의 언어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방향을 수립해야할 목적임을 알 수 있다.

### 1) 상호관계성의 지향

#### 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경계 해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 외에 외국인 이민자들은 서로가 한국어로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개방된 마인드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서로 한국에 온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서로 다른 문화인이라는 경계 보다는 한국에 온 낯선 사람들이라는 공통분모로



접근하면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 지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카톡 친구로 연결했어요. 지난 번 우리 한국어 선생님이 베트남 ○○ 씨 왜 안 오지? 하고 걱정하셔서 제가 카톡해서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해드렸더니 어떻게 아냐고 하셔서 제 앞, 뒤 앉은 베트남, 중국, 홍콩 사람들과 점심도 같이 먹어서 전화번호 서로 물어 봤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서로 친하게 지내니까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중국 형님하고 베트남 친구하고 점심 먹으로 밖에 나가기 싫어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하하하” (S8.18.9.29)

“인전에 있는 대학교에서 의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거 신청할 때도 잘 몰라서 여기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 보고 신청했는데, 지금 같이 공부하는 중국 사람이 우리 집 옆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점심도 같이 먹어요. 수업 때도 같이 앉아요. 좋아요.” (S1.18.7.7)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면 괜찮아요. 여러 나라 문화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재미 있어요. 우리 반에 중국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보다 한국어 잘해서 부러워요.” (S2.18.7.1)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들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더 만족하였다. 가끔 자국민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낮은 단계일 경우 한국어 소통의 문제로 자국민 끼리 대화가 많았으나, 5단계의 경우는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대화가 잦다는 말도 했다. 연구 참여자 S8의 경우는 본인의 개방되고 적극적인 성향일 수도 있으나,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수업에서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스스럼없이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만큼 수업참여가 비자 변경의 목적 이외에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S1은 같이 반에 국적이 동일한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누구와

도 대화하지 않고 수업만 들었으나, 항상 옆에 앉는 중국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편하게 대화하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 S2는 중국 국적 교포의 경우 한국말을 매우 능통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수업은 가끔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실망도 하고 그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타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생활문화가 달라서 불편하거나 힘들다라는 생각보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생활에 활력이 되기도 하고, 본인의 능력에 대한 채찍질도 할 수 있어서 국적이 다른 학습자들과의 수업에 매우 만족하였다.

## 나) 관계 맺기

참여자들은 생계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국에 정착해서 초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였으며, 거의 본인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어를 익힐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언어적 경험이 사람들 간의 소통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서로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 하는 거 좋아해요. 여기 와서 중국 형님하고, 베트남 친구들도 만나고, 서로 말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토요일에 나와서 공부하는 건 힘들지만 저는 재미있어요. 오늘 아침 비행기로 필리핀에서 왔어요. 수업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거 끝나고 다시 필리핀 출장을 가야 해요. 근데,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S8.18.9.29)

“저는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회사에서 사람들과 잘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센터에서 공부하고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하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말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 선생님하고, 우리 회사 식당 이모

들하고 자주 말해요.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할 때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만나서 말도 해서 좀 재미있어요. 대만 친구도 생겼어요.” (S2.18.7.14)

“제 학생들 중 서로 국적이 다른데도 서로 카톡도 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하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낯설어서 말도 안하더니 2~3번 정도 만나면 서로 식당에도 같이 가고, 쉬는 시간에 시끄러울 정도로 하하하. 가끔은 자기나라 사탕이나 초콜릿도 가져와서 나눠먹고, 각자 나라의 언어는 달라도 한국말로 소통하면서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T1.18.9.7)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이방인으로 만나 한국어를 매개체로 소통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느껴졌다고 표현한다. 그냥 사람... 이러면서 그들은 힘든 한국생활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한국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확장되었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서로 말도 건네 보지 못했던 나라 사람들과도 많이 가까워졌고, 회사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먼저 한다는 S2처럼 의사소통은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필수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2) 포용적 합리성

### 가) 타문화 수용 시도

이민자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나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의 방향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한다. 다문화 수용은 인지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정서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며, 행동적으로 다른 문화와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것이다(김미진, 2012).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과 만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화적·정서적 관심은 소통으로 연결되었다.

“저는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토요일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러 오면 앉아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몽골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 항상 중국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나고 화도 조금 났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저랑 집도 가깝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이제는 너무 친해요.” (S1.18.7.28)

“점심시간에 파키스탄 아저씨가 그 나라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비어 있는 교실에서 먹었어요. 처음에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아저씨가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와서 옆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하고 먹고 있었는데 쳐다보니까 먹어보라고 했어요. 먹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먹었는데, 냄새하고 달랐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라 말을 잘하게 되었어요.” (S.18.8.11)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마음을 먼저 열고자 하는 것이 꺼려졌다고 연구 참여자 S3는 말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기대하고 접근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으나, 상대방에서 마음을 열고 접근하면서 본인도 관심이 생겨서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연구 참여자 S1도 말하고 있었다.

## 나. 적극적 참여

사회통합은 입국 단계에서만 국한되는 정책이 아니라, 비자발급부터 시작하여 입국, 체류, 귀화 또는 영주에 이르기까지 이민의 전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길강목, 2011). 최근 이민자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언어와 문화 교육의 의무화와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이주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의사소통을 들고 있다. 이는 이민자의 측면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오랜 기간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공은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고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1) 주도성

주도적 행위를 개인이 행하는 자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위”로 정의하였다 (Griffin ,2007) 개인의 자발성이 주도적 행위의 필수적인 요소로, 연구 참여자들은 비자 변경 및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본인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나, 현실적 문제 즉, 생활을 위한 노동의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질 수밖에 없거나, 바쁜 시간을 내어 수업에 참여하였으나, 평가에서의 불합격은 본인의 주도적 의지가 꺾임과 동시에 과정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큰 것으로 보였다. 반대로 과정에 합격하여 승급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갈등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의 여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함께 힘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의 포기과 계속 참여할 것인가의 진행에 대한 갈등으로 꼽는 이유로 첫째, 일과 병행하면서 생기는 문제. 둘째, 수업 신청의 어려움. 셋째, 수업시간과 평가. 넷째, 시험의 합격 여부를 들었다.

### ① 일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연 3회 진행되고 있다. 회당 100시간이나 50시간의 수업시간 중 80% 참여자에 한해 시험 볼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토요일 잔업이나, 주.야간 일이 바뀔 경우 퇴근과 동시에 수업 참여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며 이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정지에 대한 갈등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였다.

*“저는 일요일에 공부했어요. 하루에 8시간 씩. 일주일 동안 일하기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잔업이 있을 때는 힘들어요. 사장님 말하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8시간 다 빠질 수 없어서 오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에만 간 적도 있어요.” (S7.18.9.2)*

*“다음 주부터 주.야간이 바꼈어요. 그럼 공장 일 끝나고 바로 와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다시 회사에 가야하는데 잠을 못자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일단 힘들어도 수업에 와서 쉬는 시간마다 자면서라도 공부 꼭 하세요. 빠지지 말고 라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면 저 일 그만두거나 공부 그만두거나 결정해야 하니*

까” (S5.18.9.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연구 참여자 S7은 말한다. 자신의 쉬는 날까지 포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큼 절심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고민하게 되어 많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연구 참여자 S5 대답은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 ② 원하는 수업 신청의 어려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수업신청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학습자 중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과 거주지역과의 거리가 먼 경우가 그 예이다. 이는 수업 접수시간과 단계 및 장소의 수가 참여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학습자들은 참여자들이 많은 지역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좀 더 많은 단계와 접수자를 배려한 수업을 많이 열어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어느 학습자의 경우는 본인이 몇 분 차이에 원하는 수업에 등록하지 못한 것에 억울하다고까지 호소하였다.

“저는 다행인지 제가 받은 센터에서 5단계를 하니까 접수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빨리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고 해서 12시부터 등록인데 11시 50분부터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저는 시간과 요일을 다 아니까. 바로 센터에서 12시5분에 등록할 수 있었어요.....(중략)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온다하더라고요. 본인실수로 늦게 등록한 것도 있고, 근처에 없는 단계도 있고.. 이래저래 상황도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S3.18.8.11)

“저는 12시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준비했어요. 근데 12시 3분에 다 찼어요. 어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시흥에서 살지만 부천까지 갈 수 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부천까지 가는 버스가 한 번에 없어서 저는 버스랑 지하철 그리고 또 내려서 버스를 타야해서 거의 2시간 걸렸어

요.” (S2.18.7.21)

“일요일에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일요일에는 다 쉬지만 토요일에는 잔업이 있거나 바쁠 때는 회사에 가야하거든요. 그런데 12시에 들어가서 등록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은 다 잤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는 12시부터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 차요. 그것도 몇 분 사이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요일만에 등록해서 수업하고 있어요.” (S5.18.9.8)

“신청을 빨리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한 반에 20명 뽑잖아요. 그런데 빨리 신청한 사람 들어가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제가 계속 야간해가지고 일요일 날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못 했어요. 3분 만에 마감됐어요. 제가 12시 2분에 들어갔는데 못 했어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 그게 좀 힘들어요. 나는 12시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근데 12시 2분에 들어갔는데 못 했어요. 그게 좀 억울한 거 같아요. 친구한테 말하니까 PC방에 가서 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다음엔 그렇게 하려고요” (S6.18.9.1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들 중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은 거주지 근처 운영기관에서 수업 받길 원하고 있으나, 각 단계에 1개 또는 2개 반을 운영하고 학습자 정원도 최대 40명 정도(운영기관의 좌석 여부에 따라)로 제한하다 보니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나마 마감되기 전에 요일을 맞춰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들은 학습장소 선택에서 오는 불편함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연구 참여자 S2, S5, S6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 나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운영기관의 장소에 대한 문제라면 지자체 기관을 활용해서라도 수업이 많이 개설되기를 바랐으며, 또한 개강 전 학습자 참여 수를 확인하여 적절한 수업 배치를 원하고 있었다.



### ③ 많은 수업시간과 평가의 어려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시간에 관해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교재에 대한 수업시간의 양은 적절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이 듣는 것에 대해서 100시간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5단계 수업 50과를 50시간에 끝마치기에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매 수업 후 따르는 평가에 있어서 떨어지면 어찌나하는 불안감보다는 재이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크다는 반응이었다.

“지금 토요일에 수업해요. 8시간 썩 공부하는 건 힘들지만 일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면 좋아요. 저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2단계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와서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일이 바빠서 야간일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없어가지고... 그리고 시험은 봤는데 준비도 안 하고 해서 그냥 2단계부터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때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한국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2단계부터 4단계까지 100시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5단계 50시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70시간이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줄여줘야 해요.” “저는 4단계 중간평가 한 번 떨어졌어요. 다시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다른 사람 떨어져서 다시 공부했는데 다시 떨어졌어도 5단계 올라갔어요. 저는 올라가는 거 합격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S518.9.08)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말도 하고 글씨도 알다보니까, 100시간은 길다고 보는데, 다른 나라 애들한테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쪽은 말을 잘 알기 때문에 뭐 별도로 교포들만 분리해서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줄이면 어떠냐 싶어요.” (S3.18.7.14)

“저는 학교에 다니는데 평일과 주말에 수업 듣는 거 힘들어요. 학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애기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데리고 와야 할 때도 있어요. 수업 100시간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또 100시간 들어야 해요. 저는 4단계 한

번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똑같은 거 계속 듣는 거라 재미도 없고, 졸립고.....이번 시험에 한번에 합격해야 하는데 5단계 너무 어려워서 걱정돼요.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휴~~~” (S1.18.7.28)

“솔직히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거 때문에 시간적인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바빠서..... 시간 빠져 여기서 공부해야 하고.....지금 8시간이 힘들지만 빨리 수업을 끝내면 좋겠어요. 일도 해야하니까.(중략) 까먹지 않으려고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게 좀 힘들어요. 공부하는 건 좋아요. 한국문화, 한국어 배우니까” (S6. 18.9.15)

학습자 대부분은 수업시간을 듣고 평가에서 떨어지면 과정을 재이수해야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일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은 없고, 수업 듣는 것도 힘든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육 강사에게 시험문제 좀 알려달라고 조른 적도 있다고 했다. 최아영(2018)은 한국어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체류자의 78.53%이상이 중국인임을 감안하여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 차이를 고려한 분리 수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듯이 연구 참여자 S3역시 수업시간의 재조정과 분리 수업을 말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인 0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평가에 불합격하더라도 한 번 더 과정을 이수하면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단계가 올라간다.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체계는 재이수 학습자들의 불성실한 학습태도를 조장한다고 연구 참여자 S2는 말하고 있다. 재이수 학습자들은 수업 시수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업 시간에 옆드려 자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으로 교육 강사나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과정의 재이수도 합격 후 단계가 올라가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8년 3월 1일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과정은 불합격 시 3차까지 수업에 재등록해야 하며, 최종 불합격 시에는 기존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귀화시험 면접시험의 면제가 되었던 규정이 바뀌어 합격 시에만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시험 합격 여부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 합격 여부가 이민자들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이야기하였다. 떨어질 것 같아서 자신이 없었던 사람에게 합격은 희망을. ‘설마 떨어지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불합격은 다 때려치워야지. 라는 좌절이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떨어진 후 재이수를 안 하고 영주나 귀화자격을 받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평가의 불합격은 단계 수업을 재이수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교재로의 학습이라는 것에 학습참여도의 저하와 함께 적극적인 수업참여보다는 시간을 채워서 단계를 올라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재이수에 대해 교수자나, 타 학습자의 눈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었다.

“저는 토픽으로 해서 5단계로 바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센터에서 일하니까, 중국분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대부분 4단계가 본젠거 같아요. 항상 시험을 못 넘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 2번 시험을 봤어요. 근데도 못 넘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이해는 가긴 해요. 그게 힘들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못하겠다고 포기해야하나 걱정해요.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귀화나 영주권신청이 어려운데, 그래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면 쉬우니까, 그래서 다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S4.18.9.12)

“저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받았어요. 그리고 합격해서 4단계도 받고, 5단계도 안 떨어지고 합격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다른 친구들처럼 폐복도 안하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비자 바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S7.18.9.2)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서 합격의 동기부여는 학습자들의 참여효과에 많은 도움이 된 반면, 열심히 참여는 하지만 시험에 매번 떨어지는 학습자는 포기 및 좌절로 이어졌지만,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S4는 현재 외국인센터에서 통역으로 일하고 있으며,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관이 중점기관이므로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본인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결국 다시 등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도 이 과정에 참여해서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 알고 있는데 4단계에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으면서 수업 시간이 많다는 등 시험이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할 때면 본인도 답답하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 수업이나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큰 불만이나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과 병행하고 수업의 80%를 참석해야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회사 일로 빠질 상황에서 회사의 눈치와 피곤함을 견뎌야한다는 것에 너무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안이기에 별 불만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고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이를 통해 비자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좀 더 교육적인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는 시간을 줄여서 좀 더 빨리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귀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불합격을 경험한 이민자들과 정보를 알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이보다 쉽게 비자를 변경하거나 국적을 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대부분 만족함을 나타냈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중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는 힘든 과정에서 주말에 쉬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비자변경을 위해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시간이 8시간은 교육 강사나 학습자에게 버거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시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시간을 늘려서 빨리 과정을 끝내기를 바랐다.

## 나) 성취감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의 여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함께 힘든 과정에서도 평가에 합격하여 가족과 주변인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합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를 다질 수 있었으며, 과정 이수에서의 합격과 비자 변경을 통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비자 유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요소로 작용되고 있었다. 매 과정 후 평가가 불합격 시 좌절과 재이수의 고민도 되지만 반면 합격이 무엇보다 큰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합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단계평가 받으면 일주일 안에 합격을 문자로 보내 줘요. 그때마다 기다려져요. 떨리기도 하지만 합격했다는 문자가 오면 내가 해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공장 다니고, 야근하고, 공부하느라 쉬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하하하” (S2.18.7.21)

“4단계 시험 합격하고 너무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좋진 않았던 거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말하니까 엄마 축하한다고 해서 아들한테 엄마가 뭔가 해낸 것을 보여줘서 더 좋더라구요. 5단계도 한 번에 합격하면 좋을 것 같아요.” (S3.18.8.11)

“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재미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고, 같이 이야기기도 하고, 가끔 서로 필요한 정보를 말하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5단계를 끝냈으니까, 시험만 합격하면 되니까 좀 위라고 하죠? 뿌듯하다고 하나? 저는 시험 보는 건 자신 있는데 수업에 오는 게 가장 부담스러웠거든요. 해외 출장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끝냈다니 뭔가 성취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S8.9.29)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는 그들이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도에 비례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여자 S8은 과정에서 다른 나라 학습자들과의 친밀감이 높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친해질 수 있어서 해외 출장 중인데도 새벽에 귀국해 듣고 저녁에 다시 출장을 간 적이 있다고도 했다. S8의 경우는 다른 비자 유형의 학습자와 다른 상황으로, 과정의 이수와 평가의 합격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었다. 그로 인해 다른 참여자보다 수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평가에 합격해서 느끼는 자신감과 성취감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부러움과 칭찬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느꼈다고 S2와 S3는 말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정책적 참여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이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향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 2) 다양성의 존중

다양성이란 ‘각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일반적 특성’이며, 문화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므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한과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전종한 외, 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통합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타문화 사람들과의 만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 외에 외국인 이민자들은 한국어로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조금 더 개방된 마인

드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서로 한국에 온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서로 다른 문화인이라기보다는 한국에 온 낯선 사람들이라는 공통분모로 접근하면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 지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카톡 친구로 연결했어요. 지난 번 우리 한국어 선생님이 베트남 ○○ 씨 왜 안 오지? 하고 걱정하셔서 제가 카톡해서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해주셨더니 어떻게 아냐고 하셔서 제 앞, 뒤 앉은 베트남, 중국, 홍콩 사람들과 점심도 같이 먹어서 전화번호 서로 물어 봤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서로 친하게 지내니까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중국 형님과 베트남 친구하고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기 싫어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하하하” (S8.18.9.29)

“인전에 있는 대학교에서 의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거 신청할 때도 잘 몰라서 여기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 보고 신청했는데, 지금 같이 공부하는 중국 사람이 우리 집 옆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점심도 같이 먹어요. 수업 때도 같이 앉아요. 좋아요.” (S1.18.7.7)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면 괜찮아요. 여러 나라 문화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재미 있어요. 우리 반에 중국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보다 한국말 잘해서 부러워요.” (S2.18.7.1)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들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더 만족하였다. 가끔 자국민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낮은 단계일 경우 한국어 소통의 문제로 자국민 끼리 대화가 많았으나, 5단계의 경우는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대화가 잦다는 말도 했다. 연구 참여자 S8의 경우는 본인의 개방되고 적극적인 성향일 수도 있으나,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수업에서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스스럼없이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



할 만큼 수업참여가 비자 변경의 목적 이외에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S1은 같이 공부하는 반에 국적이 같은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수업만 들었으나, 항상 옆에 앉은 중국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 편하게 대화하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 S2는 중국 국적 교포의 경우 한국말을 매우 능통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수업은 가끔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실망도 하고 그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타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생활문화가 달라서 불편하거나 힘들다라는 의미보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생활에 활력이 되기도 하고, 본인의 능력에 대한 채찍질도 할 수 있어서 국적이 다른 학습자들과의 수업에 매우 만족하였다.

#### 나) 상호협력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모두 이수 한 학습자의 경우는 바뀐 비자를 통해 좀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 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S2는 시간이 된다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 배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이제 한국에서 자신들이 가장 약자로 느껴지던 부분이 해결됨으로 그들이 이제 타인을 돌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다고 한다. 매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으나, 지난주에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자국 커뮤니티의 거리 청소에 참여해서 기분이 좋았다고도 했다. 이은령(2014)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을 막고 이민 사회에 적응하며, 융화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 더 넓게는 이미 사회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비자 변경이라는 인센티브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부가적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최아



영(2018)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이수 후 추가적인 언어 학습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실하게 이수 시 좋은 성적을 얻을 경우 직업 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의 요구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포인트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다. 사회적응

Berry는 문화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리적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적어지는 상태를 사회적응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의 경우도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위한 방편으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새로운 문화접촉과 함께 소수자이자 약자라는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노출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나, 가끔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는 이주에 대한 후회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입장이다.

##### 1) 새로운 문화접촉

###### 가) 새로운 사회로의 노출

이민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 심리적 적응과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합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접촉과 함께 소수자이자 약자라는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노출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다 몰라서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회사에서 베트남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외국인센터를 말해 줬어요. 한국말을 배우니까, 여러 곳에 놀러 갔어요.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혼자서 서울도 가고, 휴가 때는 부산에도 갔다 올 거예요. 이제 혼자 자신 있어요.” (S2. 18.7.21)

“한국어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나는 내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는 더 뿌듯해야 한다고 할까? 뭐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길에서 우리 아들이 친구랑 갈 때 저 보면 피했는데, 이제는 같이 다니는 거 괜찮아 해요. 그래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볼 때 마다 꼭 합격해야 해요.” (S3.18.8.11)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의 합격으로 좀 더 자신감이 생겼으며, 항상 위축되어서 혼자 여행을 가거나,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불안 또는 힘들다고 생각했었다는 연구 참여자 S2와 가족이 자신의 평가 합격을 자랑스러워 하면서 좀 더 사회생활이 당당해졌다고 연구 참여자 S3는 말했다.

## 2) 이문화 공존에 따른 스트레스

타문화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문화적 충격이나 갈등을 겪지만 추후 조금씩 차이를 수용하고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간의 인지적 정서, 태도 등이 변화 된다(Bennett & Bennett, 2004). 타문화를 수용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타문화의 동의에 따른 문화적 차이는 억압하지 않으나 본인의 관점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다.

### 가) 이주에 대한 후회

인간은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 공존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문화적응을 통해 이민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결과를 도출하지만, 이와 반대로

본인의 문화와 이주 문화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문화적응의 실패로 삶에 대한 자괴감과 이주에 대한 후회로 나타났다.

“옛날에 저는 한국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우리 반 수업에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거의 다. 저랑 인도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3명만 빼고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수업시간에도 그렇고,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이 좀 났어요. 그런데 말을 못 해요. 저랑 같은 몽골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말했을텐데.... 휴~ 그때 내가 왜 한국에 왔을까하고 후회하기도 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때 같은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좀 안 좋아요.” (S1.18.7.28)

“내가 한국에 온 거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면서 5단계 공부배우면 한국문화랑 한국사회이해 공부하거든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문화랑 역사랑 배워요.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한국사람 아닌데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나?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다 안하고 그냥 다시 우리나라로 갈까 생각도 한 적 있어요.” (S6.18.9.15)

## 나) 좌절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려고 주말에 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또 100시간 공부해야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S5.18.8.18)

“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할 때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60점을 맞아야 합격인데 58점 맞았어요.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2점만 더 맞았으면 합격했을텐데..... 또 공부해야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이랑 내가 공부하는 거 아는 사람들에게 뉘그러고 하고, 주말에 또 회사에 못나간다고 사장님한테 말해야하고, 다시 해

야하나 말아야하나 생각 많이 했어요.” (S7.18.8.12)

연구 참여자들은 평가에서의 불합격이 큰 좌절감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100시간을 참고 공부했는데,,,,,, 회사에서 주말마다 잔업을 해야 한다는 사장의 말에도 매번 미안하다는 대답을 해서 눈치를 보던 생각에 다시 반복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가족에 대한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는 연구 참여자 S5, S7의 대답이었다.

### 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따른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따른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취지에 따른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이라는 대주제 3가지, 의사소통이라는 대주제 하에 일종의 과정이라는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일종의 과정이라는 소주제하에 대인관계 확장(사회성 확장), 의사소통의 부자연스러움이라는 키워드 2가지가 도출되었다. 적극적 참여라는 대주제 하에 상호협력이라는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상호협력이라는 소주제 하에 의사소통의 부자연스러움이라는 키워드 1가지가 도출되었다. 사회적응이라는 대주제 하에 문화적응이라는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문화적응이라는 소주제하에 자아만족이라는 키워드 1가지가 도출되었다.

#### 가. 의사소통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고, 더불어 비자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작 비자 변경과 일 때문에 수업이 좀 더 빨리 끝내기를 바람과 동시에 문화를

배우는데 50시간은 짧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S7의 경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과정 즉, 한국사회이해심화까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어체와 문법의 오류가 많아서 인터뷰 시 답변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재차 질문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영주 또는 귀화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민자 본인의 역량에 따른 문제 혹은 시험의 수준 및 평가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 1) 일종의 과정

일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합격증을 받고나서 모든 것을 이룬 듯 뿌듯함을 느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한국에서 비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일해서 돈만 벌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고 그 때를 떠올리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참여를 통해 얻어진 합격이라는 결과가 가족과 주변인으로부터 부러움과 칭찬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뿌듯함에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기회였다고 말하고 있다.

#### 가) 대인관계 확장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 국적자라는 소수자이자 약자라는 생각에 항상 위축됨을 느꼈다고 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대우받지 못하는 약자. 그러나 이제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한국말로 차별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좀 더 당당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시험을 통해 합격이라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한국어 능력뿐만 아

니라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보다 더 친숙해졌다고 본인이 느낀다고 하였다.

“우리 사장님 옛날에는 저 외국사람이라고 한국말도 잘 못한다고 욕도 한적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요. 제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이수증 보여줬거든요. 사장님이 이것로 뭐하는거냐고 해서 영주자격으로 바꾸면 저 한국에서 일하는거나 사는거 괜찮다고 했더니, 우리 사장님 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는 욕도 안 해요. 하하 회사 사람들한테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라고 하니깐 웃었어요. 지금은 옛날보다 공장에서 말도 더 하고 아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아침마다 많이 인사해요.” (S7.18.9.02)

“저는 회사에서 외국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야 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말을 잘하는데 “하하,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 그래도 제 외모를 보고 ○○○○사람이라고 가끔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 처음 와서는 제 외모 보고, 한국말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랑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친구들도 많고 편해요. 그런데 제가 영주자격을 가지면 사람들이 좀 더 무시를 안 할 거란 생각도 들어요. 제가 E7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매년 비자 변경하는 게 싫어서 신청하게 됐는데,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도 같아서, 지금이라도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은데 비자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저는 시험에 자신이 있으니까, 빨리 보고 싶어요.” (S8.18.9.29)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시험을 통해 합격이라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보다 더 친숙해지고 사회성도 확장됐다고 본인이 느낀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가장 원하던 부분을 이룬 것 같은 성취감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은 회사나 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말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다는 답변을 연구 참여자 S7, S8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 나) 의사소통의 부자연스러움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이민사회에서의 열등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사회적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적 상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인 5단계를 이수한 상태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인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 몇몇과의 대화는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느낄 수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상태라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는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는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저는 말하기, 쓰기 힘들어요. 공부는 괜찮아요. 말하기 공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말하기와 쓰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할 때와 지금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식당 이모랑 얘기하면 자꾸 뭐라고? 응? 이렇게 다시 물어요. 제 말이 잘 모르겠나요?” (S7.18.8.12)

“한국 대학교에서 의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니까 쓰기를 매일 해야 해요. 그래서 쓰기는 괜찮아요. 말하기 너~ 무 힘들어요. 저는 말하기 힘들니까 학교에서 말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학교에 몽골 사람 못 만났으니까. 몽골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한국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 학생들끼리 쳐다보고, 응~~ 다시 말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몰르면 다시요? 하니까, 저는 괜찮아요. 해요.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발음이 너무 몰라요.” (S1. 18.7.28)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지원함에 따라 국민과의 빠른 이해 및 의사소통과 함께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되길 바라는 취

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최종 단계 이수생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의 향상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교육과정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정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수반력의 부재에서 발생한 문제는 한국 사람들과 대화 시 이민자 스스로 끝내나 정리한다는 대답을 연구자 S1, S7로부터 들었다. S1, S7의 경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재가 시험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작 말하기에 필요한 교재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시험을 위한 교재 구성의 교수요목에 지나친 치중 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교육과정의 재편성을 바라고 있었다. 이에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어의 적절한 구성과 언어 통합교육의 실현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적극적 참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만이 아닌 이민자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외국인주민센터나 NGO단체 또는 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그들의 실질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타국의 이방인이 아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관계임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예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거리 청소와 야간 방법활동 그리고 지역행사의 통역 등을 통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1) 상호협력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인정하고 편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련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개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인 비자 변경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바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작동되고 있다는 연구 참여자 S4는 말한다.

“제가 공부하던 반에서는 저는 중국 국적인데, 여러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많이 친했어요. 점심시간에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근데 국적 받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데 서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방법을 많이 알려 주더라고요.” (S 4.18.9.12)

### 가) 상호협력적 거버넌스의 미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은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 이제는 동반자의 의식을 갖도록 시민문화의 강화와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시민사회 참여기회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국가와 지역사회,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협력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며,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시민문화가 발전해가는 사회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의 보완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는 작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다 마쳤고, 이제 비자가 F2예요. 요즘은 제가 친구들한테 사회통합프로그램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비자 바꿨지만 내년에 베트남으로 돌아갈 거예요. 부모님이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자꾸 오래요. 한국에 있을 동안 한국문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시간 있으면 다시 한국에 와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중략) 비자가 E9 아니니까 그냥 마음이 안 불안해요. 일요일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하느라고 쉼 적도 없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시간이 생겼어

오, 지난 주 센터에서 정왕동 거리 청소에도 참석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도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뭔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해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 주면 좋은지 몰라요.”(S2.18.7.1)

“ 지난주에 저는 ○○시의 자랑스러운 외국인상 받았어요.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도 나가고, 어떤 때는 우리 회사 직원 아이들이나 웨딩 사진도 찍어 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 잘 되도록 제가 무엇인가 많이 하고 싶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끝나고, 비자 바꾸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방송에도 나가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S8.18.9.28)

이민자의 한국생활의 적응과 안정적인 비자 발급이라는 목표 성취 후 그들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참여자 S2의 인터뷰에서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 이민자들이 일에 지쳐서 주말에 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의 생활을 바라는 반면,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이민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에 대한 미비는 이민자의 인적자원 활용을 제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들이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시민사회 참여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형태의 커뮤니티 구축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 S8는 말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S2는 시간이 된다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배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이제 한국에서 자신들이 가장 약자로 느껴지던 부분이 해결됨으로 그들은 이제 타인을 돌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다고 한다. 매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으나, 지난주에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자국 커뮤니티의 거리 청소에 참여해서 기분이 좋았다고도 했다. 이은령(2014)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을 막고 이민 사회에 적응하며, 융화해서 살

아가는 것 외에 더 넓게는 이미 사회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비자 변경이라는 인센티브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부가적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최아영(2018)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이수 후 추가적인 언어 학습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실하게 이수 시 좋은 성적을 얻을 경우 직업 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의 요구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포인트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다. 사회적응

##### 1)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란 인간이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말하며, 인간은 사회제도 및 대인관계를 경험함으로써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Gibson, 2001).

##### 가) 자아 만족

이민자들은 이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축되고 불안함을 느낀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알게 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충분하다는 대답을 하였다. 이에 본인 스스로 만족하기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었다.

“제가 지금은 비자가 F6예요. 처음 한국에 와서 비자가 다 끝나가니까 매일 걱정하고 힘들었는데,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기본도 좋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네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저는 1번 기회를 줬는데 또 그래서 이혼했어요. 네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 비자는 F6이지만 이것도 불안해서 빨리 F5바꾸고 싶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하는데, 좋아요. 빨리 따서 돈 열심히 벌어야죠. 저 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주고 있어요.” (S5. 18.9.08)

“처음에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굳이 영주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거랑, 힘든 거랑 있더라고요. 핸드폰 가족끼리 묶는 거랑. 인터넷 등록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했어요. 저는 지금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센터에 한국어랑 회사 임금문제 때문에 오는 중국 사람들한테 많이 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S4.18.9.12)

연구 참여자 S4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대답을 하였지만, 한국어 능력이 많이 늘었 다기 보다는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 편안하게 살기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었다. 또한 과정 이수와 시험을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 수 있다는 것에 본인 스스로 매우 만족하다는 연구 참여자 S5의 답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취지인 내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응을 도모하고자 했던 본연의 역할보다는 이민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제공된 비자 변경과 국적 취득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 결과, 학습자와 교수자 및 실무자의 접근적 차이를 보였다. 이민자의 경우 한국 사회에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그와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비자 변경 및 국적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에 많은 만족을 느낀 반면, 교수자 및 실무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에서 핵심적인 의사소통과 안정적인 정착보다는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혜택의 목적이 실질적 참여 이유라 보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이라는 대주제하에 ‘참여 효과’, ‘불편 요인’,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참여 효과’라는 소주제하에 ‘의사소통 차원’, ‘적극적 참여 차원’, ‘사회적응 차원’, ‘불편요인’ 소주제에서는 ‘개인적 요인’, ‘운영적 요인’, ‘제도적 요인’, ‘효과적인 운영 방안’ 소주제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제도적 지원’, ‘정책적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표 IV-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

대주제	소주제	대상	키워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	참여 효과	학습자	· 의사소통 차원 · 적극적 참여 차원 · 사회적응 차원
	불편 요인	학습자 교수자 실무자	· 개인적 요인 · 운영적 요인 · 제도적 요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	학습자 교수자 실무자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제도적 지원 · 정책적 개선

## 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효과

연구 참여자들은 이민자가 타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딪치는 것이 ‘언어와 문화’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언어적 능력의 향상과 함께 문화를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또한 국적이 다른 학습자와의 수업은 서로의 입장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좀 더 즐겁게 참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대인관계가 넓어졌다고 말하며, 평가의 불합격은 부담이지만 합격을 통해 본인 스스로 잘 했다는 자존감과 자기만족이 컸다는 것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과로 언급하고 있었다.

### 1) 의사소통 차원으로서의 언어와 문화습득

이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며, 언어능력 부족은 사회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이 바로 언어적 지원이라고 본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언어와 문화습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으나, 생계 때문에 쉽지 않았던 상황이 국적 취득과 변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평소에 엄두를 낼 수 없었던 부분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한국어를 몰라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대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어요. 집에 오면 우리 아들이랑 있어야 하니까, 또 학교에 가면 학교 공부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아들을 친구한테 데려다 주고 여기에 와요. 한국어를 배워서 토픽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S1.18.7.07)

“ 우리 아들 때문에 이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조선족이라 한국말을 듣거나 말하는 거에 다른 나라 애들보다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기 와서 한국 문화를

알고 있던거 말고 더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쓰기도 해서 좋았는데 힘들어요.” (S3.18. 7.14)

“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 잘 모르니까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 저랑 같은 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외국인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단계가 4단계 나와서 공부해서 저는 좀 빨리 공부 끝났어요. 하지만 외국인센터에서는 한국문화랑 한국사회이해는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좋았어요.” (S7.9.02)

소통의 능력이 낮을수록 직장가 가정, 그리고 사회내의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 또한 합당하지 못한 대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중국 교포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자변경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배워서 만족한다는 답변을 들 수 있었다.

## 2) 적극적 참여차원으로서의 대인관계 확장

의사소통의 부재는 타인간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자국민과의 대화가 주를 이뤘다면, 국적이 다른 학습자들과 매주 만나서 서로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했다. 이들은 한국어를 통해 서로의 관계가 확장되고, 나아가 회사나 사회에서도 좀 더 친분을 더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올해 외국인 시민상을 받았어요. 제가 시간나면 방송에도 나가고 사람들 웨딩사진이랑 우리 회사 직원 아기 돌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과도 재미있어요. 수업하고 점심시간에 베트남, 중국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가끔 전화도 서로 해요. 이거 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저는 만족해요.” (S8.18.9.2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해서 저는 재미있어요. 저는 매일 회사에만 가고 집에 오고 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 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말하고, 다른 나라 문화도 배우고 좋아요. 또 한국말도 좀 잘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한국 사람이랑 말도 하고 제가 베트남 요리 해서 같이 먹으면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베트남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요.”(S2.18.7.21)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반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확장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가 더 친밀해 지면서 서로 연락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가 형성되어 한국인들이 본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면서 회사 생활도 즐겁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의 소통을 통해 서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인 또한 타인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표현이었다.

### 3) 사회적응 차원으로서의 자존감과 자기만족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리적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적어지는 것이 사회적응이다.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 이민자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위한 방편으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불안한 심리로 인해 위축되었던 생활이 본인의 문제만이 아닌 이민가가 겪는 문제임을 알고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합격은 주변인과 가족에게 뿌듯할 수 있어서 자존감과 자기만족이 큰 것으로 보였다.



“저는 F6비자예요. 한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저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한 번 응서해 줬는데 또 그래서 이혼했어요(중략).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비자를 빨리 바꾸고 싶어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으니까 매일 열심히 일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토요일에 공부해서 이제 5 단계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좋아요. 빨리 비자 바꾸고 싶어요.” (S5.18.9.08)

"저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알고 했어요. 집에 와서도 페이스북 안하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베트남에 아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시험에 합격해서 비자 E7 바꿨어요. 너무 기뻐요. 제 아내를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잘했다고 한국에 와서 좋다고 하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F2 바꿨으면 좋겠어요." (S7.18.9.02)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과정을 이수하고 합격함과 동시에 주변인으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은 자신감과 자기만족에서 큰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 중 이민자의 경우 본인이 가장 원하는 비자변경과 국적 취득을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평가였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지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비자변경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

#### 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불편 요인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자의든 타의든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활동의 불편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 1) 학습자의 관점

### 가) 개인적 요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나 회사 잔업이나 직장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 가장 힘들다고 하였다. 생계의 문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고, 이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더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 반 학습자 중 한 명은 매일 와서 자요. 야근을 해서 밤새 일하고 지금 퇴근했다고. 그런데 안 오는 것보다는 와서라도 자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비자를 바꿔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휴휴. 어떤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죠.” (T2.18.9.7)

“요즘 우리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오늘도 회사 잔업 있는데 우리사장님한테 못 간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사람들 못 간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 화내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 있거든요. 저 오늘 하루 안 나가면 돈이 15만원인데, 하지만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죠.” (S5.18.8.18)

“수업에 빠지지 않고 꼭 오고 싶죠.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힘들어요. 저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야하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에 있으니까, 회사에다 말하고 토요일 아침에 왔다가 수업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아직 회사에서 OK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조울 중이에요. 그렇다고 회사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S8.18.9.29)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 80%를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험을 볼 수 없는 운영지침에 따라 회사의 잔업 및 부득이한 출장 등에 의한 불참은 그들로 하여금 너무 힘든 상황임에 고민하게 한다.

## 나) 운영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자연스럽게 운영적 문제와 결부되었다. 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본인 스스로 과정을 신청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 이거 날짜 일요일이 좋은데 다 없어서 토요일에 해요. 그리고 저는 안산에서 왔어요. 이거 때문에 . 안산에서 5단계 없어서 부천에서 하는데 이거하고 집에 가면 힘들니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서 다음에 할까 생각을 많이 해요.” (S6.18.9.15)

“외국인들이 일단 등록을 해요. 친구들이 하라니까. 그런데 멀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몇 번 나오지는 안 나와요.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럴꺼면 하지를 말던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마감이라 못하는데... 좀 생각을 하고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이수정지나 제적자 관리가 힘들거든요. 아마 돈을 안내고 무료로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서 빨리 유료화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W3.18.7.10)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 및 장소로 배경 받지 못할 경우 일단 다른 곳에 신청을 하고, 개인적인 상황에서 빠지는 등 이에 따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W3는 정작 원하는 학습자의 제한이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수정지를 하지 않은 제적자 관리로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 다) 제도적 요인

## 1) 학습자의 관점

운영적 교육체계 요인은 제도적 문제와 결부되었다. 이들이 일 때문에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우리 친구는 계속 시험에 떨어졌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계속 들어서 귀화자격 받았어요. 저도 시험에서 3단계 떨어졌지만 다시 듣고 시험 없이 그대로 4단계 올라왔어요. 그냥 떨어지면 다시 들으면 되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5단계 시험 합격 안하면 귀화 면접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 그래서 일단 11월 달에 귀화면접 신청해 놓고 있어요. 그래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해요. 귀화면접 떨어져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합격하면 되니까. 자꾸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S6.18.9.29)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시간이 늘어났어요. 우리는 주말에도 일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5단계 50시간만 했는데, 이제는 20시간 또 해야 한 대요. 내 생각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고 싶어 하는 외국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또 시간이 늘어날까봐 걱정이예요. (S5.18.9.08)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과정이 바뀌면서 참여자의 의사가 반영된 제도와 함께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당황스러운 적도 있다는 연구 참여자 S5, S6는 제도 및 방침이 바뀌기 전에 참여자들의 입장을 묻고 참여자의 요구가 반영된 운영 방침으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지의 여부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 2) 교수자 및 실무자의 관점

교수자 및 실무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업시간과 학생들 관리 부분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 강사는 주어진 시간 안에 교재를 끝내기에 버거운 단계가 있어서 재수정이 필요하고 하였으며, 실무자의 경우 목적 없이 그저 주변 사람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덩달아 참여하는 이민자들이 결국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 가) 개인적

교수자들은 학습자를 위해 수업 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 시간 외 평상시에도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연락을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 본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나 그 외의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저는 우리 학생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은 진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수업하고 있을 때나 밤늦게 전화해서 질문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는 저한테 전화 와서 한국 사람을 바꿔주는데(중략) 렌터카 수리비 청구 때문에 경찰서에 CCTV 확인 신청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휴~.” (T2.18.9.07)

“수업 중인데 문자가 딱~하고 왔어요. 쉬는 시간에 보니까 ID와 비밀번호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휴~ 지금 제 학생도 아니고,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자기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과점신청 못하니까 저보고 해달라네요. 그래서 저는 못해 준다고 했어요. 본인 요일과 시간이 언제 좋은지도 모르는데 제가 계속 전화 연락할 수 없다고 본인이 정 못하면 친구한테 부탁하

라고.” (T3.18.8.27)

교육 강사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위해 좀 더 알려주고 지도해주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개인적인 일까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학습자들이 생기면 솔직히 평소 수업 외에 다른 것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 나) 운영적 및 제도적

교육 강사는 매 수업시간마다 학습자들의 출석 확인 사인을 받는 것을 불편 사항으로 꼽았으며. 그 외 교재에 적절한 수업시간 배정문제를 말한 반면 실무자들은 외국인들의 제적과 관리를 힘들어 하고 있었다.

“5단계가 50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늘려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20시간 추가로 더 생겼더라고요. 강사들이 요구한건 50시간 안에 50과를 끝내기에 벅겁고, 다양한 체험이 첨부되길 바라는 의미였는데. 50시간은 영주, 20시간 추가 귀화로 바뀌어서 학습자들이 불만이 더 있더라고요.” (T5.18.9.17)

“저는 주말에 수업을 하는데 하루 8시간을 해요. 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출석 사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수업시간도 부족한데 힘들어요.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거의 다 밖으로 나가니까 출석 하라고 해도 빼 먹어서, 결국 수업 시작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본 단위까지 늦으면 쓰라고 하니 원~. 지각도 없다고 출석부에 쓰면 진짜 없냐고, 출입국에서 안 좋아한데요. 정확하게 몇 분까지 쓰라고 1분도 봐주면 안 된다고(중략) 서로 못 믿는 상황까지....” (T5.18.8.27)

“본인한테 절실하고 꼭 필요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친구가 하니까 따라오거나, 하면 좋다더라 하니까 목적 없이 등록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에 정원을 있

는데 그 사람들이 등록하고 중간에 안 나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제적처리 때문에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W2.18.8.24)

교수자들은 본인이 맡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일부러 찾아서까지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때가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맞지만 그렇다고 분까지도 기입해야 한다는 것과 사실을 확인하는 사항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조금 불쾌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실무자들은 이민자들이 등록만하고 무책임하게 빠지는 경우 대부분 연락의 불편을 토로하면서 무료지원의 문제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유료화의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 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참여 기간 중에 느꼈던 사항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있을 경우 참여 및 활성화에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었다. 거론된 부분으로 5단계 다문화사회이해 부분에서 실습이나 참여를 통한 친밀함과 의사소통 및 관계망을 넓힐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교수자와 실무자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처우, 적절한 임금 보장에 관한 부분이었다.

#### 1) 학습자의 관점

##### 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수업

참여자들은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장점이 많아서 만족도가 큰 반면, 참여자들의 불편을 반영해 주지 않은 문제 즉,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까운 지역의 단계 신청이 많이 힘들다는 점, 교재의 난이도 문제, 적절한 수업 시간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

“저는 시험에서 공부했는데 3단계 괜찮았어요. 4단계도 조금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험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요일에 수업해요. 왜냐하면 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요일에 수업신청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일찍 마감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S7.18. 8.12)

“저는 4단계 합격하고 밤 12시부터였는데 깜빡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4단계 수업했던 교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사라졌어요. 계속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4단계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다른 날은 공부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안 되면 이번 5단계 포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센터에 전화해서 사람들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서 저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저는 5단계 공부할 수 있었어요.” (S1. 18.7.28)

“친구들이 수업 신청하는 거 때문에 힘들어 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집에서 그래도 가까운 데가 토요일에 열려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곳에 그 단계 수업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친구는 안산에 사는데 없어서 인천까지 가서 공부했어요. 거의 자기차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2시간 쯤 걸려요. 왜 수업이 많은 단계는 안 열어주는 거죠? 장소가 없으면 여러 기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센터들이 많은데 서로 연결해서 열어주면 장소를 다시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S8.18.9.29)

일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경우 가장 힘든



것으로 근거리 교육장소의 등록에 대한 부재를 들었다. 운영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유라면 다양한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과 함께 좀 더 학습자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정책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정형호(2009: 38)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정책운영과정은 쌍방적이고 상호의존적이어서 정부와 사회가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거버넌스 형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뉴거버넌스 논의에서 소수에 의한 결정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보다 대화, 협상, 조정을 통합 타협의 의미로 본 뉴거버넌스의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학습자 중 일부는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과정에 맞는 수업의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지원을 지역사회와 다양한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 나) 수업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평가를 위한 수업위주가 되어 정작 학습자들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경우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의의도 있지만, 그 외 필요에 따라 실습 및 다양한 체험수업의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5단계에서 책으로만 배우니까 너무 어려워요. 역사나 문화 포는 여러 가지 기관 배울 때 직접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책으로 하니까 어렵고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 힘들잖아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1년에 2번 정도 문화체험을 가는데 학생들이 아주 많이 가요. 좋아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도 잘 할 수 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S2.18.7.21)*

## 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연구 참여자인 이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말하였다. 대부분 지인 또는 행정사로부터 국적취득이나 비자변경에 대한 방법을 찾던 중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이민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외국인출입국 방문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전달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원하고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뭔지 몰랐다가 지인한테 듣고 바로 신청했어요. 출입국에서 이런 거 들은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사를 통해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돈을 주고 하죠. 잘 알려주면 좋겠어요.” (S3.18.8.11)

“저 같은 경우도 친구한테 들었어요. 비자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 서류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가 10점 있는데 그걸 신청해서 수업 듣고,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등록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S8.18.9.27)

이민자들 대부분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참여자들은 친구나 지인 또는 본인의 체류연장을 위한 방법을 찾던 중 행정사로부터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었다.

## 2) 교수자 및 실무자의 관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수자 및 실무자들은 대우에 대한 사

안과 강사 인프라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공유 사이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가) 적절한 대우

“강사경력에 따른 강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죠. 매년 강사비는 인상도 안 되고, 좋아요 강사비가 인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4대보험이라도 해주던지, 아니면 강의가 없는 달에는 따로 어느 정도의 안정된 강사료가 지급된다는 지. 아니면 꾸준하게 일을 주던지 휴휴, ?” (T4.18.9.27)

“운영기관에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하라는 거는 너무 많아. 지원 없이 책임만 지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W2.18.8.24)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범 진행이후 2010년부터 한 번도 강사료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며, 강사들의 경력에 대한 지원 또한 없었다는 불만이다. 또한 교수자들도 정규직 대우로 좀 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바라고 있으며, 실무자의 경우 거점기관 외의 일반 운영기관 실무자들의 인건비지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나) 공유사이트 마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교수자 간의 자료 공유나 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업은 지정교재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때에 따라 부재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수업 시간이 부족하여 교수자 대부분은 교재만 가르치고 있어서 수업에 대한 연구나 교재에 대한 준비에서 편하다는 입장이었다.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보수교육이 필요해요. 아니면 강사들의 사이트가 있어서 자료공유나, 정보공유도요. 이런 곳이 있다면 교재에서 오류나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알려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모든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빼서 마음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요즘 보수교육이나 구술심사 또는 국립국어원 교육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은 강사들은 많이 있지만 수업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T2.18.9.7)

“강사회의요? 간담회요? 그런 건 1년에 3번 거점기관에서 강사들이 다 모여서 정책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 등에 대한 이야기는 해요. 그 외 강사회의는 없어요. 저희도 강사들을 전담으로 케어해주는 전담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가끔 강사들이 사이트에 자신의 수업 노하우나, 불편사항 그런 정보나 수업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도 많고 하는데 교사들이 딱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교육이 필요하기도 해요” (T4.18.9.27)

교육 강사들은 공유사이트를 통해 서로 간의 정보를 나눔으로써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 교육도 자주 있길 바란다는 반면 수업시간 때문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교사들이 많다는 의견과 함께 대안을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 다) 대체강사 시스템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증가와 더불어 좀 더 체계적인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수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 부득이한 개인적인 상황이 당황스럽다는 의견이었다. 대체 강사를 찾거나 요청하는 불편함과 함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강사들도 좀 맘 편하게 수업에 대한 대체를 일정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말마다 수업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가족 여행도 못 가 봤어요. 집안 사정으로 1회나 2회 정도 수업을 못할 경우가 있어도 실 수가 없어요. 실무자에게 빠진다는 말을 못하죠. 다음에 강의를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인력풀이 있어서 제가 일이 생겨서 강사를 찾으면 시간이 되는 선생님이 대신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신 인력풀 등록 강사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대체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이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3.18.9.7)

교육 강사들은 경력이 있는 강사들의 인력풀을 만들어 필요시 강사가 요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경력에 제한을 둬으로써 강사의 수업에 대한 질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강사가 시간과 요일을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좀 더 마음 편하게 개인적 일을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 라) 운영기관 지정

교수자 및 실무자들은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타 기관보다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단체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에 참여하거나 행사 인력동원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의견이었다.

“지금은 아마 조사해보면 운영기관들이 대부분 민간단체 아니면 교회같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거긴 좀 아닌 것 같아요. 강사들이 파견되어 나가면 와서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일단 법무부에서 운영기관 선정 조건이 되니까 선정됐겠지만 시설도 안 좋고, 필요한 물건도 없어서 어디에 이야기 해야 할지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색채를 띠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사에 참여자들을 자꾸 부르다는 거죠. 국가적 종교가 불교나 그 외 타 종교일 때 이민

자들이 많이 불쾌해 하면서도 본인들이 공부하는 곳이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지방 자치단체 기관 활용과 함께 주변 대학기관을 좀 더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W1.18.9.12)

“제가 교회로 수업을 하러 나갔는데 학생 중에 미얀마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불교를 믿고 그 곳에 본인 과정이 있으니까 참석한 건데, 교회에서 행사 때 자꾸 부르니까, 교회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좀 더 잘 해주려는 입장에서 부르는 거지만, 종교가 다른 외국인의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죠. 부르니까 안 가면 자기가 수업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다니지만 종교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T5.18.9.12)

현재 거점운영기관에서 일반 운영기관 중 종교기관으로 강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 강사들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준비가 미흡하여 어디에 요구해야 할 지도 모르고, 교육 환경도 안 좋아서 교수자들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연구 참여자 W1은 말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T5의 경우도 종교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본 종교 행사에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힘들고 싫지만 혹시 본인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에 종교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자제나 참여시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종교와 교육의 분리가 명백해야 할 것이다.

#### 마) 교육 강사와 실무자 역할의 분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실무자가 교수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운영기관 실무자의 인건비 지원에 따른 대안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입장이나, 현재 거점운영기관 실무자의 경우 국가지원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의 역할을 겸하면서 실무자가

수업에 들어가 있는 경우 행정처리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운영실무자가 한국어 강사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단체나 민간 기관 등 일반단체들은 전담인력 지원이 없으니까. 민간단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한국어강사로 뛰면서 그걸 맡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격증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저희 기관은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저는 사회복지사고, 한국어사업을 하다보니까 사통을 맡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 다른 운영기관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맡거나, 강사가 같이 일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W3.18.8.21)

“저는 거점운영기관 실무자이고 저도 한국어 자격증이 있어서 우리기관에서 지금 수업을 해요. 하지만 자원봉사로 하는 거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좋고 필요하지만 돈을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년 인상도 되니까 나름 만족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제 생각에 실무자들이 수업에 많이 들어가면 빈 시간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해 줄 수 있으니까 대체 인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W1.18.9.12)

“토요일에 수업을 해요. 5단계는 50시간이라 끝나지만 100시간은 수업 중인데, 저희가 과정이 다 끝나서 출결사항을 다 입력하면 거점기관에서 이수처리 완료 승인을 해줘야 학생들이 시험 신청과 다음 단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계속 기다리는데 거점기관에서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실무자가 수업을 하고 있어서... 휴~ 대체인력이라도 있던지 실무자가 수업에 들어가 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T3.18.9.17)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 및 실무자의 강의시수가 주당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지정되어 있다. 교수자의 경우가 아닌 실무자의 경우도 자격을 소지한 상태이면 이에 해당되어 실무자로 일하면서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T3은 국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참여로 인한 부재는 행정 업무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실무자가 수업의 불

편과 개선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너무 많은 수업 참여로 인한 업무 부재는 부적절하다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W1은 말하고 있다. 이들은 실무자나 교수자의 적절한 대우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역할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비자변경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쉽고 편하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 대한 적절한 홍보나 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모르는 이민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이민자를 제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생각은 과연 이러한 사회통합 정책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새로운 정책적 개선이 요구됨을 필역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민과의 이해와 존중의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목적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사회, 법률 등의 기본소양의 체계적 습득뿐만 아니라 이민자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말과 문화를 익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동시에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2018). 그러나 정착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수자들에게 국적취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비자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이해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의 비자유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것에는 의의를 둘 수 있겠으나, 평가에 대한 변별력, 좀 더 체계적인 교육체계의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수에 따른 특혜로 인해 영주와 비자를 쉽게 받아서 그들의 가족을



초청하고 그들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또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급급함에 이의 허점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특혜를 부여받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으로 한국사회가 이민·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는 시점에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통제와 규제를 넘어선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이수에 따른 부수적 혜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의미의 유형을 크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하위요소로 의사소통, 적극적 참여, 사회적응 등 세 가지를 적용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별(학습자, 교수자, 실무자)로 참여 경험을 분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효과불편 요인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입장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비자연장의 목표와 더불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고, 한국사회이해과정을 통해 새로운 국적의 이민자들을 만나 서로의 입장과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나’와 ‘다른 너’가 ‘우리’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전 연구 참여자들은 안정적 거주와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욕구를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언어적 지원은 국적이 다른 이민자들에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좀 더 체계적인 언어지원을 위해 이민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이민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방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대부분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후에 지인이나, 행정사로부터 듣고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적 참여에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일과 병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많은 갈등을 호소하였으며, 수업신청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불편을 표출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시험을 위한 기본 사항과 평가의 과정은 거쳐야 할 고비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과정이수와 합격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 무시당하였거나, 약자가 아니라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방향과 취지를 인지시키지 못하고, 다만 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한계와 연관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인 학습자 8명 중 어느 누구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공지를 경험한 사람은 없었으며, 이들 모두는 여행사, 행정사, 지인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알고,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 또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외국인들의 상담이나 문의에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대행업체를 다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전담인력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이들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외국

인들이 묻지 않으면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참여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변경에 따른 보수교육의 제고 및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비자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더불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를 살펴보면, 이민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사소통을 돕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비자연장 시 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과 인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단계 신청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짧은 시간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하는 과정을 찾아서 먼 지역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모든 접수를 받은 후 신청자의 수에 적절하게 반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교수자 및 실무자들은 이민자들이 너무 쉽게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을 그들에게 맞춰주기 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존의 퍼주기식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들에게 맞춰주는 사회통합의 방향에서 이들과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 중에서 본인들의 불편사항으로 제시하였던 모든 사항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서의 합격과 이수를 통해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반적 불만보다는 자신의 경우 모두 끝낸 상태로 본인들이 원하는 비자변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에 만족하였다. 다만 불

편함을 이야기 할 때에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게 힘들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그게 힘들다고 했어요.” 라는 식의 3인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외시키곤 하였다. 즉 과정 중에서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 보다는 앞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인들에게 과정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권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비자유형에 따른 체류 기간이 이들에게 큰 부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과정 중에 있는 이민자들과 공통적으로 경험한 부분은 과정 등록 시 본인이 원하는 요일 및 장소에 대한 교육 접수가 너무 힘들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었다. 반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와 실무자들은 과정 수료 후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학습자에 대한 대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4단계까지 과정 수료 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재등록 후 수업을 참여만으로 합격 유무에 관계없이 5단계로 승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 때문에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 면에 대한 부분과 그에 따른 수업 시간 및 교재에 대한 언급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몇몇 교수자들은 실무자들의 직무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학습자에 의한 교수자 평가 외에 교수자들에 의한 실무자 평가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와 소통하면서 대인관계가 확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힘든 과정에서 일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평가를 통해 과정을 이수하면서 가족과 지인으로부터의 부러움과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기만족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시 회사 일로 인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은 그들에게 많은 갈등을 갖게 하였다. 이는 생계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다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은 비자 변경이라는 절박함은 이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반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만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너무 쉽게 어려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반신반의해 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주 변경되는 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들 수 없을 때 가장 힘들었고,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는 하지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연초에 운영방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개정되어 통보하는 형태는 그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 중 교수자 또한 개정 시 하달방식의 전달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학습자의 질문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제도 개선 및 운영지침의 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참여자들의 불안을 조장하지 않도록 개정 전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및 교수자나 실무자의 사전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참여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보다 적절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적 개선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자의 경우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특히, 강사료의 인상이 2010년 이후 전혀 없다는 점, 교수자들이 서로의 정보나 수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의 부재로 인해 질적 개선에 저해가 된다는 점, 실무자들의 강의배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실무자들에 대한 평가 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실무자의 경우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 및 불만은 대체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일반운영기관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여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적극적 참여 능력,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 실태의 한계를 밝히고, 이민자의 학습 성취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찾는 데 일조하려는 목적 하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 이민자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민자 대부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지보다는 참여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 즉, 비자변경과 국적 취득을 위한 보다 편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과정 참여시 좀 더 편하고, 쉽게 과정 이수를 바라는 반면, 과정을 너무 쉽게 이수할 수 있다는 것에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연구 참여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제도적 체계와 이수조건에 대해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비자 변경과 국적취득자의 급증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적 접근의 적절한 시기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학습자, 교수자, 실무자)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즉, 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만족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자의 경우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특히 강사료나 역량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부재 및 거점기관 실무자와의 관계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하였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실무자의 수업배치 및 기회부여에 따른 '갑질적' 성향을 경험하면서 실무자에 대한 강사 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중점기관 실무자의 일정 기간 재임 후에는 업무지 이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실무자에 대한 경험은 문의 시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한 곳의 실무자 의견만 들을 수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기관이나 운영기관 실무자의 중복적 역할 즉, 실무자의 교수자 역할 중복에 따른 운영의 불편함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인건비 지원으로 중복적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자 관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찾는 한계에서 벗어나 이민자들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교육 강사 및 실무자들의 실제 참여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의 동기 및 경로와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적응하는 참여태도뿐만 아니라, 이수교육에 대한 논의와 견해까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출된 사항들을 네 가지 영역에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차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을 기본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은 한국 국적 취득의 방안이 된다는 점 외에도 한국어 습득과 취업준비 및 자녀의 한국교육제도의 적응 등 다양한 삶을 준비하는 동기가 내재해 있었다. Shim(2011) 역시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자 하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지어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적 취득 및 비자 연장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도 한국사회에서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반영한 교육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점에 주목한다면 진정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교육과정 선택 및 생활적응교육과 직업교육까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50시간의



한국사회이해과정 교육만으로는 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기능을 경험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 강사들의 인프라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이해과정의 재편성과 이와 관련된 체험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체계의 구축 및 개편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수요목과 관련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수요자 입장의 교육내용이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현숙(2014)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이민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영주·귀화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체계화된 귀화자의 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5단계 학습자의 경우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법 관련 사항이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0단계(15시간), 1단계와 2단계 각 100시간의 배정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답변한 반면, 3단계(100시간), 4단계(100시간), 5단계(50시간) 교재에 배정된 수업시간에 따른 교재 내용 및 분량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이수시간을 같게 하려면 내용이 좀 더 축소되거나 교재를 이해하기에 주어진 시간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적 차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육장소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양적 확충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를 논의한 연구들(OKim, 2009; Lee, 2009)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운영기관의 선정과 접근성의 보완 방안이 제고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 간 행정적 협의와 상호지원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정 신청과 시간에 대한 문제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수업시간과 과정의 제한적인 사안이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부족한 지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활용함으로써 사회통합네트워크를 통해 확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등록 및 접수에 관한 방법에 미숙한 외국인들을 대상으

로 사전 교육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매년 시험과 단계 등록을 본인 스스로 못한다거나 컴퓨터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 강사나 실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고 본인의 사정에 맞는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여 이수 정지나 제적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과정에 등록하지 못하는 다른 이민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사회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확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역시 기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추진해온 이민자의 동화주의적 차원 사업들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일 수 있다(Kim, 2009). 이는 김은미 등(2009)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 관련 정책 시행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합의가 없이 다양성만 부각한 채 다문화를 아우르며 다양성이 가져오는 시너지와 화합에 초점을 두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생기는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단순히 국적 취득을 위한 경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으로 장기적·거시적인 제도적 운영체제의 기반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강사와 실무자에 대한 제도적 대우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바탕이 될 때 보다 체계화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에 따른 정책적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비자변경 및 국적취득을 근본 목적으로 참여하는 이민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조적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적 체류를 막고 한국 국민과의 안정적 교류 및 생활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사회통합정책의 하나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보다 쉽게 비자변경과 국적취득에 있어서 가족들을 초청하여 오히려 합법을 도용한 불법적 취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를 인지해야 한다. 그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이민자의 처우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학습자의 견해와 더불어 교수자 및

실무자의 경험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일방적 요구 및 평가가 아닌 좀 더 체계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의 특성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의 표집이 특정지역이라는 한계와 운영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연구범위로서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로 인해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가 제도화되는 시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연구가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정(2016).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에 기반한 다시점 내러티브 도덕교육적 의미.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27(3), 29-53.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 권용혁(1996). 사회철학과 현실: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의 한국사회 적용가능성과 그 한계. 哲學, 14, 282-285.
- 길강목(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4(2), 135-168.
- 김남국(2010).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유럽연구, 28(3), 133-174.
- 김상무(2016). 독일의 이주민 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의 통합 담론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30(3), 51-70.
- 김영순, 최승은(2016). 상호문화학습의 실천적 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어와 문화, 12(2), 1-27.
- 김일란, 김남영(2008).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03-623.
- 김재욱(2011). 귀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언어와 문화, 7(2), 125-145.
- 김재욱(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의 번역 양상 문제, 통번역학연구, 16(1), 39-64.
- 김종세(2013).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법과 정책연구, 13(2), 99-118.

- 김종세(2017).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국어교육의 역할과 과제. 법학연구, Vol.17 No.3. 349-368.
- 김찬기(2015).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누화 사회의 한국문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국제한국어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희숙(2009). 21세기 한국어정책과 국가 경쟁력, 서울: 소통.
- 김희정(2009). 이민자 사회통합과 언어교육제도연구: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시험제와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라휘문(201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한국정책연구, 11(1), 43-63.
- 류성희(2011). 하버마스의 막스 베버 합리성에 대한 오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21, 69-94.
- 모종린(2013). 이민강국- 인재전쟁 시대의 이민정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 문병기·라휘문·한승준(2014).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 진단 및 개선방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문병기·이향수·황민철(201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박경래(2013).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에 대한 고찰-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와 단계평가를 중심으로. 영주어문학회, 26, 5-39.
- 박성혁, 곽한영( 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41(2), 97-127.
- 박진경, 임동진(2012).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21(2), 123-151.
- 박혜숙(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개선 방안: 독일 “통합과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인문학연구, 44, 263-21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20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 서광석(2011).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대학원.
- 송민혜(2017). 중앙정부의 이주·사회통합정책 전달체계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1(1), 29-53.
- 송소영(2011). 귀화와 영주자격의 연결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8, 47-71.
- 송은정(2013). 국적 취득 희망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 신경림(2004).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심미경(2016).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1065-1082.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2013).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 안나겸(2016).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대학원.
- 양미경(2017). 다문화 정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탐라문화, 56, 279-300.
- 오경석(2007). 다문화와 민족-국가: 상대화인가, 재동원인가?, 공간과 사회, 28, 98-121.
- 오영훈, 방현희(2016). 독일의 상호문화교육 사례에 대한 연구: 베를린 EU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11), 81-90.
- 윤영, 손경애(2016).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12(3), 123-154.

- 윤인진(2004). [특집: 탈북자 증가의 의미와 전망-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 경제적 적응은 물론,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 힘들다. 北韓, 393, 79-87.
- 윤혜선(2012).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단초로서의 이민제도의 고찰: 북미의 이민제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3(2), 381-425.
- 이래호(201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구성 체계와 내용 분석. 영주어문, 29, 347-373.
- 이미혜(2016).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3(4), 187-2.
- 이선주 외(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총괄보고서)」. Vol.2009 No.6.
- 이성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4), 165-187.
- 이종희(2012).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2), 53-88.
- 이혜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2016).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 이화숙, 이용승( 2013).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과 한국어 교육정책- 이주민 참여를 분석을 중심으로. 語文學, 24(2), 311.
- 이은령(2014). 불문화: 유럽연합의 언어통합정책과 다중언어주의-이주민 언어의 상호문화적 인정을 위한 정책 개선 연구. 佛語佛文學研究, 97.
- 임영언, 이화정(2013). 한국거주 일본인의 문화적응 모형과 다문화적 수용태도 연구. 평화학연구, 14(2), 99-118.
- 전영기, 최은수(2014). 사회통합을 위한 호주의 이민정책과 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프로그램(AMEP)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10(2), 51-75.

- 정기선(2011).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 정기선 외(2016).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 정영태 외(2014).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이민자 유형별 합리적 지원기준 개발 및 부처 간 협업」. 인하대학교 산학 협력단, 2014년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 조항록 외(201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개발연구」.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 조항록 외(2011).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 정기섭(2009b). 독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 외국인 지원 대책 사례 및 시사점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3(3), 99-120.
- 정기섭(201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3), 133-149.
- 정기섭(2017).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749-775.
- 정지윤(2014). 다문화 전문가 직무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 정혜령(2007). 지구 인권 거버넌스 매커니즘과 지구 시민사회. 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2(1), 255-285.
- 정호선(201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분석: 의사소통 상황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2, 305-336.
- 정호선(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분석.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대학원.
- 조소연(2016). 탈북 청소년 커밍아웃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대학원.



- 조향록(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실제와 과제. 다문화와 평화, 5(2), 5-31.
- 조향록(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0, 235-267.
- 차용호(2015). 한국 이민법, 파주: 법문사.
- 채보근(201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
- 최문수(2009). 행위로서의 언어와 의미 - 들뢰즈와 퍼스의 화행론. 영어영문학, 55(1), 199-213.
- 최배영, 한은주(2012). 이민자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30(3), 83-103.
- 최아영(2018).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개선 방안: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특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최혜지(2017).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간 비교. 한국사회정책, 24(2), 217-244.
- 최윤철(2014).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입법과 정책. 입법정책, 8(2), 63-90.
- 한상우(2010).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0(3), 65-86.
- 한태희(2016).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자격제 개선방안 연구: 캐나다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허영식, 정창화(2012). 미래워크숍 방법을 적용한 시민교육·간문화교육의 활성화·제도화 방안 연구: 독일의 사례와 함의. EU연구, 31.
- 홍성만(2004). “과학기술정책에서 신거버넌스의 대두: 시민 참여적 프로그램의 활성화”. 한국 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황민철(2017).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공공관리학

보, 31(1), 55-85.

홍준기(2015). 이주청소년에 대한 다문화교육정책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Benhabib, S.(1982), “The Methodological Illusions of Modern Political Theory. The Case of Rawls and Habermas”, Neue Hefte für Philosophie, Heft 21, pp. 47-74.

Bennett, J. M. & Bennitt, M. J. (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domestic diversity. In D. Landis, J. M. Bennitt, and M. J. Bennitt(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3rdEd.), London: Sage. 147-165

Brink, D.(1989), Moral Realism and the Foundations of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entrefortheStudyofGlobalisationandRegionalisation(CSGR). 223(7). UK, Coventry : University of Warwick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조흥식 외(역).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2010). 서울: 학지사.

Fortuijn, J. D. Musterd, S. and Ostendorf, W., 1998,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segregation: Impacts on urban areas introduction”, Urban Studies, 35(3): 367-370.

immigr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225-249.

Gibson, M. A.(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19-23.

Guyton, E. M. & Wesche, M. V. (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s*, 7(4), 21-29

Hall, S. (1990).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Identity: Community, Culture and Difference*, edited by Jonathan Rutherford, Lawrence & Wishart, 1990

Kettl, Donald E. (2000).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Globalization, Devolution, and the Role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pp. 488-497.

Kreckel, Reinhard (1999).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J. T. Marcus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Lenard, P. (2012). "The Reports of Multiculturalism's death are greatly exaggerated." *Politics*, 32(3).

predictors of intergroup anxiety, perceived out-group variability, and outgroup attitude: An integrative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700-710.

Parekh, Bhikhu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Scholte, J. (2007). *Civil Society and the Legitimation of Global*

Governance.

Smith, K.(2010). Transnational Teaching Experiences: An under-explored territory for transformative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for Academic Development, 14(2), 111-122.

William Labov(1972). The study of language in a social context  
Combridge: Combridge University.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 주제: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해관계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연구자 : 전경미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 다문화교육 전공 박사수료)
- 연구자 연락처: ([ckm7330@hanmail.net](mailto:ckm7330@hanmail.net) . 010 7253 2350)

연구는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해관계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입니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실효성을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책적, 실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경험 및 의견에 대해 질문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약 60분-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며 면담에 응해주신 참여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들은 반드시 무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며, 면담 자료들은 반드시 본 논문의 연구 자료로만 사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면담 자료의 일부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녹음된 자료는 연구가 끝나는 대로 폐기됩니다. 연구결과는 학문적 목적으로 출간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면담 과정 중 답변하기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의견을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록 2> 질적연구를 위한 설문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 심층면접 질문지>

국적:	비자:	성별:
직업:	나이:	입국년도:
이수목적:		
<b>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요</b>		
Q1.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Q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Q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후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b>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운영 및 평가</b>		
Q1.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재 단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Q1-1. 현재 단계 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으셨어요?		
Q2.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Q2-1.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Q3.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와 평가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Q3-1. 0단계를 제외하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각 100시간씩 공부하는데 그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Q3-2. 단계평가, 중간평가에서 불합격한 학습자가 다시 100시간 이수 후 승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Q4. 지금 무슨 요일에 공부하고 계신가요? 왜 이 수업시간을 선택하셨나요? Q4-1. 수업시간과 요일에는 만족하시나요?		
Q5. 현재 함께 공부하는 학습자는 몇 명입니까? Q5-1. 어느 나라 학습자들이 많나요? Q5-2. 여러 나라 학습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어떠세요?		
Q6.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 참가비 유료화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b>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b>		
Q1. 현재 어느 운영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나요? Q1-1. 운영기관 이용 시 불편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Q2. 운영기관 실무자는 어떠했나요? Q2-1. 실무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3. 교육받는 장소의 시설이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Q1.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는 어때요? Q1-1.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Q2. 100시간 안에 교재를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Q3. 교재에 더 첨부하면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Q1. 선생님의 수업 방법은 어떠셨나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더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Q2. 선생님들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제반사항
Q1. 그 밖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Q1-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더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 면담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수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 질문지>**

자격:	지역:	성별:
경력:	담당:	
자격증:		
<b>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요</b>		
Q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념 및 이수 혜택에 대해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의 공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Q2.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도입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Q3. 거점 및 운영기관의 매시(년3회) 운영지침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시나요?		
<b>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운영</b>		
Q1. 현재 등록 및 신청(평가, 수업장소)방법 등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2. 교육시간(0단계와 5단계를 제외한 100시간)단계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Q2-1.연 3회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3. 단계 승급과 이수정지, 재이수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Q4. 개정된 이수완료 혜택에 대한 생각이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Q5.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 참가비 유료화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요?		
Q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b>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b>		
Q1.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방식(단계평가와 중간평가, 사전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2. 단계 시 감독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Q2-1시험 방법 (지필고사와 구술시험) 시간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Q3. 평가방법에 대한 제안점이 있으신가요?(시간, 장소, 방법 등...)		
<b>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b>		
Q1. 운영기관의 역할 및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Q2. 운영기관 사용 시 불편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Q1.	현행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교육 교재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는 어떠한가요?
Q2.	학습자들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교육 교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3.	100시간 안에 교재를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4.	교재에 더 첨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및 실무자	
Q1.	실무자들이 강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Q1-1.	교육 강사와 학습자 사이에 갈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Q2.	강사들이 실무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Q2-1.	학습자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Q3.	학습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제반사항	
Q1.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면담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he KIIP (Korea Immigrants and Integration Program) participants.

Chun, Kyung-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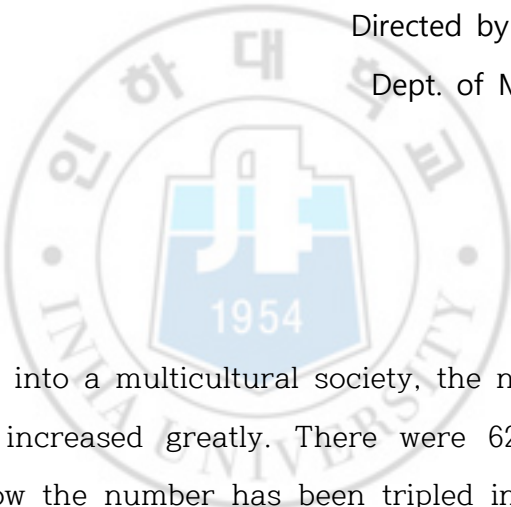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Chung ,Ki-Seob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19



As Korea enter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increased greatly. There were 620,000 foreigners in year 2002, and now the number has been tripled in only over 16years, there are 2,260,000 foreigners living in Korea in the year of 2018. Hence,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launched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order to integrate the immigrants in Korea in year 2009.

This social integration progra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supports the new immigrants in Korea by helping them to learn the basic Korean culture so that they can eventually become independent members of the mainstream of Korean society, enjoying stable and satisfactory lives in Korea.

This program is for all immigrants in Korea. Immigrants learn Korean language, Korean culture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from the program.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the program increases each year as the completion of it can be used as an incentive point to those who apply for a change of their status of staying in Korea, such as getting Permanent Residency or change of visa status.

However,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its related policies have been attracted huge attention from the Korean society, there has been some limitations that hinder achieving its maximized results because the Government failed to accept the reality and suggestions from the acting field but continue to impose unilateral policies.

Therefore, the need for a revised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for the immigrants run by Government became the motive of this case study. In order to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find directions for improvements of the program, this study conducted a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learners, staffs of the field and teaching staffs, how well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rogram had been achieved, and analyzed its results.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two main questions were needed to be answered.

Firstly, what is the perception of the immigrant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Immigrants Integration Program ?

Secondly, what are the participants' (learners, teachers, staffs) experience?

For the answers of such questions,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 immigrants, 5 teachers and 3 staffs who had participated or currently participating the program in the areas where many immigrants populated such as Bucheon, Incheon, Siheung, Ansan and Hwasung.

This study focused on the premise that the purposes of Korea Immigrants Integration Program are communication, active involvement and social adaptation,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general points and alternatives if needed through the interested parties' experiences and make political suggestions Yin(2009)'s case study analysis method was used.

After gathering the data of the research, repeated analysis and contrast analysis were conducted and reached a result that each code translated into 84 ways.

Based on this first meaningful data, repeated review and integration were also conducted to draw out 33 key words. Considering these 33 key words and the relationship among each categories, 17 sub themes were drawn out. Finally after analyzing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sub themes, 4 main themes were concluded.

Based up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ached conclusions as such: First, all the interested parties showed high expectations on the Korea Immigrants Integration Program. It is shown that the immigrants want to be a part of Korean society and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By participating the program, the immigrants share their points and views with each other and experience to become 'we' rather than 'I' or 'you' in different situations. They wanted to become one through the program and there is a strong evidence that the Korean language

classes are tremendous tool to integrate the immigrants from different countries. Second, the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was shown through the communication, active involvement, social adaptation, and the courses and curriculum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said they could experience the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the program.

However, even though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grip a picture of Korean culture but it was too short to learn enough language. Third, most of the participants showed satisfaction about the program. Even though they expressed some complaints about the program, it did not affect their satisfaction on the final reward, completion of the program. As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ensured their visa status changes, participants were rather satisfied with the program. Fourth, the experiences from the teachers and staffs show that they see the program as a method to expand their people relationship as they meet immigrants from all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Their evaluation on the Korea Immigrants Integration Program was shown as suggestions for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hassle factors, and effective operation.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here are suggestions in four areas.

Firstly, on the educational level, Korea Immigrants Integration Program needs to be reinforced by providing additional programs on the top of the existing programs, for example, adapting life in Korea, and job training courses. Also, adding more diverse courses in the program would help the participants to choose the right kind of courses for themselves. It is also needed to identif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develop curriculums for their need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some courses for permanent immigrants as they need systematic training to settle into Korean society but it is not sufficient in reality.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o find out needs of each different visa holders and provide courses for each visa categories in order to provide quality courses that would enhance individual abilities. Secondly, on the operation level, the location and accessibility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the immigrants. It is suggested to expand the Social Integration network by using and building the governance, connecting a systematic cooperation among offices and government seems to be essential. Thirdly, on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level, the attitude towards social integration needs to be evaluated. Completing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channel to earn the Korean nationality, but should become a system that integrates immigrants truly by providing them with visions to build stable living conditions in Korea. This only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long term and a macroscopic political operational basis. Provid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teachers and staffs and regular on the job training would make more systematic operations. Lastly, on the political level, as comple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s to be compulsory for all immigrants, political countermeasures must be provided for the immigrants who try to misuse the program to only acquire Korean nationality or upgrade their visa status.

Government must be aware of the potential problems that immigrants might bring their family members from their home countries to enroll the program in order to acquire illegal visa status for a job or Korean

nationality. Accordingly, problems must be identified and a better political support for the immigrants based on the “Basic Law for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hould be provided.

Theme words : Social Integration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 Communication, Active involvement, Social adaptation, Change of visa status,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